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다국적기업 지침서의 구체 사례 절차에 의거하여
대한민국 측 국내연락사무소 (National Contact Point)에 제출하는
이의제기

본 이의제기는 한국가스공사 (Korea Gas Corporation; KOGAS)와 대우인터내셔널 (Daewoo International)사가 버마 (미얀마) 에서 진행하는 천연가스 개발에 관한 것으로서,

어쓰라이츠 인터내셔널 (EarthRights International; ERI)이 슈에 가스운동 (The Shwe Gas Movement) 을 대변하여 제출한다. ; 공동 이의제기 제출인은 국제민주연대 (The Korea House for International Solidarity; KHIS),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Korean Confederation of Trade Union, KCTU), 함께하는 시민행동 (Citizen's Action Network, CAN), 한국노동조합총연맹 (Federations of Korean Trade Unions, FKTU), 버마민주화를 지원하는 모임 (People for Democracy of Burma), 버마를 사랑하는 작가모임 (Writers for Democracy of Burma), 새사회연대 (Human Rights Solidarity for New Society), 외국인 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The Association for Migrant Workers' Human Rights), 버마행동 (Burma Action Korea)이다.

2008 년 10 월 29 일

I. 서론	4
i. 이의제기 제출인들의 신원과 이해관계	4
ii. 관련 기업체들의 신원	5
iii. 상기 기업체들과 이의제기 제출인들 간의 지금까지의 연락	5
iv. 대우인터내셔널 (Daewoo International)과 한국가스공사 (KOGAS)가 버마에서 행하고 있는 위반사항들의 요약	6
v. 한국 국내연락사무소 (national contact point)에 대한 구체적인 요청	8
II. 지침서의 적용 근거	8
i. 왜 대우 (Daewoo International)와 한국가스공사 (KOGAS), 그리고 본 이의제기는 지침서의 적용대상이 되는가	8
ii. 왜 이 시점에서 국내 연락사무소(NCP)의 개입이 요청되며 필요한가	9
III. 버마에 관한 배경 설명	10
i. 지리와 인구	10
ii. 정부와 정치	10
iii. 경제	12
iv. 태풍 나르기스 (Cyclone Nargis)	15
v. 군부 후원	15
vi. 인권	16
IV. 본 이의제기의 배경	19
i. 이전의 천연가스 프로젝트와 인권 침해: 야다나(Yadana) 파이프라인과 예타건 (Yetagun) 파이프라인	19
ii. 대우인터내셔널 (Daewoo International), 한국가스공사 (KOGAS) 등의 슈에 천연 가스 프로젝트 (Shwe Natural Gas Project)	22
V. 버마에서의 대우인터내셔널과 한국가스공사에 의한 지침서의 구체적인 위반사항	26
i. 제 II.1 조 (Section II.1), 기업은 지속가능한 개발이라는 안목에서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개선에 공헌하여야 한다.	26
a) 국제 기준	27
b) 제 II.1 조 (Section II.1)의 위반 사항	27
ii. 제 II.2 조 (Section II.2), 개발사업을 수용한 국가가 지는 국제적 의무와 동 국가가 국제사회와 맺은 약속에 준하여, [기업들은] 기업활동에 의해 영향을 받는 사람들의 인권을 존중해야 한다	29
a) 인권에 관한 국제 관례적 의무	29
b) 조약법 상의 의무	30
c) 제 II.2 조 (Section II.2)의 위반 사항	31
iii. 제 III.1 조 및 제 V.2 조 (Sections III.1 & V.2), 기업은 1) 자기업의 활동, 구조, 재정상태, 업무에 관한 적절한 정보가 적시에 정기적으로 공개되도록 하여야 하며, 2) 정보를 제때에 제공하여 영향을 받는 지역사회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33
a) 국제 기준	33

b)	조약법 상의 의무	35
c)	제 III.1 조 (Section III.1)의 위반 사항	35
d)	제 V.2 조 (Section V.2)의 위반 사항	36
iv.	제 IV.1(c) 조 (Section IV.1(c)), <i>기업들은 모든 형태의 강제 또는 의무 노동을 없애는데 기여하여야 한다.</i>	38
a)	강제 노동 및 강제 운반 부역에 관한 국제 관습법	38
b)	조약법 상의 의무	39
c)	국내법 상의 의무	39
d)	제 IV.1(c) 조 (Section IV.1(c))의 위반 사항	39
v.	제 V.3 조 (Section V.3), <i>[기업들은] 환경 영향을 평가하고 적절한 환경영향평가서를 준비하여야 한다.</i>	
	41	
a)	국제 관습법 상 환경영향평가 (EIA)를 수행할 의무	42
b)	조약법 상의 의무	43
c)	제 V.3 조 (Section V.3)의 위반 사항	43
VI.	결론	47
VII.	이의제기신청인 대표의 연락처	48

I. 서론

i. 이의제기 제출인들의 신원 및 이해관계

대우인터내셔널(Daewoo International)과 한국가스공사 (Korea Gas Corporation; KOGAS)는 버마(미얀마)에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경제협력기구 (OECD)의 다국적 기업을 위한 지침서 (이하 “지침서”로 칭함; *Guidelines for Multinational Enterprises*) 중 몇몇 사항들을 위반하였고, 이 위반이 추후에도 계속될 것이므로, 이에 ERI (EarthRights International; 어쓰라이츠 인터내셔널)는 슈에가스운동(Shwe Gas Movement; SGM)을 대변하여 본 이의제기를 제출한다.¹ 이 위반 사항들은 슈에 가스 프로젝트 (Shwe Gas Project)(이하에서는 슈에 프로젝트라 한다)라 알려져 있는, 상기 두 회사가 버마에서 진행하는 천연가스 탐색작업, 개발작업 및 동 사업의 운영에 관련된 것으로서, “슈에”란 버마어로 금을 뜻한다.

ERI 는 인권, 환경 및 기업과 정부의 책임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곳으로서, 미국에 비영리기관이면서 비정부기구 (NGO)로서 등록되어 있다. 1994년 부터 ERI는 버마의 대규모 천연가스 개발과 연관된 인권유린 자료를 현장에서 수집해 오고 있다. 여기에는 버마와 버마의 동,서 국경지역에서 목격자와 피해자의 증언을 수집하는 노력이 포함된다. ERI 는, 버마의 야다나(Yadana)천연가스 파이프라인과 관련하여 자행된 인권유린에 관련하여 버마의 인권 피해자들이 미국 국적 석유회사인 유노칼 (Unocal Corporation)사에 대해 공모성 연루책임 (complicity)을 묻는 소송을 제기하였을 때 이들을 대변하였다.² 이 단체는 미국 법정에서 자신들이 당한 인권유린에 관하여 기업들이공모성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는 원고인들을 다양한 미국 내 재판에서 대변한다.

SGM (The Shwe Gas Movement; 슈에가스운동)은 버마 서부 아라칸 주 (Arakan State)의 민간 사회단체들과 개인들의 연합체로서, 대우인터내셔널사와 한국가스공사의 가스 추출 계획에 의해 직접 영향을 받는 지역의 사람들이다.³ 따라서 SGM 은 슈에 프로젝트의 적법한 이해 당사자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범 아라칸 청년학생연맹 (the All Arakan Student and Youth Congress; AASYC)으로부터 2002년에 결성되어, 현재 SGM 은 AASYC 와 함께 슈에 가스 캠페인 위원회- 인도분회 (the Shwe Gas Campaign Committee-India), 아라칸 석유감시단 (Arakan Oil Watch; AOW), , 방글라데시 SGM (SGM Bangladesh), 범 아라칸 청년학생연맹 (the All Arakan Student and Youth Congress; AASYC) 및 어쓰라이츠 인터내셔널 (EarthRights International; ERI)을 포함한다. SGM 의 사명은 슈에 가스 프로젝트와 관련한 인권유린 및 환경침해를 방지하고, 버마에서의 개발 정책결정에 관해 진실성있고, 배타적이지 않으며, 민주적인 참여를 도모하는데에 있다.

다른 이의제기 제출인들은 국제민주연대(the Korean House of International Solidarity; KHIS)와

¹ 버마는, 1989년에 집권한 군사 정권에 의하여 여론 수렴없이 미얀마로 이름이 바뀌었다. 버마언어에서는, *Bama*와 *Myanma*가 같은 의미로 쓰이나, 영어로는 “버마(Burma)”가 민주화 운동권에서 일반적으로, 또 이의제기 제출인들에 의해, 선호된다.

² 참조: EarthRights International, *익명인 대(對) Unocal*, <http://www.earthrights.org/legal/unocal/>.

³ 대우(Daewoo)와 한국가스공사 (KOGAS)의 가스 개발 프로젝트가 버마의 주민들에게 끼치는 직접적 영향에 대한 설명은, 본 이의제기서의 제 I.iv. 항과 제 V 항 참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Korean Confederation of Trade Union, KCTU), 함께하는 시민행동(Citizen's Action Network, CAN), 한국노동조합총연맹(Federations of Korean Trade Unions, FKTU), 버마민주화를 지원하는 모임(People for Democracy of Burma), 버마를 사랑하는 작가모임(Writers for Democracy of Burma), 새사회연대(Human Rights Solidarity for New Society), 외국인 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The Association for Migrant Workers' Human Rights), 버마행동(Burma Action Korea)이다.

ii. 관련 기업체들의 신원

대우인터내셔널 (Daewoo International)은 한국 서울에 법인등록된 공개 기업으로서, 버마 (미얀마) 아라칸 주 (Arakan State) 앞바다에 위치한 A-1 및 A-3 천연가스 블럭 (natural gas block)들을 관장하는 컨소시움, 즉 슈에 컨소시움 (the "Shwe Consortium")의 지분 51%를 소유하고 있다.⁴ 한국가스공사 (KOGAS)는 슈에 컨소시움 지분 8.5%를 소유하고 있는, 상장된 국영기업이다. 한국가스공사의 최대 지분은 대한민국 정부가 소유하고 있고 (26.9%), 그 다음으로는 국가가 과반이상의 지분을 소유한 한국전력공사 (Korea Electric Power Corp.; KEPCO), 지역 자치단체들,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의 순으로 소유하고 있다.

상기 기업체들과 이의제기인들 간의 지금까지의 연락

대우인터내셔널은 2005년 12월 12일, 슈에 프로젝트에 대한 국제민주연대 (KHIS)의 공개 반대입장에 대한 응답으로서 동 연대의 한 대표인과 전화 통화를 가졌다. 그 후 대우인터내셔널은 국제민주연대(KHIS) 사무실로 팩스 서한을 보내왔는데, 이 서한에서는 왜 국제민주연대와 연대단체 (partner)들이 슈에 프로젝트를 반대해서는 안 되는지에 대한 이유는 제시하지 않았으나, 대우는 이 서한에서 "이성적인 대화 (reasonable dialogue)"에는 응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⁵

2006년 11월 ERI와 환경운동연합 (KFEM)은, 대우인터내셔널과 한국가스공사 양 측에 전달한 서한을 통하여, 슈에 프로젝트가 버마의 야다나 (Yadana) 및 예타건 (Yetagun)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발생한 것과 흡사한 인권유린 및 환경침해를 일으킬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하였다 (아래 제 IV.i 항 참조). 이 서한을 통하여, 동 기업들이 국제 기준에 따라,⁶

⁴ 참조: <http://www.daewoo.com/english/index.jsp>.

⁵ 대우인터내셔널 (Daewoo International Inc.)이 국제민주연대 (KHIS)에 2005년 12월 12일에 보낸 팩스의 비공식 번역은 이의제기 제출인에 의해 접수되었음.

⁶ EarthRights International 이 대우인터내셔널(Daewoo International) 과 한국가스공사 (KOGAS)에 보낸 서한들을 참조. 이 서한들에는, 슈에 프로젝트(Shwe Gas Project) 실시를 위한 환경영향평가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EIA))의 필요성을 명시하는 국제법과 대한민국법이 설명되어있음, 2006년 11월 16일, http://www.earthrights.org/submissions/update_shwe_gas_project.html 에서 볼 수 있음 (2008년 9월 30일 최종 확인). 이 서한들에서 볼수있듯이, 환경에 심각한 영향을 주는 프로젝트를 위한 환경영향평가(EIA)의 필요성은, 법조계의 전문가들 사이에서 일반적으로 국제관습법 (customary international law) 에 속한다고 간주된다. 스톡홀름 컨벤션(Stockholm Convention, 1972), 리오 선언(Rio Declaration, 1992)의 원칙 15 와 17 항, 또, 많은 국제 대부업자들이 환경영향평가(EIA) 절차를 채택하여 이에 따를 것을, 프로젝트나 개발의 편당의 선행조건으로 요구한다. 모든 다자참여 개발 은행은 환경 평가 정책을 채택하여, 제안된 프로젝트 활동에 적용한다. 아시아 개발 은행(ADB)은 1980년 초에 환경영향평가(EIA) 절차를 채택하였고, 세계은행(WB)의 환경평가지침은 1989년 처음으로 발표되었다. 이와 마찬가지로, 대한민국 법은, 대한민국의 환경에 심각한 영향을 주는 프로젝트에 대해 환경영향평가(EIA)를 요구하고 있다. (환경 보존법 [The Environmental Preservation Act] (1977); 환경 기본법 [the

슈에 프로젝트에 대한 환경영향평가(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EIA), 사회적 영향 평가 (Social Impact Assessment; SIA) 및 인권영향평가 (Human Rights Impact Assessment; HRIA)를 실시할 것을 요청하였다. 오늘 현재, 두 기업 중 어느 하나도 이 서한에 관해 접수 확인도, 응답도 해 오지 않고 있다.

2008년 4월, 본 이의제기서의 연대 서명자인 국제민주연대 (KHIS)와 환경운동연합 (KFEM)을 포함한 몇몇 한국의 비정부단체들은 한국국가인권위원회(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NHRCK)에 정책권고 (policy recommendation)와 조사 (investigation)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접수시켰다. 동 위원회는 한국 국가인권위원회법 제 32항에 의거 이 건이 관할사항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리고 조사 착수와 정책 권고에 대한 진정을 기각하였으나, 동 진정서에서 제기된 이슈의 다른 측면에 관하여는 아직 고려중에 있다.

iii. 대우인터내셔널 (Daewoo International)과 한국가스공사 (KOGAS)가 버마에서 행하고 있는 위반사항들의 요약

본 이의제기서에 기술된 바와 같이 (아래 제 IV(ii) 항 및 제 V 항 참조), 버마에서의 대우와 한국가스공사의 천연가스 프로젝트는 이미 인권침해와 연관이 있다. 지역주민 중 자신들의 인권을 행사하여 슈에 가스 프로젝트 (Shwe Gas Project)에 대한 반대를 표명한 사람들은 군사정권에 의한 엄포와 물리적 행사를 경험하였다.⁷ 2008년 4월부터 아라칸 주의 학생들은 대우가 이끄는 프로젝트에 반대하는 포스터를 공공 장소에 붙였다는 혐의로 슈에 프로젝트에 반대한다는 의심을 받고 억류, 조사 받고 비밀기지에 보내졌다.⁸ 2007년 6월과 7월, 슈에 프로젝트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공개캠페인이 벌어진 후, 정부에 의해 일시적인 지역적 통금조치가 선포된 데 이어, 이 캠페인에 참여한 것으로 의심되는 지역 활동가들이 체포되었다.⁹ 이 프로젝트가 시작된 후, 몇몇 지역주민들과 그들의 가족, 친지들이 프로젝트에 반대하거나 프로젝트에 반대하는 사람들과 내통한 혐의로 군대에 의해 구류, 조사되고 감추어졌다.¹⁰ 슈에 프로젝트는 아라칸 주에서의 강제 이주와 관련되어 있다.¹¹ 바데이 섬 (Badday Island)의 5개 마을에 일어난 강제 퇴출에 관한 보고가 있었으며, 여기에서는 주민들이 섬을 에너지 회사에 넘겨 주어야 하니 반드시 떠나라는 말을 들었다고 하는데 이들에게는 어떠한 보상도 주어지지 않았다.¹²

벵갈만 (Bay of Bengal) 앞바다 굴착시설 (drilling rig) 주변의 수역은 한 때는 물고기가 풍부한 주요 어장이었으나, 이제는 군이 순찰하는 출입금지 수역으로서 지역 어민들에게는 조업이 금지되어 있다. 이 금지 수역에서 조업을 했다는 이유로 어민들을 군인들이 마구 폭행하고

Basic Environmental Act] (1990)).

⁷ EarthRights International 인터뷰 032-2008, Sittwe, 아라칸 주(Arakan State), 버마, 2008년 9월 9일, ERI에 의해 접수; SGM 인터뷰, SGM에 의해 접수.

⁸ 상동

⁹ 참조: 아래의 각주 176번, “군사통제하의 아라칸 주,” 칼라단 뉴스(Kaladan News), 2007년 6월 8일. http://www.bnionline.net/index.php?Itemid=6&id=1805&option=com_content&task=view 에 게재 (2008년 9월 5일 최종 확인)

¹⁰ ERI와 SGM 인터뷰, 위의 각주 7번.

¹¹ Amnesty Report, 아래의 각주 89번.

¹² “북쪽에 있는 우리 친구들”, 아래의 각주 141번. Graeme Jenkins, *Burmese Junta Profits From Chinese Pipeline*, The Daily Telegraph, Jan. 16, 2008, available at <http://www.telegraph.co.uk/news/uknews/1575571/Burmese-junta-profits-from-Chinese-pipeline.html> (2008년 10월 28, 2008 최종확인).

체포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이곳이 금지구역이라는 것은 이 어민들은 모르는 사실이었다.¹³ 당국은 슈에 프로젝트와 연관있는 것으로 짐작되는 바다 앞 지점들로 승객들을 실어 나르기 위해 주민 소유의 선박들을 정기적으로 압류하고 있다. 당국은 이 압류된 선박들을, 대우와 한국가스공사의 해저 탐사 및 시추가 시작되자 금지구역으로 지정된 수역을 순찰하는데에도 이용한다는 보고가 있는데, 이 선박의 소유주들은 어떠한 금전적 보상도 연료 보상도 받지 못했다.¹⁴ 당국에게 재산을 내 놓기를 거부하는 경우는 드문데, 그 이유는 그렇게 하다가는 소유주의 재정적, 신체적 안전에 대한 반항을 불러올 수 있다고 누구나 알고 있기 때문이다.¹⁵ 아라칸의 한 상인의 말을 빌자면, “당국자들이 앞바다 굴착지점에 가고 싶어하면, 이 지역의 선박이 당연히 그들을 그 곳에 데려다 줄 것이라고 기대해요. 당국자들은 석유나 기타 어떤 것도 제공하지 않아요 만일 선박 주인이 [당국자를 배에 싣고 바다로 나가기를] 거부하면, 조만간에 잡혀 가거나, 영업을 그만 두어야하게 되지요.”¹⁶

많은 자료가 입증하는 버마 군부의 인권 기록과 대규모 개발 계획과 연관된 이들의 심각한 위반의 행적을 고려할 때,¹⁷ 그리고 대우와 한국가스공사가 제안한, 해저 굴착지점으로부터 시작하여 나라를 가로지르는 파이프라인 계획을 고려할 때, 누군가가 개입하지 않는 한, 슈에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상기한 유린행위와 여타 유린 행위들은 계속 일어날 것이고 또한 증가 할 것이라고 예견할 수 있다. 공사 계획이 서 있는 이 파이프라인은 슈에 가스를 중국으로 운반하는 것으로서, 최소 24 개의 마을과 버마의 몇몇 고밀도 인구 중심지를 횡단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 곳에서 강제 퇴출 또는 강제 노동등과 같은 다른 인권 유린 행위가 일어 날 가능성이 있다.

환경에 대한 우려도 이에 못지않게 심각하다. 즉, 제안된 바 대로 중국으로 가는 슈에 파이프라인이 완성되면, 망그로브 늪지대(mangrove swamp)나 강 하구(estuary)등 환경적으로 민감한 생태지역들을 횡단하게 되며, 이 지역들은 누군가의 개입과 건실한 환경계획이 없이는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게되는 지역들이다. 본 이의제기의 V.i, V.iii, V.v 항에서 설명하듯이, 회사들은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았고, 영향을 받는 지역 공동체들에게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으며, 지역 공동체와의 협의를 거치지도 않았다.

대우인터내셔널과 한국가스공사는 슈에 가스 프로젝트에 개입함으로써, 본 이의제기서의 제 IV 항에서 자세히 기술할 바와 같이 경제협력기구의 다국적 기업을 위한 지침서(OECD Guidelines for Multinational Enterprises) 중 다음의 사항에 관해 현재 위반 중 이거나/ 이면서 앞으로 위반할 가능성이 있다:

- 지속가능한 개발에 공헌하지 아니하고, 슈에 프로젝트에 의해 영향을 받는 사람들의 인권을 존중하지 아니함으로써, OECD 지침서 제 II 장, 1 조와 2 조 (OECD Guideline Ch.

¹³ 상동, *공급과 지휘*, 아래의 각주 140 번, p22. , p31.

¹⁴ ERI 인터뷰, 위의 각주 7 번.

¹⁵ 상동

¹⁶ 상동

¹⁷ 예를 들어, Doe 대. Unocal Corp., 963 F. Supp. 880 (C.D. Cal. 1997) 참조; 또한 다음문서 참조 EarthRights Int'l (ERI)과 동남아시아 정보 네트워크 (SAIN), *총체적부인* (2000); EarthRights Int'l (ERI)과 동남아시아 정보 네트워크(SAIN), *계속되는 총체적부인: 버마의 Yadana 과 Yetagun 파이프라인을 따라일어나는 지구권 유린행위* (2001); EarthRights Int'l (ERI), *같은 일의 계속: 계속되는 버마의 강제 노동* (2001); EarthRights Int'l (ERI) *계속되는 총체적부인: 버마의 Yadana 과 Yetagun 파이프라인을 따라일어나는 지구권 유린행위* (2003); EarthRights Int'l, *에너지를 위해 인간이 겪는 고통: 군사집권 버마 (미얀마)에서의 탄압을 경제적으로 지원하고, 인권유린으로 이익을 누리는 쉘브론(Chevron)의 계속적인 역할* (2008).

- II, § 1 and 2)를 위반.
- 자신들의 활동과 재정적 성과에 관련한 정보를 일반인 및 영향을 받는 지역사회에 공개하지 아니하고, 자신들의 활동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 지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consult) 아니함으로써, OECD 지침서 제 III 장 1 조 및 제 V 장 2 조 (*OECD Guideline Ch. III, § 1 and Chp V, § 2*)를 위반.
- 강제 노동을 없애는데에 공헌하지 아니함으로써, OECD 지침서 제 IV 장 1 조(c) (*OECD Guideline Ch. IV, § 1(c)*)를 위반.
- 이미 철저한 해저 탐사를 수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EIA 를 실시하지 아니함으로써, OECD 지침서 제 V 장 3 조(*OECD Guideline Ch. V, § 3*)를 위반.

iv. 한국 국내연락사무소 (national contact point)에 드리는 구체적인 요청

이의제기 제출인들은 한국 측 국내연락사무소 (NCP)에게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사항을 요청한다:

- 여기서 제기한 위반들의 해결책에 관련하여 이의제기 제출인들과 해당 기업 사이의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 지도록 도움을 주실 것.
- 대우 인터내셔널과 한국가스공사가 인권과 환경의 보호를 위해 제안된 예방적 조치의 현실화에 있어서 관련된 이해당사자들이 동의를 확보하도록 촉구할 것.
- 본 이의제기서를 접수하시면, 책임있게 이에 대한 응답을 서면으로, 명확히, 지체없이 해주실 것.
- 이 이의제기를 취급하는 과정에서 한국 국내연락사무소 측 진행 상황을 이의제기 제출인들에게 알려 주실 것.
- 이 이의제기와 관련하여 한국 국내연락사무소 측에서 SGM 에 제공하거나 일반에게 공개하는 문건은 영문으로 번역해 주실 것.
- 이 이의제기를 한국 국내연락사무소가 취급한 후 도출된 결과에 대한 최종 발표문을 작성하셔서, 영문으로 번역한 후, 일반에게 공개 해 주실 것.

현재 진행 중인 지침서 위반 사항들을 진정으로 해결하기 위한 개입 및 해당 기업과 이의제기 제출인들 사이의 의미있는 대화가 없다면, SGM 은 회사측과 한국정부가 슈에 프로젝트를 연기하게끔 합리적인 요구를 계속할 것이다. SGM 은 한국 측 국내연락사무소가 슈에 가스 프로젝트와 연관된 이런 매우 심각한 사례들과 인권과 환경에 대한 위협사항에 대해 상호간에 원만한 해결책을 찾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II. 적용 근거

i. 왜 대우인터내셔널 (Daewoo International)과 한국가스공사 (KOGAS), 그리고 본 이의제기서는 지침서의 적용대상이 되는가

OECD 의 가맹국이자 지침서의 서명국으로서, 한국은 한국에 본사를 둔 다국적 기업이 해외에서 행하는 활동들이 지침서에 부합되도록 권장할 책임이 있다. 한국의 모든 다국적 기업들과 그들의 활동들은, 그 활동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는지와 무관하게, 지침서의 적용을

받는다.

대우인터내셔널과 한국가스공사는 각각이 한국에 기업등록되어있고, 한국 증시 (KOSCOM)에 상장되어 있다는 사실로 인해, 지침서의 원칙과 표준의 적용 대상이 된다.

대우인터내셔널 은 한국 서울에 법인등록 되어있고, 버마 (미얀마) 아라칸 주 (Arakan State) 앞바다에 위치한 A-1 및 A-3 천연가스 블록 (natural gas block)들을 관장하는 컨소시움의 지분 51%를 소유하고 있다.¹⁸ 이 기업은 한국 증시에 상장되어 있고(KOSCOM 047050) 장외시장(OTC 시장)에서 거래된다 (DWOIF.PK).

한국가스공사는 슈에 컨소시움 지분 8.5%를 소유하고 있다. 한국가스공사의 최대 지분은 대한민국 정부가 소유하고 있고 (26.9%), 그 다음으로는 국가가 과반이상의 지분을 소유한 한국전력공사 (Korea Electric Power Corp.; KEPCO), 지역 자치단체들,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의 순으로 소유하고 있다. 이 기업의 본사는 한국 성남시에 있고, 한국 증시에 상장되어 있으며 (KOSCOM 036460) 장외시장(OTC 시장)에서 거래된다 (KRAGF.PK).

지침서에 의하면, 국내연락사무소 (NCP)는 비정부기관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해 주어야 하며, 제기된 사항들을 “지체없이 효율적으로” 처리해 주어야 한다.¹⁹ 본 이의제기서는 지침서에 대한 현제의 위반사항과 함께, 장래에 더 심각하고도 더 광범위한 위반이 일어날 임박한 가능성을 상세히 기술하고 있다.

ii. 왜 이 시점에서 국내연락사무소(NCP)의 개입이 요청되며 필요한가

버마는 OECD 기준을 따르지 않는 국가이며 국가 국내연락사무소 (NCP)이 없는 반면, 대우와 한국가스공사는 한국에 법적으로 등록되어 있고 한국에 본사를 두고 있으므로, 한국 국내연락사무소 (NCP)가 본 이의제기를 신청할 적절한 장소가 된다. 한국 기업들과 한국 정부의 지분을 합하면 슈에 가스 프로젝트 지분의 과반 이상이 된다.

버마에서의 석유 및 가스 개발은 인권유린을 직접적으로 야기하였다.²⁰ 본 이의제기서에서 설명된 바와 같이, 영향을 받는 지역사회의 여론을 수렴하는 것을 포함하여 지침서의 여러 사항들이 대우와 가스공사에 의해 이미 위반되고 있으며, 동 기업들은 이 프로젝트가 진행됨에 따라 더 많고 더 극단적인 위반에 대한 공모성 책임을 질 위험에 처해 있다. 대우의 활동은 앞으로 지속가능한 개발과 환경 보호를 더욱 저해하게 될 것이며, 버마의 비슷한 여타 프로젝트 때에 벌어져 많은 기록이 남아있는 강제 노동, 강제 이주와 같은 부류의 유린행위와 여타 부류의 유린행위에 대해 대우의 활동이 공헌하게 될 것임을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있다. 버마내의 인종적으로 버마인이 아닌 주민들이 이러한 유린행위의 피해자가 될 것이며, 또한 버마 중부에 살면서 극빈 농민이거나 농장 (plantation) 농민인 경우가 많은 극도로 가난한 버마인 인구도 피해자가 될 것이다.

¹⁸ 참조 <http://www.daewoo.com/english/index.jsp>.

¹⁹ 다국적 기업을 위한 경제협력기구(OECD) 지침서: 이사회의 결정, 2000년 6월, “절차안내” 특정한 경우에서의 이행. http://www.oecd.org/document/39/0,3343,en_2649_34889_1933095_1_1_1_1,00.html 에 게재 (2008년 9월 30일 최종 확인).

²⁰ 참조, 위의 각주 21 번.

대우인터내셔널은 슈에 가스 프로젝트(Shwe Gas Project)의 운영자이다. 대우와 한국가스공사의 지분의 합이 이 프로젝트 지분의 과반이 넘는다는 사실은, 이 두 기업들이, 가능한 한도 내에서, 이 프로젝트가 지침서에 부합되도록 할 능력과 의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해 준다. 본 이의제기를 경청함으로써, 국내연락사무소 (NCP)는 심각한 인권유린과 환경파괴를 저지할 기회와, 이미 일어나고 있는 유린사건의 피해를 줄일 수도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는 것이며, 그렇게 함으로써 지침서의 다음과 같은 취지를 살릴 기회를 가지는 것이다: 즉, 기업 책임의 국제적 기준을 제공하고, 국제적 사항들에 대해 서로가 만족할 수 있는 해결책을 도출하기 위해 노력하는 장을 마련하는 것.

한국 국내연락사무소 사무소는 지침서의 위반사항 고발에 대해 전향적(前向的)으로 이의제기를 처리해 온 성공사례들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면, 2002년에 한국 국내연락사무소는 과테말라에서 활동하는 한국 식물 업체와 과테말라 근로자 사이에 발생한 노동분쟁에 개입하였는데,²¹ 이 때는 지침서의 제 4 장(Chapter IV), 고용 및 산업 관계의 위반이라는 항의가 있었다.²² 한국 국내연락사무소는 한국의 장관들과 해당 업체의 대표들 사이의 회동을 비롯한 몇 회의 회동을 주선하였고,²³ 그 이의제기는 그 업체의 경영진과 노동조합이 2003년 7월에 단체협약에 도달함으로써 결론지어졌다.²⁴

III. 버마에 관한 배경 설명

i. 지리와 인구

버마는 서남 아시아 대륙에 있는 국가로서는 땅 면적을 기준으로 가장 큰 국가로서, 현 군사정권은 인구를 5 천 7 백만 명 이상으로 추정하고 있다.²⁵ 인종적으로 버마인은 인구의 60%로 추정되며, 나머지 40%는 아라칸 (Arakan), 친 (Chin), 카친 (Kachin), 카렌 (Karen), 카레니 (Karenni), 몬 (Mon), 산 (Shan)이라는 7 가지 주요 민족과, 130 가지 이상의 다른 소수 그룹으로 구성되어 있다.²⁶ 이 나라는 7 개 주 (state)과 7 개 구역 (division)으로 나뉘어 지는데, 이 구분은 영국 식민지 시대 (1826-1948)에 민족적, 인종적 경계를 따라 만들어 진 것이다.²⁷ 사용되는 언어는 몇 백가지이며, 버마인이 중심인 현 군사정부는 이 중 버마어 만을 공용언어로 인정하고 있다. 버마 인구의 80% 이상은 불교도이며, 여기에 소수의 기독교인, 회교인, 힌두교인들이 있다.

²¹ 다국적 기업을 위한 경제협력기구(OECD) 지침서: 국가 국내연락사무소들의 2002년 연례 회의, 의장의 보고서, 2002년 6월 10-11일 <http://www.oecd.org/dataoecd/24/4/1956371.pdf> 에 게재 (2008년 9월 5일 최종 확인).

²² 상동

²³ 상동

²⁴ 상동

²⁵ *미얀마의 새 빛*, 2008년 5월 27일, XVII 권, 39호. 국민투표 실시에 관한 의장의 성명서에 따르면, 전체 국민의 수는 57,504,368 명으로 되어 있다.

²⁶ 미얀마 호텔 및 관광부, 미얀마의 주요 여덟(8) 인종,

<http://www.myanmar.gov.mm/ministry/hotel/fact/race.htm> (2008년 9월 5일 최종 확인).

²⁷ 민족중심의 주(state)는 그 지역의 주된 민족의 이름을 따르며, 구역 (division)은 주로 버마인이나, 이들은 인종적으로만 나뉘는 것은 아니다. 구역 (division)에는 Irrawaddy, Bago, Magwe, Mandalay, Sagaing, Tennasserim, 및 Rangoon 이 있고, 주(state)에는 Chin, Kachin, Karen, Karenni, Mon, Arakan, 및 Shan 이 있다. 버마의 수익을 높은 천연 자원은 역사적으로 이 나라의 소수민족이 거주하는 지역에 불균형하게 집중되어 있다.

ii. 정부와 정치

버마의 정부와 정치를 이해하는 것이, 더 포괄적인 정치적 장애물을 이해하고 대우와 한국가스공사가 사업을 행하고 있는 정치적 환경을 이해하는 것에 도움이 된다.

버마는 1962 년 부터 군사독재하에 있다. 현 정권인 국가평화개발평의회 (State Peace and Development Council; SPDC)는 탄 슈에 장군(Senior General Than Shwe) 이 이끌고 있다.

1990 년 아웅 산 수찌 (Daw Aung San Suu Kyi) 가 이끄는 야당 즉, 민주주의를 위한 국가연합(National League for Democracy; NLD)이 총선에서 의회 의석의 80%를 확보하였다.²⁸ 당시에 국가법질서회복평의회(State Law and Order Restoration Council; SLORC)라 불리던 군사정권은 이 선거의 결과를 인정하지 않았다.²⁹ 수찌는 지난 18 년 중 거의 13 년을 가택구금 상태로 지냈으며, 2008 년 5 월 27 일 이 상태는 일 년 더 연장되었다.³⁰ 수찌는 1991 년 버마의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한 투쟁을 인정받아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였다.³¹

버마는 1948 년 식민지배로 부터의 독립 이후 내란에 시달려 왔다. 계승한 정권들에 대해,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이유 때문에 몇몇 민족 그룹들이 무장하여 봉기하였고, 이런 무장 봉기중 몇개는 지금도 계속 되고 있다.³² 1989 년 이후 도합 17 번의 휴전합의가 군사정권과 여러 무장 민족 그룹 사이에 이루어 졌으나, 이러한 합의들은 지속적인 평화나 정치적 안정을 가져오지 못하였고, 인권이나 환경보호도 이루어 내지 못하였다.³³

2008 년 5 월 10 일과 24 일, 태풍 나지스(Nargis)에 의한 사상 최악의 인도주의적 재난의 와중에서, 현 군사정권은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투표를, 이를 연기하라는 국제적 압력에도 불구하고 실시하였다.³⁴ 이 헌법개정안이란 억압적이며 비민주적이라고 국제적으로 지탄받아 온, 14 년간 계속 된 국민회의 (National Convention)의 결과물이었다.³⁵ 버마에서는, 이 국민회의 대한 비판이 법으로 구체적으로 금지되어있다.³⁶ 이 국민투표는 많은 사람들로 부터 부정투표로 여겨졌고, 군부에 의해 자행된 유권자에 대한 공공연한 강요와 협박, 그리고 표 조작, 투표 방해

²⁸ 미국 국무부, *배경 노트: 버마* (2007), <http://www.state.gov/r/pa/ei/bgn/35910.htm> (2008 년 9 월 5 일 최종 확인) (이하, *배경 노트*로 칭함).

²⁹ 상동

³⁰ “서방세계는 수찌(Suu Kyi)의 감금에 놀람”, Aung Hla Tun, 로이터(Reuters), 2008 년 5 월 28 일, <http://www.reuters.com/article/topNews/idUSBKK1919620080528?sp=true> (2008 년 9 월 5 일 최종 확인).

³¹ 노벨상 1991 년, http://nobelprize.org/nobel_prizes/peace/laureates/1991 (2008 년 9 월 5 일 최종 확인).

³² 예를 들어, the Karen National Union (KNU), the Shan State Army South (SSA-S), 그리고 the Karenni National Progressive Party (KNPP) 은 태국 국경의 변두리 부분을 따라 그들이 저항전쟁이라고 칭하는 전쟁을 계속하고 있다. SPDC는 인종집단을 분할하고 정치적 무장집단을 패배시키기위하여 봉기세력 진압작전을 계속하는데, 이는 버마 동쪽의 여러지역의 주민들의 심각한 인권유린으로 이어진다.

³³ Oo, Zaw 및 Win Min (2007) *버마의 휴전 협정 평가*, 동서 센터 (East-West Center), 워싱턴(Washington D.C.), 정책연구 39 (동남 아시아), p.1.

³⁴ 인권 감시(Human Rights Watch), *버마: 생명을 구하기 위해 국민투표 연기하라*, 2008 년 5 월 9 일, <http://hrw.org/english/docs/2008/05/08/burma18783.htm> (2008 년 9 월 5 일 최종 확인).

³⁵ 인권 감시(Human Rights Watch), *버마: 헌법개정을 위한 국민투표를 거부하라*, 2008 년 5 월 17 일, <http://hrw.org/english/docs/2008/05/17/burma18862.htm> (2008 년 9 월 5 일 최종 확인).

³⁶ 인권 감시(Human Rights Watch), *버마, 국가 보고서 2008 년 1 월*, p.1, <http://hrw.org/wr2k8/pdfs/burma.pdf> 에 게재 (2008 년 9 월 5 일 최종 확인).

등이 보고되었다.³⁷ 어떤 투표자들은 찬성표를 찍도록 강요받았다는 보도가 있다.³⁸

이 헌법은 2008년 5월 29일 2천 700만이 넘는 유권자 중 98.12%의 지지를 받았다는 주장으로 정권에 의해 비준되었다. 정권은 이 결과가 야당인 NLD의 1990년 승리를 무효화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2010년으로 총선거획이 잡혀있다.³⁹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헌법 상에는 토지와 주택에 관한 권리나, 국가가 몰수한 토지에 대한 보상 등에 관한 규정이 없다는 점인데,⁴⁰ 지하자원이 풍부한 이 나라에서는이 점들이 중대한 관건이 되며, 버마에서 개발 사업과 연관된 유린사례들은 이러한 권리 및 보상과 연관되어있다.⁴¹

iii. 경제

버마의 경제에 대한 정보는 대우와 한국가스공사가 사업을 하고 있는 이 나라의 더 포괄적인 경제적 배경을 이해하는 배경이 된다. 버마 경제의 현 상태는, 지침서에 거론된 필수 사항과 보호사항이라는 관점을 넘어, 버마의 석유, 가스 부문에 대한 한국의 투자가 갖는 더 넓은 경제적 의미를 조명하여 준다.

버마의 경제는 현 군사정권의 잘못된 경영으로 인한 피해에 빠져있다.⁴² 세수입을 과다하게 지출하는 이 정권은 화폐를 찍음으로서 문제를 해결하려 해 온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이는 극심한 인플레이션과 “화폐 혼란”을 야기하였다.⁴³ 대부분의 버마 국내 기업들은 군사정권의

³⁷ 상동

³⁸ “미얀마 군사정권은 수찌 (Suu Kyi)의 승리를 무시하다”, 연합통신(The Associated Press), 2008년 7월 6일, <http://www.sfgate.com/cgi-bin/article.cgi?f=/n/a/2008/07/05/international/i215733D69.DTL&feed=rss.business> 에 게재 (2008년 9월 5일 최종 확인).

³⁹ 상동

⁴⁰ 인권협의회 (Human Rights Council), 제 7 차 회의, 제 4 항목, “협의회가 주시해야 할 인권상황,” 미얀마의 인권상황에 관한 특별 보고관의 보고서, Paulo Sergio Pinheiro, A/HRC/7/18, 2008년 3월 7일, p.16, <http://daccessdds.un.org/doc/UNDOC/GEN/G08/115/16/PDF/G0811516.pdf?OpenElement> 에 게재(2008년 9월 5일 최종 확인).

⁴¹ 위의 각주 17 번; 버마의 수력발전 분야와 관련된 인권과 환경에의 영향에 대해 여러 비정부기구들(NGO)이 작성한 웹링크와 보고서가 필요한 경우 www.salweenwatch.org 에 있는 Salween Watch 를 참조. 버마의 채광에 의한 영향은 다음을 참조할 것: ERI, *보물을 눈물로 바꾸기*, Chiang Mai, 태국, 2007년 1월; ERI 와 카렌 환경및 사회 활동 네트워크(Karen Environmental and Social Action Network (KESAN)), *분쟁에서 이익연기: 벌채와 채광이 버마의 환경파괴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가*, 2003년; Smith, Matthew “버마에서 볼수있는 채광의 환경지배” *미얀마: 국가, 공동체 그리고 환경*, Monique Skidmore 와 Trevor Wilson 편집, 오스트레일리아 국립 대학 전자 출판부(E-Press) 및 아시아 퍼시픽 출판사 (Asia Pacific Press), 2007년; Roger Moody, *무덤파는 사람들: 버마의 채광에 관한 보고*, 캐나다 아시아 자원 네트워크(Canada Asia Resource Network), 1999년 9월; 8088 버마와 AKSYU (총카친학생및청소년 유니온(All Kachin Student and Youth Union))을 위하여, *피의 옥: 버마의 보석과 배이징 게임*, 2008년 8월; 이미지 아시아/Images Asia)와 판 카친 개발 단체 (Pan Kachin Development Society (PKDS)) *어떤 값을 치루고? 버마의 Kachin State 에서의 금 채광*, Nopburee Press, Chiang Mai, 2004년. 채광의 영향에 관해서는 다음을 참조, 글로벌 증인(Global Witness), *중국의 선택: 버마 국경 산림 파괴의 종식*, 2005년; 글로벌 증인(Global Witness), *이해의 대립: 버마의 산림의 불확실한 미래*, 2004.

⁴² 참조 Turnell, Sean, “버마의 경제 2008년: 현재의 상황과 개혁의 전망” 버마 경제 관찰 / 경제 학과, Macquarie University, 시드니, 오스트레일리아, 2008년 5월, 또한 다음 참조: “가스 공격” Sean Turnell, 월스트리트 저널 온라인, 2007년 9월 4일, http://burmalibrary.org/docs4/Gas_Attack-Sean_Turnell.pdf 에 게재 (2008년 9월 5일 최종 확인)

⁴³ Turnell, Sean (2008년 5월) “버마의 경제 2008년: 현재의 상황과 개혁의 전망” 버마 경제 관찰 / 경제학과, Macquarie University, 시드니, 오스트레일리아, p.3.

엘리트 멤버나 이 정권과 가까운 파트너들에 의해 소유되거나 경영되고 있고, 2007 년도에 버마는 세계에서 가장 부패한 경제로서 집계되었는데, 이는 소말리아와 동격이며, 이라크 보다 조금 더 부패한 것이다.⁴⁴ 유엔 (UN)의 기준에 따르면, 이 나라는 “가장 덜 개발된 국가”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⁴⁵

이러한 지위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에는 석유, 가스, 목재, 금, 구리, 니켈, 보석, 옥 (jade) 등 상업적 개발 가치가 있는 자원이 풍부히 묻혀 있다. 추정치 90 조 세제곱 피트 (90 trillion cubic feet)의 추출 가능한 천연 가스 매장분이 있으며, 약 32 억 배럴의 추출 가능한 원유가 19 개의 내륙 유전과 3 개의 근해 유전에 나뉘어 매장되어 있다.⁴⁶ 이를 세놓으려 하는 군사정권의 행동은 보기 드문 행동이 아닌 것이다.⁴⁷

농업, 임업 그리고 어업은 버마 GDP 의 약 50%를 차지한다. 이 나라의 경제는 2008-09 년도에도 1-2% 로 약하게 성장할 것으로 예측된다 (2008 년도 실지 GDP 성장은 1.5%로 추정된다.)⁴⁸ 태풍 나르기스(Nargis)가 경제에 미치는 장기적 충격은 이 나라를 더 깊은 경제 위기로 몰아 갈 것으로 보이는데, 이 나라의 쌀 농사 지역의 적어도 50%가 태풍 때에 물에 잠김으로 인해서, 농업 생산이 심각히 줄어 들었다.⁴⁹ 이 지역의 상당 부분이 물에 완전히 휩쓸려 나갔거나 토양에 소금기가 저며들어 사용 불가능하게 되었고, 이 때문에 이 나라이 식량 자급성이 저하되었다.⁵⁰ 거기에 더하여, 이런 문제들은 군사정권이 피해지역에 대한 구호를 방해함으로써 더욱 악화되었다.

버마 경제의 대부분은 국영 기업체에 의해서나, 국가와 밀접한 연관을 갖는 기업에 의해 통제된다. 이런 기업들에는 슈에 프로젝트상 대우와 가스공사의 사업 파트너인 미얀마 석유 가스 회사(Myanmar Oil and Gas Enterprise; MOGE) 도 포함된다. 미얀마의 무역량은 2007 년에 87 억 달러를 달성함으로써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이는 주로 야다나 (Yadana)와 예타건 (Yetagun) 파이프라인을 통하여 태국으로 수출된 천연가스 때문이며, 이 가스는 2007 년도에 군사정권에게 27 억 달러의 수익을 올려 주었는데, 이는 총 수출량의 45%에 해당하며, 2006 년에는 21.6 억 달러의 수익을 올려 주었다. 추정치로 보면, 이 정권은 예산의 약 40%를

⁴⁴ 국제 투명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 “글로벌 인식 지수 2007 년” http://www.transparency.org/policy_research/surveys_indices/cpi/2007 에 게재 (2008 년 9 월 5 일 최종 확인).

⁴⁵ 가장 덜 개발된 국가, 바다가 없는 개발도상국 및 작은 섬 개발 도상국의 고위대표 유엔 사무소, “가장 덜 개발된 국가(LDCs)로 분류하는 기준”, <http://www.un.org/special-rep/ohrlls/ldc/ldc%20criteria.htm> (2008 년 9 월 5 일 최종 확인).

⁴⁶ “교환 협상중에 있는 중국과 대우”, 국제 가스 보고서 (International Gas Report), 2008 년 7 월 28 일, p.14.

⁴⁷ “임대료 추구 (Rent seeking)”는 국가가 외국단체로 부터 경제적 임대료를 원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 경우에는 이익률이 높은 천연자원의 채취를 위한 것으로, 일반적으로 부패를 동반하며, 민간인의 참여없이 이루어지는 것이 특징이다. 버마에서 임대료 추구행위의 빈도는 일반적으로, 버마의 석유와 가스 분야에 직접적외국 투자 (foreign direct investment (FDI))가 들어오는 빈도의 증가로 측정할수 있다. - 이때, 천연자원의 탐사, 채취 및 판매를 위해 군사정부와 외국기업이 양해서, 합의서, 생산 공유 계약서등에 서명하게 된다 - 따라서 이런합의에 대한 군사정부와 버마 국민간의 책임추궁 경로가 없다.

⁴⁸ 경제인 지능단(Economist Intelligence Unit), “버마(미얀마) 국가 보고서,” 2008 년 6 월, p.8 (이하, EIU).

⁴⁹ 상동 , p.2.

⁵⁰ 미얀마 유니언(the Union of Myanmar)의 정부,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및 유엔의 대표들을 포함한 삼자핵심 그룹, 이들은 인도주의와 개발 공동체 (the Humanitarian and Development Community)의 지지를 받음, “나르기스 이후에 대한 합동 평가”, 2008 년 7 월, 다음에 게재된 내용 참조, http://ocha.unog.ch/humanitarianreform/Portals/1/cluster%20approach%20page/Myanmar/21_07_08_asean_nargis.pdf.

군사비로 사용하며, 건강에 1.2-1.5%, 교육에 4-5%를 사용한다.⁵¹

무역과 함께, 버마의 외국인 직접 투자 (foreign direct investment; FDI)도 기록을 갱신하였으며, 이들 대부분은 천연 자원에 관한 투자이다. 공식 집계에 따르면, 2007년도 버마에서의 외국인 직접 투자 중 90% 이상은 석유와 가스 부문에 관한 것이었다.⁵² 공식 집계된 외국인 직접 투자는 5억 4백 8십만 달러로서 이 중 4억 7천 4백 3십만 달러는 석유와 가스 부문에 대한 투자였다.

석유와 가스부문에 비해, 다른 부문들은 버마의 유아적 경제에 있어서 훨씬 적은 비중을 차지한다. 이 이의제기서에 관한 한, 에너지 이외의 부문에서의 한국과 버마의 경제적 관계는 무시해도 좋을 정도인데, 버마 수출량의 약 2.1%가 한국으로 가고, 버마 수입의 약 2.7%가 한국에서 온다.⁵³ 2007년도에 석유, 가스 이외의 분야에 대한 한국의 투자는 버마 어업에 대한 천 2백만 달러에 해당한다.⁵⁴ 대우인터내셔널은 -- 한국 법을 어기고 -- 버마의 한 무기공장에 투자 하였는데, 이 때문에 대우의 간부들이 서울에서 재판을 받고 유죄 판결을 받았다 (아래 제 v.항 참조).⁵⁵

비록 이 이의제기서나 지침서와 직접 관련이 없으나, 한국 국내연락사무소는 다른 국가들이 버마에 대한 투자 관련 위험성에 대한 자국의 해석을 반영하기 위해 어떻게 자국의 외교정책을 수정해 왔는가를 참조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여길 수도 있을 것이다. 몇몇 국가들은 버마에 대해 경제 제재 조치를 가하고 있다. 이 중 가장 강한 것은 미국 정부가 행하는 것으로서, 미국은 미국인 및 미국법인이 버마에 투자하거나, 제 3국인의 버마 투자를 돕는 것을 금하고 있다.⁵⁶ 미국이 가하는 다른 제재 조치로는 버마에서 미국으로 오는 일체의 수입을 금하고 있고, 버마의 특정 국가 기관들의 자금을 동결하였고, 버마 군사 정권내 관리들에게 비자 제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⁵⁷ 2007년, 승려들이 주도하는 평화적인 민주화 시위를 폭압적으로 해산시킨 일이 있는 후 (아래 참조), 미국의 부시 대통령은 두 개의 행정명령을 발표하였는데, 그 중 처음 것은 버마의 정부관리들의 재산에 관한 것이고, 두번째 것은 인권 유린 관련자 개개인과 사회 부패에 책임이 있는 군사정권 지도자들에 관한 것이다.⁵⁸ 그 뿐 아니라, 미국 의회는 버마에서 나오는

⁵¹ *에너지를 위해 인간이 겪는 고통*, 위의 각주 17번, pp.21-23. 버마는 그 지역에서 유일하게 보건 및 교육 비용의 합보다 더 큰 비용을 국방비로 쓰고있는 나라다. *참조* Turnell, Sean (May 2008) “버마의 경제 2008년: 현재의 상황과 개혁의 전망” 버마 경제 관찰 / 경제 학과, Macquarie University, 시드니, 오스트레일리아, p.3 에서 간접 인용.

⁵² “미얀마의 석유 및 가스 분야의 외국투자 지난 한 해 세배 이상 증가”, 연합 통신 (Associated Press), 인터내셔널 헤럴드 트리뷴 (*International Herald Tribune*), 2008년 6월 30일, <http://www.iht.com/articles/ap/2008/06/30/business/AS-FIN-ECO-Myanmar-Foreign-Investment.php> 에 게재 (2008년 9월 5일 최종 확인).

⁵³ *EIU*, 위의 각주 48번, p.18. 버마의 가장 큰 무역상대는 태국과 중국이다.

⁵⁴ 상동

⁵⁵ “대한민국 국민 14명이 미얀마에 무기기술, 설비를 불법적으로 수출했다고 판결받음,” 인터내셔널 헤럴드 트리뷴 (*International Herald Tribune*), 2007년 11월 15일, <http://www.iht.com/articles/ap/2007/11/15/asia/AS-GEN-SKorea-Myanmar-Arms-Export.php> 에 게재 (2008년 9월 5일 최종 확인).

⁵⁶ 미국 행정 명령 13407, 1997년 5월 20일, William Jefferson Clinton 대통령. 미국에 적을 둔 셰브론 (Chevron Corporation)은, 제재 이전의 투자에는 이 행정명령이 해당되지 않는다는 헛점 때문에 버마에서의 투자를 계속하고 있다.

⁵⁷ “2003년에 통과한 버마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한 법과 행정 명령,” 2003년 7월 28일, George W. Bush 대통령. 이 법은 2003년 이후 해마다 갱신되었다. http://www.treas.gov/offices/enforcement/ofac/legal/statutes/bfda_2003.pdf 에 게재 (2008년 7월 21일 최종 확인).

⁵⁸ 미국 행정 명령 13310, 2007년 9월 27일, 미재무부는 이 명령에 따라 재산을 봉쇄할 25명의 버마 정부 고관을 지적하였다; 행정 명령 13348, 2007년 10월 19일, 이 명령은 인권유린과 부패에 책임이 있는 개인에 대한 재산을

보석류가 제 3 국을 통하여 수입되는 것을 구체적으로 제한하는 법을 최근 통과시켰다.⁵⁹ 마찬가지로 유럽연합도, 버마산 보석류와 목재, 금속의 수입을 제한하고 버마 군사정권 지도자들에 대한 비자 금지와 자산 동결을 포함하는 제재를 가하고 있다.⁶⁰

iv. 태풍 나지스 (Cyclone Nargis)

최근 태풍 나지스의 여파와 관련한 인도주의적 문제는, 대우와 한국가스공사가 파트너 관계를 맺고 있는 이 군사정권의 성격이 무엇인지, 또 버마 국민의 전반적 복지라는 관점에서 이들이 중요히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태풍 나지스는 2008년 5월 2일과 3일에 이라와디 삼각주 (Irrawaddy Delta) 지역을 강타하였다. 이 태풍은 약 240만명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었는데, 그 중 약 13만 8천명은 사망 및 실종으로 확인되었고, 45만 가옥이 완전히 파괴되었고, 적어도 80만명이 난민이 발생하였다.⁶¹ 이 재난 후, 버마의 군사정권은 국내외적인 구조 노력을 방해한다는 비난을 여러 곳에서 받았고,⁶² “범죄적 직무유기”를 행하는 것으로 지탄받았다.⁶³ 6월 10일에는 이 나라에서 활동하는 인도주의적 단체들에 관한 새 지침서가 나왔고, 이는 이미 제한된 구조 노력을 더욱 더 방해할 것으로 보였다.⁶⁴ 국제적인 압력을 접한 후, 정권은 이전의 지침서로 되돌렸으나⁶⁵ 이조차 비합리적으로 제한적이며, 인도주의적인 원조를 배달한다는 근본적인 원칙에 배치된다고 간주되는 지침서이다.⁶⁶ 유엔은 최근 이 정권의 외환 규제로 인해 국제적 구조 활동이 수 백만불의 손실을 보았다고 확인하였고, 이렇게 사라진 돈들이 어디로 갔는지는 알 수 없다고 덧붙였다.⁶⁷ 집권 SPDC 당은 압력에 못이겨 외국 기부자들이 이 고수익성 외환 규제를 거치지 않고도 현지 회사들에게 직접 돈을 줄 수 있도록 허락하였고, 이로서 이 문제는 이론적으로는 해결을 보았다.⁶⁸

v. 군부 후원

막을 수 있는 권한을 더 넓혔다.

⁵⁹ 참조: “미국 상원, 버마 보석 수입 금지.” Lalit K Jha, *The Irrawaddy*, 2008년 7월 23일. http://www.irrawaddy.org/highlight.php?art_id=13500 에 게재 (2008년 9월 5일 최종 확인).

⁶⁰ “유럽연합 (EU), 미얀마 군사정권에 제재 개시.” Ingrid Melander, 로이터 (Reuters), 2007년 11월 19일, <http://www.reuters.com/article/mapNews/idUSL19999620071119> 에 게재.

⁶¹ “간략히 본 미얀마의 태풍 피해”, 인터내셔널 헤럴드 트리뷴(The International Herald Tribune) 2008년 7월 21일; 참조, 삼자핵심 그룹, “나르지스 이후에 대한 합동 평가”, 2008년 7월.

⁶² 위의 각주 38 번; “버마정부, 태풍기사에 불만토로”, BBC News, 2008년 6월, <http://news.bbc.co.uk/2/hi/asia-pacific/7439222.stm> 에 게재(2008년 9월 5일 최종 확인).

⁶³ “Gates, 미얀마의 ‘범죄적 방치’를 고발하다”, Eric Schmitt, 뉴욕 타임즈 (New York Times), 2008년 6월 2일, http://www.nytimes.com/2008/06/02/world/asia/02gates.html?_r=1&hp&oref=slogin (last visited June 27, 2008).

⁶⁴ 인권 감시 (Human Rights Watch), “버마: 새규정들로 구제 노력 더욱 지연”, 2008년 6월 12일, <http://www.hrw.org/english/docs/2008/06/12/burma19124.htm> (2008년 9월 5일 최종 확인).

⁶⁵ “버마, 새 운영 지침서를 접어버리다”, *The Irrawaddy*, 2008년 6월 24일, Wai Moe, http://www.irrawaddy.org/article.php?art_id=12944 에 게재 (2008년 9월 5일 최종 확인).

⁶⁶ Univ. of California, Berkeley, 인권 연구소와 Johns Hopkins Bloomberg School of Public Health, 보건 및 인권을 위한 연구소, *몰려오는 폭풍: 버마의 전염병과 인권*, 2007년 7월, pp.4-5.

⁶⁷ “유엔은 미얀마 구호와 관련 외환 유실을 확인”, Deutsche Press-Agentur, 2008년 7월 24일, http://www.monstersandcritics.com/news/asiapacific/news/article_1419255.php/UN_acknowledges_foreign_exchange_loss_in_Myanmar_relief_Roundup 에 게재 (2008년 9월 5일 최종 확인).

⁶⁸ “유엔과 미얀마는 보조금의 문제를 해결, 이론적으로” Ed Cropley, 2008년 8월 18일, 로이터 (Reuters), http://uk.reuters.com/article/homepageCrisis/idUKBKK241627.CH_242020080818?rpc=401& 에 게재 (2008년 9월 5일 최종 확인).

버마 군부는 여러 나라의 정부로부터 물질적, 재정적 지원을 받고 있는데 이 중 중국과⁶⁹ 인도가⁷⁰ 가장 비중이 크다. 슈에 프로젝트와 상관은 없으나, 대우인터내셔널은 버마 정권과의 무기거래에도 개입해 왔는데, 이는 한국법을 거스르는 것으로서, 법치주의와 인권 그리고 책임감 있는 기업활동이라는 점에 관한 이 기업의 미심쩍은 입장을 보여주는 것이다. 2006년 12월, 대우의 전 사장이면서 최고 경영자였던 이태용씨를 비롯한 총 7개 회사의 14명의 고위 간부들이 무역제재를 위반하면서 버마에 무기제조에 사용되는 물자를 납품한 혐의로 기소되었고, 이후 서울에서 재판에 회부되었다.⁷¹ 2007년 11월 15일, 이 14명 전원은 유죄판결을 받았다.⁷²

vi. 인권

슈에 프로젝트와 직접 연관된 인권유린 사례들 (아래 제 IV ii 항 및 제 V 항 참조) 이외에도, 버마에서의 인권유린은 광범위하고, 체계적이며, UN 과, 각국 정부들, 그리고 현지 비정부 단체들과 국제사회의 비정부 단체들에 의해 잘 기록되어 있다.

수 십년에 걸쳐 버마의 군사정권은 봉기세력 진압 작전을 펼쳐 왔으며, 이 활동에는 민간인에 대한 직접 공격, 그 중에서도 특히 버마 동부에 주로 모여 사는 민족들에 대한 직접 공격이 포함된다.⁷³ 1996년부터 2006년 사이에 버마군 (탓마도; Tatmadaw)는 약 3,000 개 마을을 파괴하였고,⁷⁴ 약 50 만명이 버마 내에서 난민이 되었다.⁷⁵

국제노동기구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는 버마에 널리 퍼져 있는 강제노동 사용을 반복하여 규탄하여 왔다.⁷⁶ 버마 대부분의 지역에서 군부는 민간인들에게 군 막사를 짓고,

⁶⁹ “중국: 인권유린자에게 무기를 제공하는 주요국가”, Thalif Deen, *The Irrawaddy*, 2008년 8월 7일, http://www.irrawaddy.org/article.php?art_id=13764 에 게재(2008년 9월 5일 최종 확인); 암네스티 인터내셔널 보고서(Amnesty International report) (June 11, 2006) *중화인민공화국: 분쟁의 유지와 인권유린* <http://www.amnesty.org/en/library/info/ASA17/030/2006> 에 게재 (2008년 9월 5일 최종 확인).

⁷⁰ “버마 장성들의 사재기” David Fullbrook, 아시아 센티넬 (Asia Sentinel), 2006년 12월 18일 http://www.asiasentinel.com/index.php?option=com_content&task=view&id=309&Itemid=31 에 게재 (2008년 9월 5일 최종 확인).

⁷¹ “대한민국 국민 14명이 미얀마에 무기기술, 설비를 불법적으로 수출했다고 판결받음”, 인터내셔널 헤럴드 트리뷴 (International Herald Tribune), 2007년 11월 15일, <http://www.iht.com/articles/ap/2007/11/15/asia/AS-GEN-SKorea-Myanmar-Arms-Export.php> 에 게재(2008년 9월 5일 최종 확인).

⁷² 상동; 참조: 슈에 가스 운동 (Shwe Gas Movement) “대우 인터내셔널 고위관리자들이 버마에서의 무기판매한 행위에 대해 내린 가벼운 판결에, 운동가들 분노,” 2007년 11월 15일, http://www.earthrights.org/burmafeature/activists_outraged_at_lenient_sentencing_of_daewoo_executives_for_arms_export_to_burma.html 에 게재 (2008년 9월 5일 최종 확인).

⁷³ 미국 국무부, 2007년 인권 실태에 대한 국가별 보고서: 버마 (2008년), <http://www.state.gov/g/drl/rls/hrrpt/2007/100515.htm> (2008년 9월 5일 최종 확인) (이하, 국무부로 칭함).

⁷⁴ 태국 버마 국경 컨소시엄(Thai Burma Border Consortium (TBBC)), *동부 버마의 국내 유민화: 2006년 조사* (2006년), <http://tbcc.org/idps/report-2006-idp-english.pdf> 에 게재(2008년 9월 5일 최종 확인).

⁷⁵ 국무부, 위의 각주 77번.

⁷⁶ 참고: 국제 노동 기구(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ILO)), 미얀마 (버마)의 강제노동: 미얀마의 강제노동협약 규정 준수를 검토하기 위해 국제 노동 기구(ILO) 헌장의 제 26항에 따라 선임된 위원회의 보고서¶ 528 (1998년), <http://www.ilo.org/public/english/standards/relm/gb/docs/gb273/myanmar.htm> 에 게재 (2008년 6월 19일 최종 확인) (이하, ILO 위원회 보고서); 보도 자료(Press release), 국제 노동 기구, ILO 관리 기구는 미얀마의 강제노동에 대처하여 전례없는 조치가 가능하도록 준비단계를 마쳤다, 2000년 11월 17일, http://www.ilo.org/global/About_the_ILO/Media_and_public_information/Press_releases/lang--

군인들을 위해 곡식을 재배하고, 길을 넓히고, 집을 나르고, 보초를 서고, 지뢰제거 작업에 가담하도록 통상적으로 강요한다.⁷⁷ 2008년 3월, 국제노동기구는 버마에서 강요된 노동은 “심각한 문제로 남아있다”고 보고하였으며,⁷⁸ 기업의 개발 활동과 관련하여 군부가 시키는 강제 노동은 문서로 잘 기록되어 있다.⁷⁹

탓마도 (버마군)은 민간인을 살해하고, 고문하고 강간한 기록을 남기고 있다. 병사들은 무장 봉기군들이 한 활동에 대한 보복으로서, 아니면 이들과 내통하는 듯한 민간인들을 징벌하기 위해 민간인을 종종 구금하고 살해하고 있다.⁸⁰ 고문은 취조 도중에 사용되거나, 규칙을 강요하기 위해서나, 군부의 요구에 사람들이 신속히 부응하게 하기 위해 사용된다.⁸¹ 이러한 유린행위들은 어떠한 제제도 받지 않고 자행되며, 그 범위가 넓고 체계적이다.⁸² 여성의 강간은 군이 특정 민족의 기를 꺾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는데,⁸³ 사병들과 장교들이 이를 범하며 보통은 징계를 받지 않고 넘어간다.⁸⁴

버마에는 구금된 정치범이 2,052명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 중 일부는 수 십년 전에 잡혀간 사람들이다.⁸⁵ 이들은 감옥에서 고문을 당했을 수 있으며 아주 열악한 조건으로 갇혀 있다.⁸⁶ 개발 프로젝트에 대한 반대는, 그것이 사실이건 의심받는 것에 불과하건, 구금과 체포 및 여타 유린행위로 이어 질 수 있으며, 이런 유린행위들은, 아래에 기술된 바와 같이 대우와

[en/WCMS_007918/index.htm](http://www.ilo.org/wcmsp5/groups/public/---ed_norm/---relconf/documents/meetingdocument/wcms_gb_298_5_2_en.pdf) 에 게재 (2008년 9월 5일 최종 확인); 국제 노동 기구, *미얀마 당국의 강제노동협약 규정준수 여부에 관해 일어나는 현재 동향, 1930 (No.29)*, 2008년 3월 10일, http://www.ilo.org/wcmsp5/groups/public/---ed_norm/---relconf/documents/meetingdocument/wcms_gb_298_5_2_en.pdf 에 게재 (이하, *ILO 현재 동향*), (2008년 9월 5일 최종 확인).

⁷⁷ 국제 자유무역 연합 (International Confederation of Free Trade Unions), *버마: ICFTU는 강제노동에 관해 1,600 쪽이 넘는 증거를 ILO에 제출* (2005) <http://www.icftu.org/displaydocument.asp?Index=991223008&Language=EN> 에 게재.

⁷⁸ *ILO 현재 동향*, 위의 각주 80번.

⁷⁹ ERI 보고서, 위의 각주 21번.

⁸⁰ 암네스티 인터내셔널 (Amnesty International), *미얀마 동부에서 일어나는 인류에 대한 범죄 2* (2008), <http://www.amnesty.org/en/library/info/ASA16/011/2008> 에 게재 (2008년 9월 5일 최종 확인).

⁸¹ 상동, p.16.

⁸² 상동, p.2. 참조: Shan 인권재단 및 Shan 여성의 액션 네트워크 보고서 (2002) *강간 면하: 버마 군사당국, Shan State 과의 계속되는 전쟁에서 성폭행을 사용* <http://www.shanland.org/resources/bookspub/humanrights/LtoR/> 에 게재 (2008년 9월 5일 최종 확인); EarthRights International 보고서 (1998) *강간을 자행하는 우리: 버마 군대와 성폭행*, Betsy Apple, <http://www.earthrights.org/files/Reports/schoolforrape.pdf> 에 게재 (2008년 9월 5일 최종 확인).

⁸³ DLA Piper Rudnick Gray Cary, *평화에 대한 위협: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UN Security Council)는 버마에 대해 조치하라*, 36 (2005) (이하, *평화에 대한 위협*) p.47.

⁸⁴ 위의 각주 86번.

⁸⁵ (버마의) 정치적 수감자를 돕기 위한 협회 (Assistance Association for Political Prisoners (Burma)), <http://www.aappb.org/prisoners1.html>; 참고: 암네스티 인터내셔널 (Amnesty International), *2008년 Amnesty International 보고서: 세계인권의 현황: 미얀마* (2008년), <http://thereport.amnesty.org/eng/regions/asia-pacific/myanmar> (2008년 9월 5일 최종 확인) (이하, *Amnesty 보고서*).

⁸⁶ (버마의) 정치적 수감자를 돕기 위한 협회 (Assistance Association for Political Prisoners (Burma)), *침묵의 팔(8)초: 수감된 민주주의 운동가들의 죽음*, 2006년 5월, <http://www.aappb.org/publications.html> 에 게재; (버마의) 정치적 수감자를 돕기 위한 협회 (Assistance Association for Political Prisoners (Burma)), *우리가 목격하는 암흑: 버마의 취조실과 감옥에서의 고문*, 2005년 12월 <http://www.aappb.org/publications.html> 에 게재; Amnesty International, *미얀마에서 계속되는 체포*, <http://www.amnesty.org/en/news-and-updates/news/continuing-arrests-in-myanmar> (2008년 9월 5일 최종 확인) (이하, *계속되는 체포*).

한국가스공사가 행하는 슈에 가스 프로젝트의 영향으로서, 문서로 기록된 것이다.⁸⁷

버마는 세계에서 가장 어린이 병사가 많은 나라 중 하나인 것으로 여겨진다.⁸⁸ 5만명 이상의 어린이들이 정부군과 비정부군에서 복무하고 있는데,⁸⁹ 그 중 절대 다수는 탯마도 (Tatmadaw)에 있다.⁹⁰

버마에는 재산권이 없다. 군부에 의한 민간인 재산, 현금 및 식품의 몰수는 일상화 되어있다.⁹¹ 버마의 많은 지역에서 탯마도 (Tatmadaw)는 개발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해 보상 없이 농장을 몰수하며,⁹² 자신들이 사용하기 위해 가축과 연료, 양어장, 식품과 음료, 및 차량을 일상적으로 몰수한다.⁹³

표현의 자유는 국가에 의해 일상적으로 침해당한다: 즉, 외국 기자들은 이 나라에 들어가는데 어려움을 겪고, 극단적인 검열법은 가혹한 형량을 부과한다.⁹⁴ 출판을 위해 쓰여진 모든 글들은 공보부의 언론 감찰 및 등록청(Ministry of Information's Press Scrutiny and Registration Division)에 제출하여야 하며, 여기에서는 적절치 못한 것으로 판단되는 것들을 골라낸다. 표현의 제한은 더 확장되어 인터넷 상의 표현까지를 포함하는데 즉, 정권은 반정부 사이트, 인권단체의 사이트와 이메일 제공 사이트를 심하게 막는다.⁹⁵ 예를 들자면, 2007년에 행해진 민주화 시위자들에 대한 집중단속 기간 중 정권은 정보가 버마로 흘러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막기 위하여 주요 통신 라인을 절단하였으며 이메일 제공 사이트를 85% 까지 막았다.⁹⁶ 이 단속의 일 주년이 되어 가던 2008년 9월, 이라와디 지(*The Irrawaddy*), 버마 민주주의의 목소리 (the Democratic Voice of Burma), 새시대 (*New Era*) 등의 웹 사이트를 포함한 망명지 버마 언론들의 발언대가 정교한 사이버 공격을 받았는데, 이는 버마 군부가 행한 것이라는 주장이 있다.⁹⁷ 이는 대우와 한국가스공사가 사업 파트너로 선택한 버마 군부의 성격 중 우려스러운 일면을 보여주는 것이다.

작년에 천연가스 경영권 문제로 전국적인 시위가 벌어졌고 이를 막기 위해 물리적 수단이

⁸⁷ 참고: 이 이의제기서의 제 IV(ii) 항 과 제 V 항; 참고: *ERI 와 SGM 인터뷰*, 위의 각 7 번.

⁸⁸ 어린이 군인을 쓰지않기위한 연합, 2001년 글로벌 보고서 (2001년) p.16, <http://www.child-soldiers.org/document/get?id=1262> 에 게재 (2008년 9월 5일 최종 확인) (이하, *연합*).

⁸⁹ 상동 p.299.

⁹⁰ 인권 감시 (Human Rights Watch) 보고서 (2002) *내총은 나만큼 컸었다: 버마의 어린이 군사들 2*, Kevin Heppner, <http://www.hrw.org/reports/2002/burma/Burma0902.pdf> 에 게재; 버마 인권교육 연구수 (Human Rights Education Institute of Burma), *악속을 저버리고: 버마의 SPDC 군대의 어린이 군인들* (2006년 9월), <http://www.hreib.com/images/pb/csreport.pdf> 에 게재 (2008년 9월 5일 최종 확인).

⁹¹ 국무부, 위의 각주 77 번.

⁹² 참고: *ERI 보고서*, 위의 각주 21 번; *평화에 대한 위협*, 위의 각주 87 번, p.35

⁹³ 국무부, 위의 각주 77 번.

⁹⁴ 국경없는 기자들, “계속 체포되는 버마 언론인들, 환영받지 못하는 외국 언론인들”, 2008년 6월 25일, http://www.rsf.org/article.php3?id_article=27618 에 게재 (2008년 9월 5일 최종 확인).

⁹⁵ 오픈넷 이니셔티브 (OpenNet Initiative), *플러그를 뽑다: 버마의 인터넷 차단에 관한 기술적 검토* (2007년), http://opennet.net/sites/opennet.net/files/ONI_Bulletin_Burma_2007.pdf 에 게재 (2008년 9월 5일 최종 확인).

⁹⁶ 상동

⁹⁷ 이 글 작성당시, 이 웹사이트들은 접속 불가상태. 참고: “버마 정권의 사이버 공격” Aung Zaw, 2008년 9월 18일, *The Irrawaddy* 웹사이트에 대체 웹블로그를 임시로 게시, <http://theirrawaddy.blogspot.com/> 에 게재 (2008년 9월 19일 최종 확인)

동원되므로써, 버마 천연가스는 깊은 정치성을 가지는 물자가 되었다. 2007년 8월, SPDC는 불시에 연료가격을 인상하였는데, 그 중 천연가스 값은 500% 인상하였다.⁹⁸ 이 가격인상은 평화적시위를 촉발하였고 이는 그 후 불교 승려들이 주도하였는데, 이 시위는 9월에 들어 하순까지 점점 격렬해져 갔다. 시위대는 물가 인하와, 모든 정치범의 석방, 그리고 국민적 화합을 요구하였다.⁹⁹ 몇 주의 기간에 걸쳐 적어도 66개의 마을과 도시에서 200번 이상의 시위가 있었다.¹⁰⁰ 2007년 9월 25일, 타마도 (Tatmadaw)는 무력 진압을 시작하여, 봉으로 사람들을 구타하고, 평화적인 시위대에게 실탄을 다수로 발사 하였다.¹⁰¹ 국영 방송은 9명의 사망자가 났다고 보도하였지만,¹⁰² 100명 이상이 사망한 것으로 믿어진다.¹⁰³ 3,000명에서 4,000명이 구금되었다.¹⁰⁴ 당국이 고문과 구타를 했다는 보고가 있었고, 확인되지 않은 수의 구금자가 구금상태에서 죽었다.¹⁰⁵ 강압적으로 끌려간 후 소식이 끊어진 경우가 적어도 72건 확인되었다.¹⁰⁶ 2007년 말 현재, 이 기간 중 체포된 사람들 중 700명이 여전히 구금상태에 있는 것으로 믿어진다.¹⁰⁷ 이와 비슷하게, 슈에 프로젝트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발언과, 결사와 표현의 자유가 없으며, 이들이 슈에 프로젝트에 관한 의견을 표출하거나 이 프로젝트의 결정과정에 참여하는 것은 아래에 기술된 바와 같이 현실적으로 봉쇄되어 있다.

IV. 본 이의제기의 배경

i. 버마 내 이전의 천연가스 프로젝트: 야다나 (Yadana) 파이프라인과 예타건 (Yetagun) 파이프라인

버마의 야다나 (Yadana) 가스 프로젝트, 예타건 (Yetagun) 가스 프로젝트와 파이프라인이 남긴 경험들은 이 나라에서의 가스 개발이 환경과 인권에 끼치는 심대한 결과를 보여주는 역사이다. 1992년 불란서 석유회사 딸 (Total)은 군사정권과 계약을 체결하여, 버마 앞바다 해저 천연가스를 개발하고, 그 가스를 태국으로 송출하기 위해 버마의 테나세림 (Tenasserim) 지역을 관통하는 파이프라인을 건설하기로 하였다.¹⁰⁸ 미국의 석유회사인 유노칼 (Unocal)과 태국

⁹⁸ 에너지를 위해 인간이 겪는 고통, 위의 각주 21 번, p.49.

⁹⁹ 상동; 다음 참조: Nat'l Coal. Gov't Burma Hum. Rts. 기록 반(Documentation Unit), 자선 그릇 안의 총알: 2007년 7월 Saffron 혁명에 대한 SPDC의 무자비한 진압에 대한 분석 (2008년), <http://burmalibrary.org/docs4/BulletsInTheAlmsBowl.pdf> 에 게재; 인권 감시(Human Rights Watch), 엄격진압: 버마의 2007년 민중저항의 진압, 19 Hum. Rts. Watch Rep. 1 (2007년), <http://www.hrw.org/reports/2007/burma1207/burma1207web.pdf> 에 게재

¹⁰⁰ 상동

¹⁰¹ Amnesty 보고서, 위의 각주 85 번.

¹⁰² “버마 엄격진압에 ‘아홉명 사망’”, BBC 뉴스, 2007년 9월 27일, <http://news.bbc.co.uk/2/hi/asia-pacific/7016608.stm> 에 게재 (2008년 9월 5일 최종 확인).

¹⁰³ Amnesty 보고서, 위의 각주 85 번.

¹⁰⁴ 상동

¹⁰⁵ 상동

¹⁰⁶ 상동

¹⁰⁷ 상동

¹⁰⁸ 일반적 참조: “Moattama 지역 석유의 감식과, 개발 및 채취에 관해 Myanma Oil & Gas Enterprise사와 Total Myanmar Exploration & Production사 간에 체결된 채취 공유 계약” (1992년 7월), 익명인 대(對) Unocal Corp. 부분공판 BC 237980 기록 (캘리포니아 고등법원, LA 카운티), 증거물 제 1호 중 pages 2462-2553 (2003년 12월 11일 증거물로 채택).

회사인 PTT EP (PTT Exploration and Production) 및 SPDC 당이 소유한 MOGE (Myanmar Oil and Gas Enterprise) 도 이어 이 프로젝트에 가담하였다.¹⁰⁹ 한편 이와는 별개로, Premier Oil (영국), Petronas (말레이시아), Nippon Oil (일본), PTTEP, MOGE 로 구성된 컨소시움이 안다만 해 (Andaman Sea)의 또 다른 천연 가스 생산지를 개발하는 예타군 (Yetagun) 프로젝트에 가담하였다.¹¹⁰ 이 두 프로젝트 모두에는 버마 남부를 가로질러 태국으로 이어지는 약 60 km (40 마일) 길이의 파이프라인이 관련한다.¹¹¹ 이 두 파이프라인은 거의 동일한 경로를 따라 간다.¹¹²

이 파이프라인들의 건설은 지역민들에게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 프로젝트 이전에 이 지역에는 항시 배치된 병력이 없었으나,¹¹³ 이 프로젝트 초기에 탕마도 (Tatmadaw)는 그 컨소시움에게 이 지역을 “확보”해 주기 위해 진주하였다. ERI 와 행한 자세한 인터뷰에서, 탕마도 (Tatmadaw)에서 탈영해 나온 병사들은 그 프로젝트를 위해 보안을 확보해야 했던 자신들의 임무를 설명하였다.¹¹⁴ 현재까지 적어도 14 개 보병 대대 (battalion)가 파이프라인 보호 임무를 수행하였고,¹¹⁵ 이 중 두개 대대는 “또딸 대대”라고 널리 알려져 있는데, 이는 야다나 (Yadana)프로젝트에 개입한 주된 회사인 불란서 석유회사 또딸 (Total)과 관련된 속어이다.¹¹⁶ 이러한 군사화는 이 프로젝트 지역 주변에 사는 사람들에게 강제이주, 강제노동, 강간, 살해, 고문, 재산압류와 같은 심각한 인권유린을 가져왔다.

야다나 (Yadana) 파이프라인과 관련된 인권유린 사례의 피해자들은 버마 내에서 법에 호소할 방도가 없어, 1996 년 미국에서 유노칼 (Unocal; 이후 셰브론 Chevron 으로 개칭)사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였다.¹¹⁷ 어쓰라이츠 인터내셔널 (EarthRights International) 등이 대변해준 이

¹⁰⁹ 참조: “Total Myanmar Exploration & Production 사, Unocal Myanmar Offshore Co. Ltd. 사, PTTEP Int’l Ltd. 사 및 the Myanma Oil & Gas Enterprise 사 간에 서명한 위임장” (1995 년 10 월 31 일), *익명인 대(對) Unocal Corp.* 부분공판 BC 237980 기록 (캘리포니아 고등법원, LA 카운티), 증거물 제 4(F)호 (2004 년 1 월 14 일 증거물로 채택), 제 1, 2 항 (article).

¹¹⁰ EarthRights International, *계속되는 총체적부인: 버마의 Yadana 과 Yetagun 파이프라인을 따라 일어나는 지구권 유린행위* 13 (제 2 판, 2003 년), <http://www.earthrights.org/files/Reports/TotalDenialCont-2ndEdition.pdf> 에 게재 (이하, *계속되는 총체적부인*).

¹¹¹ *일반적 참조*: “Myanma Oil Gas Enterprise 사, Total Myanmar Exploration and Production 사, Unocal Myanmar Offshore Co. Ltd 사, PTTEP Int’l Ltd. 사 및 Petroleum Authority of Thailand 사 간에 체결한 수출가스 판매계약서” (1995 년 2 월 1 일), *익명인 대(對) Unocal Corp.* 부분공판 BC 237980 기록 (캘리포니아 고등법원, LA 카운티), 증거물 제 5B 호 (2003 년 12 월 16 일 증거물로 채택).

¹¹² *계속되는 총체적부인*, 위의 각주 17 번, p.19.

¹¹³ *계속되는 총체적부인*, pp.23-37.

¹¹⁴ *에너지를 위해 인간이 겪는 고통*, 위의 각주 17 번, p.29-31.

¹¹⁵ 참조: *에너지를 위해 인간이 겪는 고통*, 위의 각주 17 번, p.29 (모든 대대, 특히 273, 401, 402, 403, 404, 405, 407, 408, 409 대대), p.72 (battalions 273, 282), pp.94-95 (273, 401, 403, 407, 408, 409 대대); 참조: Matthew Smith 와 Naing Htoo, “에너지 안보: 누구를 위한 안보인가?” 11 YALE HUM. RTS. & DEV. L.J. (2008 년) pp.228-230; EarthRights Int’l (ERI)과 동남아시아 정보 네트워크 (SAIN), *총체적부인: 버마의 Yadana 파이프라인 프로젝트에 관한 보고서* 13-14 (1996 년), <http://www.earthrights.org/files/Reports/TotalDenial96.pdf> 에 게재(273, 401, 406, 407, 408, 409, 410 대대); EarthRights International, 부록 보고서: *Yadana 와 Yetagun 파이프라인을 따라 일어나는 강제 노동* (2001 년) p.3 (*같은 일의 계속: 계속되는 버마의 강제 노동에 대한 부록*) <http://www.earthrights.org/files/Reports/supp.pdf> 에 게재(273, 282 대대); 비밀 ERI 인터뷰#23 (2002 년), ERI 에 접수 (탈영자는 104, 273, 282, 401, 403, 405, 409 대대들의 보안의무를 확인함).

¹¹⁶ *계속되는 총체적부인*, 위의 각주 17 번, p.72.

¹¹⁷ 2005 년에, 셰브론(Chevron Corporation)은 Unocal 을, 버마에 있는 그 자산을 포함하여, 미화 백팔십 (180)억 달러에 매입했다. 참조: “Chevron 은 Unocal 을 낚아채다,” 국제 석유 금융(Int’l Petroleum Finance), 2005 년 4 월 11 일; 참조: Rick Jurgens, “Unocal 은 Chevron 에게 매각을 허락하다,” Contra Costa Times, 2005 년 8 월 11 일.

사건의 원고들은 파이프라인 공사 과정에서 군부에 의해 자행된 유린 행위에 대해 유노칼에게 공모적 책임을 물으려 하였다.¹¹⁸ 부분적 재판이 있는 후인 2005년 3월, 유노칼 (Unocal)은 원고측에 보상을 해 주기로 합의하였다.¹¹⁹ 파이프라인 건설 과정에서 자행된 유린 행위의 피해자들은 또딸 (Total)을 상대로 벨기에와 불란서에서도 소송을 제기하여, 불란서에서의 소송은 2005년 원고측과 또딸 (Total) 측과의 법정외 합의에 도달하였고,¹²⁰ 벨기에에서의 소송은 2007년에 취하되었다.¹²¹

야다나 (Yadana)파이프라인은 현재 완공되어 운영 중이며, 지역민에 대한 유린행위는 계속 되고 있고, 이 중 많은 사례는 이 프로젝트와 직접적인 연관을 가진다. 이 지역에서 군 부대는 파이프라인에 대한 보안을 제공하기 위해 계속 작전 중이다.¹²² 병사들은 도발 한 적이 없는 민간인을 살해하며, 강간, 고문 하기를 계속하고 있다.¹²³ 최근, 병사들이 자행한 폭력성 강간 사례와 함께 재산 압류를 거부하는 민간인에 대한 구타 사례가 보고 되었다.¹²⁴ 병사들은 주민들을 위협하기 위하여 만인이 보는 앞에서 공공연히 폭력을 자행해 오고 있다.¹²⁵ 강제로 물건을 나르게 하고, 강제로 보초를 서게하는 사례도 파이프라인을 따라 위치한 지역에서 계속 되고 있다.¹²⁶

야다나 (Yadana)와 예타건 (Yetagun) 프로젝트는 군사정권을 재정적으로 상당히 배불렸다. 야다나에서 나오는 한 해 수입의 거의 75%인 9억 6천 9백만 달러가 SPDC로 간다.¹²⁷ 이 수입과 예타건에서 나오는 수입을 합한 것이 SPDC 공식 수입의 가장 큰 부분이며, 이 돈은 버마의 개발을 가져오는 대신 인권상황의 악화와 연관성을 보인다.¹²⁸

상기 컨소시엄은 프로젝트 지역의 사회적, 경제적 개발에 기여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 회사들의 사회 경제적 프로젝트들은 현지 주민들에게 별 혜택을 주지 못 하였다.¹²⁹ ERI의 연구에 따르면, 상기 회사들이 약속한 사회적 혜택들 중 많은 부분이 실현되지 않았다. 의료와 교육은 거의 향상되지 않아,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태국-버마 국경에 있는 난민 캠프에 가서 진료를 받고 있다.¹³⁰ 또한, 거의 7억 6천만 세제곱 피트가 되는 가스 1일 생산량 중 1억 내지 1억 1천만 세제곱 피트 만이 버마의 내수용으로 보내지고, 나머지는

¹¹⁸ 참조: 예, *익명인 대(對) Unocal Corp.*, 963 F. Supp. 880 (C.D. Cal. 1997).

¹¹⁹ 참조: EarthRights International, “세계인권의 역사적 신장: Unocal은 버마 주민들에게 보상에정”, 2005년, http://www.earthrights.org/legalfeature/historic_advance_for_universal_human_rights_unocal_to_compensate_burmese_vil_lagers.html 에 게재 (2008년 9월 5일 최종 확인).

¹²⁰ “Total은 권리에 관한 소송을 해결하다: 미얀마에서의 강제노동을 금전적으로 덮어버리다” 인터내셔널 헤랄드 트리뷴 (International Herald Tribune), 2005년 11월 29일, <http://www.iht.com/articles/2005/11/29/business/total.php> 에 게재(2008년 9월 5일 최종 확인).

¹²¹ “벨기에는 Total에 대한 미얀마 권리 소송을 그만두다” AFP, 2008년 3월 5일, <http://afp.google.com/article/ALeqM5g03FLW0Ks50sU4WgOuGU-Gay-P-w> 에 게재 (2008년 9월 5일 최종 확인).

¹²² *에너지를 위해 인간이 겪는 고통*, 위의 각주 17번, p.30; 참조: Matthew Smith와 Naing Htoo, “에너지 안보: 누구를 위한 안보인가?”, 11 YALE HUM. RTS. & DEV. L.J. (2008) pp. 228-230.

¹²³ *에너지를 위해 인간이 겪는 고통*, 위의 각주 17번, p.31.

¹²⁴ 상동 p.33.

¹²⁵ 상동 pp.33-34.

¹²⁶ 상동 pp.35-39.

¹²⁷ 상동 p.20.

¹²⁸ 상동 p.21.

¹²⁹ *에너지를 위해 인간이 겪는 고통*, 위의 각주 17번, pp.41-48.

¹³⁰ 상동 p.43.

태국으로 수출된다.¹³¹ 파이프라인 지역에서 군부는 강제 노동인력을 모집하고 있고¹³² 물건과 돈을 압수하고 있다.¹³³ 마을민들은 군인들의 요구 때문에 자신들의 필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이들의 생활 수준은 꾸준히 하락하였고 상당 수의 사람들이 파이프라인 지역을 떠나 태국에 있는 난민 캠프로 넘어가게 되었다.¹³⁴

대우 주도의 슈에 가스 프로젝트의 파이프라인은 야다나나 예타건의 파이프라인 보다 현저히 더 길며, 이 중 몇 부분은 고밀도 인구를 가진 농촌 지역을 관통하게 되어 있어, 이런 지역에서의 상기한 유린 행위와 여타 부정적 영향은 상대적으로 더 큰 규모가 될 것이다.¹³⁵

ii. 대우 (Daewoo International), 한국가스공사 (KOGAS) 등의 슈에 천연 가스 프로젝트 (Shwe Natural Gas Project)

2000 년 8 월 대우인터내셔널과 MOGE (Myanmar Oil and Gas Enterprise)는 생산공유 계약을 체결하고, 벵갈만 (Bay of Bengal)에 묻혀있는 천연가스를 탐색, 생산, 판매하기로 하였다.¹³⁶ 2004 년에 발견된 슈에 가스 매장지는 서남 아시아에서 확인 된 천연가스 매장지로서는 가장 큰 곳 중의 하나이다.¹³⁷ 슈에의 세 탐사구 (Shwe, Shwe Phyu 및 Mya)의 천연가스 매장량을 합하면 적어도 5.4 – 9.1 조 세제곱 피트가 되는 것으로 추정된다.¹³⁸

2001 년과 2002 년에 이 약정서의 이권은 인도 석유 천연가스사(ONGC Videsh)에 20%, 인도 가스 공사 Gas Authority of India, Ltd; GAIL) 에 10%, 한국가스공사에 10%의 지분으로 매각 되었다.¹³⁹ 대우인터내셔널은 60%의 지분을 유지하고 있다.¹⁴⁰ 2008 년 6 월 전적으로 국가 소유인 MOGE 가 슈에 컨서티움의 지분을 구매할 권한을 행사하여 15%의 지분을 구매함으로써, 이 지분율이 바뀌었다. 현 지분 분포는 대우가 51%, ONGC 가 17%, MOGE 가 15%, GAIL 이 8.5%, 그리고 한국가스공사가 8.5%의 순이다.

2008 년 6 월 23 일, 대우인터내셔널은 CNPC (China National Petroleum Corporation; 중국 국립

¹³¹ Total S.A., *미얀마에서의 Total: 지속적인 전념* 7 (2007 년) http://burma.total.com/en/publications/sustained_commitment.pdf 에 게재 (2008 년 9 월 5 일 최종 확인).

¹³² 에너지를 위해 인간이 겪는 고통, 위의 각주 17 번, p.46.

¹³³ 상동 p.48.

¹³⁴ 상동 pp.46-47.

¹³⁵ 버마의 Yadana 파이프라인의 길이는 약 40 마일이다. Sittwe 와 Kunming 사이의 직선 거리는 약 1,100 마일이다; 다음과 같은 이유로 파이프라인 자체의 길이는 1,100 마일보다 길수밖에 없다. 즉, 제안된 길을 따라 나타나는 지형적 변화, 가능한 경우, 파이프라인이 이미 있는 길을 따라 놓이게 될 가능성, 그리고, 직선 거리를 따라 파이프라인을 구축할 경우, 지리학적 방해가 존재하는 경우 등이 그 이유가 된다. 파이프라인의 길이는 1,479 마일 (2,380 km)까지도 될 수있다고 추산된다. (“버마의 저항에 대한 중국의 딜레마” Michael Bristow, BBC 뉴스, 북경, 2007 년 9 월 25 일, <http://news.bbc.co.uk/2/hi/asia-pacific/7011746.stm> 에 게재 (2008 년 9 월 5 일 최종 확인)).

¹³⁶ 슈에 가스 운동 (Shwe Gas Movement), *공급과 지휘: 버마의 천연 가스는 군사 정권을 참호같이 보호하게 될 것이다* (2006 년) p.11, <http://www.shwe.org/media-releases/publications/file/SUPPLYANDCOMMAND.pdf>. 에 게재 (이하, *공급과 지휘*)

¹³⁷ “북쪽에 있는 우리 친구들”, The Economist, 2008 년 2 월 9 일, http://www.economist.com/world/asia/displaystory.cfm?story_id=10653874 에 게재 (2008 년 9 월 5 일 최종 확인).

¹³⁸ “대우 (Daewoo)는 미얀마의 가스층을 확인하다” 대우인터내셔널 (Daewoo International), 2007 년 8 월 22 일, http://www.rigzone.com/news/article.asp?a_id=49311 에 게재 (2008 년 9 월 30 일 최종 확인).

¹³⁹ *공급과 지휘*, 위의 각주 136, p.12.

¹⁴⁰ 상동

석유회사)와 슈에에서 생산되는 천연가스 전량을 CNPC 에 송출해 팔기로 하는 양해각서 (memorandum of understanding)를 체결하였다고 발표하였다.¹⁴¹ 이 양해각서의 내용에는 상기 가스를 버마 서부로 부터 버마를 횡단하여 중국 윈난성(雲南省; Yunnan)까지 송출할 육상 파이프라인을 건설할 계획이 담겨있다. 대우는 매장자원을 개발하는 컨소시엄 최대 지분을 유지하면서, CNPC 의 이 파이프라인 건설에 가담할 지도 모른다고 발표하였다.¹⁴² 대우측에 따르면, 슈에에서의 가스 생산은 2012 년 개시될 예정이므로,¹⁴³ 그렇다면 이 일정에 맞추려면 2008 년말은 아니더라도 2009 년에는 파이프라인 공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어야 한다.¹⁴⁴ CNPC 가 88%의 지분을 소유한 CNPC 의 자회사 PetroChina 는 이 파이프라인을 통해 송출된 가스를 쿤밍시(昆明市, Kunming city) 에 배포 판매하는 책임을 지게 되었다고 발표하였다.¹⁴⁵

계획된 이 파이프라인은 버마 서부에서 쿤밍시까지의 거리인 대략 1100 마일 (1800 km) 의 땅을 지나가게 되며, 이는 40 마일 정도의 길이를 가진 야다나나 예타건 파이프라인 보다도 훨씬 더 긴 것이다.¹⁴⁶ 이 파이프라인 경로의 구체적인 위치 좌표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가능한 경로를 보면 적어도 버마의 24 개의 마을을 관통할 것이며 Arakan 주, Bago 구역, Magwe 구역, Mandalay 구역 및 Shan 주에 있는 몇몇 대규모 인구 중심지를 관통하거나 가까이 지나갈 것으로 보인다.¹⁴⁷ 이 경로를 따라서는 파이프라인이 인권에 미치는 영향이 더 커질 가능성이 많은 곳들이 즐비한데, 이는 각 마을이 파이프라인에서 부터 얼마나 가까이 있는지, 현 군 주둔지나 앞으로 군이 주둔할 곳으로부터 얼마나 가까이 있는 지를 보아 짐작할 수 있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계획된 이 파이프라인을 따라 이 파이프라인이 환경에 미칠 부정적 영향의 가능성이 특히 높은 지점이 몇 곳 있다. 이 경로를 따라 가장 환경적으로 민감한 지점들은 아라칸 (Arakan)주 내에 있으며, 이 곳은 계획된 파이프라인이 국립 해양 공원 및 환경적으로 중요한 망고 늪 (mango swamps)과 강 하구를 반으로 가르며 지나가게 된다. 또한 이 파이프라인은 아라칸 요마 산맥(Arakan Yoma Range)의 서편으로 흘러가는 5-6 개의 작은 강을

¹⁴¹ “대우 (Daewoo)는 버마의 모든 가스를 중국에 팔게되다”, 조선일보(Chosun Daily), 2008 년 6 월 24 일, <http://english.chosun.com/w21data/html/news/200806/200806240028.html> 에 게재 (2008 년 9 월 5 일 최종 확인).

¹⁴² 상동. 중국 역시, 제안된 슈에가스 (Shwe gas) 파이프라인과 같은 길을통해, 버마를 관통하여 중국 남서쪽의 윈난성(雲南省; Yunnan)에 이르는 석유 파이프라인을 구축할 준비를 하고있다. 이 석유 파이프라인은 원유를 버마 서쪽의 항구도시 Sittwe 에서부터 윈난성(雲南省; Yunnan)의 도시 Kunming 에 이를 것이라 하는데, 이렇게 되면, 중국은 말라카 해협(Strait of Malacca)을 덜 사용하면서도 아프리카와 중동지역에서 석유수입을 계속할 수 있게된다.

¹⁴³ “대우 (Daewoo) 거대한 천연 가스 계약을 맺다” 통신사 소속 Yi Yi Htwe 기자보도, 미얀마 타임즈 (The Myanmar Times), 2008 년 6 월 30 일 - 7 월 6 일, <http://www.mmtimes.com/no425/b001.htm> 에 게재 (2008 년 8 월 21 일 최종 확인).

¹⁴⁴ 위의 각주 142 번

¹⁴⁵ “페트로차이나 (PetroChina) 첫번째 가스 분배 계약을 맺다” 중국 지식(China Knowledge), 2008 년 10 월 3 일, <http://www.chinaknowledge.com/News/news-detail.aspx?type=1&id=17891> 에 게재 (2008 년 10 월 3 일 최종 확인).

¹⁴⁶ 위의 각주 142 번. Yadana 와 Yetagun 파이프라인들은 버마에서의그 길이가 약 40 마일 정도된다. 이 파이프라인들은 태국 국경에서 하나의 파이프라인으로 모아진다. 40 마일 길이는 태국에 놓인 파이프라인의 길이는 널지않고 계산한 것이다. 슈에 프로젝트 (Shwe project)의 경우, Sittwe 와 Kunming 사이의 추정 거리는 두 도시의 직선 거리이다. 실제 슈에(Shwe) 파이프라인의 길이는, 길을 따라 있는 지형적 변화, 그리고, 직선거리의 길을 택했을 때의 지리적 방해물 존재 가능성 때문에, 1,100 마일 보다 훨씬 길 것으로 여겨진다.

¹⁴⁷ 이는 Arakan State 의 3 마을 (townships), Bago division 의 2 마을, Magwe division 의 5 마을, Mandalay division 의 8 마을, 그리고 Shan state 의 6 마을을 포함한다. 참고: Matthew Smith 와 Naing Htoo, “에너지 안보: 누구를 위한 안보인가?”, 11 YALE HUM. RTS. & DEV. L.J. (2008) p.239.

가로 지를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산맥은 아라칸 주와 Magwe 구역의 자연 경계를 이룬다.¹⁴⁸ 이 파이프라인은 이라와디 (Irrawaddy) 강을 가로지르기도 하는데, 만일 여기서 파이프라인이 세거나 파열되게 되면, 이 강에 심히 의존하는 사교 지점 하류의 주민들에게 심각한 환경적, 사회적, 경제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 가스가 추출될 뱅갈만에서 누출사고가 발생할 경우는 원양, 근양, 내륙 어업 모두에 특별히 심한 손상을 입히게 될 것이다.¹⁴⁹

일단 육지로 올라온 파이프라인은 세계자연보호기금 (World Wildlife Fund)의 정의에 의한 5 가지 다른 생태지역을 거쳐가게 된다.¹⁵⁰ 이 다섯 지역은 Mizoram-Manipur-Kachin 우림지역, Chin Hills-Arakan Yoma 산림지역, Irrawaddy 건조림 지역, Irrawaddy 습성 활엽수 지역 및 북인도차이나 아열대림 지역이다. 이러한 독특하고 환경적으로 민감한 생태지역 내에 각별히 민감한 지역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들은, 홍수림 늪지대,¹⁵¹ 버마의 건조 지역에 꼭 필요한 수원지역,¹⁵² 야생생물 보호구역,¹⁵³ 그리고 조류 보호구역¹⁵⁴ 이다. Shan State 과 Mandalay Division 에는 현재 지정되었거나 제안된 공식 보호 구역은 없으나, 그렇다고 이 지역에 환경적 우려사항이 없다는 것은 아니다.

자원이 풍부한 아라칸 주 (Arakan State)의 군사화가 눈에 띄이게 증가하고 있어,¹⁵⁵ 주민들은 이미 군대의 요구에 의해, 병영 건설, 채석장에서의 노동, 길과 다리의 건설, 작물 재배, 그리고, 운반하는 일을 강요당하고 있다.¹⁵⁶ 주민들은 군대를 위해 연료와 물 등의 물자를 모아 오도록 강요당하고 있다.¹⁵⁷ 군대가 경영하는 논 농장과 수익성 높은 작물의 재배장을 만들기 위한 땅의 몰수는 흔히 일어나고 있다.¹⁵⁸ 또한 주민들은 군대의 임의적 조세행위와 과 갈취행위로 인해 고통을 겪고 있다.¹⁵⁹ 아라칸 주 (Arakan State) 및 계획된 파이프라인 경로를 따라 놓인 기타 지역에서의 이러한 유린행위는, 파이프라인 건축 공사 기간과 그 이후에도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공사 중과 공사 이후에는 프로젝트의 보안을 위해 군부대가 더 많이 배치될 것이기 때문이다.

¹⁴⁸ 이 강들은 Tanlwe 와 Taungtok (Taunggup)을 포함한다. 만일, 파이프라인이 Taungain/Taungup/Taunggok 과 Pyay/Pyi/Promei 사이의 고속도로 남부에 구축되면, Thade 의 상류도 영향을 받게 될 수 있다.

¹⁴⁹ 유엔 식품 및 농업 기구, 어업국의 프로파일: 미얀마 유니언 (Union of Myanmar) , 2006 년 5 월, <http://www.fao.org/fi/oldsite/FCP/en/MMR/profile.htm> (2008 년 9 월 5 일 최종 확인).

¹⁵⁰ 생태지역 (eco-region)은 WWF 에 의해, 지리학적으로 뚜렷이 나뉘는, 다음과 같은 자연계 커뮤니티들의 모임을 포함하는 커다란 육지 또는 수중지역으로 정의된다: a) 그안에 있는 대부분의 종(species) 및 생태 역할을 함께 나누는 커뮤니티; b) 환경 조건을 함께하는 커뮤니티, 그리고 c) 각각의 오랜 지속을 위해 필수불가결하게 생태학적으로 상호작용을 하는 커뮤니티. WWF, “과학 – 생태지역”,

<http://www.worldwildlife.org/science/ecoregions/item1847.html> (2008 년 9 월 5 일 최종 확인).

¹⁵¹ 파이프라인이 Sanei 에서 Ma-ei 로 횡단하게 되면, 파이프라인은 Nat Ma Taung 국립해양공원과 인근의 홍수림 늪지대 (mangrove swamps)을 둘로 가르게 된다. 이 지역의 위치의 좌표는 20°58'42" N. 및 94°7'42" E.

¹⁵² 제안된 파이프라인은 Popa 산악공원을 지날 수도 있는데, Popa 산악공원은 여러 저수지 및 Kyetmauktaung 댐 등의 댐들과 연결되어 있다. 이들은 버마 중앙부 건조지역에 꼭 필요한 수자원이다. 이 지역의 좌표는 20° 53' N. 및 95° 15' E.

¹⁵³ 제안된 파이프라인은 21° 28' N. 및 95° 43' E.에 위치한 Minsontaung 야생동물 보호구역을 지날 수 있다.

¹⁵⁴ 제안된 파이프라인은 22° 00' N. 및 96° 30' E.에 위치한 Pyi Oo Lwin 조류보호구역 (Maymyo)을 지날 수 있는데, 이는 Shan 고원 아래의 Mandalay 에서 북쪽으로 40 마일 떨어진 곳에 있다.

¹⁵⁵ *공급과 지휘*, 위의 각주 136, p.22

¹⁵⁶ 상동 p.25.

¹⁵⁷ 상동 p.26.

¹⁵⁸ 상동 p.27.

¹⁵⁹ 상동 p.30.

비슷한 종류의 인권유린 행위는 계획된 파이프라인 경로를 따라 놓인 여타 지역에도 이미 일어나고 있다. 가장 눈에 띄이는 곳은 Shan State 인데, 여기 몇몇 곳의 주민들은 군에 의한 고문, 강간, 강제 노동, 강제 이주 그리고 살해 등의 위험에 처해있다.¹⁶⁰ 수십 년 동안, 정권은 Shan 족 무장봉기 그룹에 대한 진압 작전을 잔인하게 펼쳐왔다.¹⁶¹ 파이프라인이 건설되고 그것을 지킬 군대가 주둔하면 이러한 유린행위는 종전부터 일어나고 있던 무력 충돌과 더불어 더 악화될 수 있다.

대우 프로젝트에 대한 준비작업은 이미 Arakan State 에서의 강제 이주와의 직접적인 관련성을 가진다.¹⁶² 바데이 섬 (Badday Island)의 5 개 마을에서 일어난 강제 퇴출에 관한 보고가 있었는데, 여기에서는 주민들이 섬을 에너지 회사에 넘겨 주어야 하니 반드시 떠나라는 말을 들었다고 하는데,¹⁶³ 이들에게는 어떠한 보상도 주어지지 않았다.¹⁶⁴ 이 이외에도, 근해 탐사는 지역 주민의 생업유지 능력에 영향을 미친다. 벵갈만 (Bay of Bengal) 앞바다 굴착시설 (drilling rig) 주변의 수역은 한 때는 물고기가 풍부한 주요 어장이었으나, 이제는 군이 순찰하는 출입금지 수역으로서 지역 어민들에게는 조업이 금지되어있다.¹⁶⁵ 정확한 경계선과 접근금지가 내려지는 시각은 지역인들에게 혼동스럽게 느껴지지만, 주(state)는 이 곳에서 어민들을 제한하는 일을 가혹하고 폭력적으로 집행하고 있다.¹⁶⁶ 2004 년에, 그 전에 그 곳에서 자주 낚시를 하였기에 자신들이 제한 구역에 있는 줄 모르고 있던 네 명은, 체포되어 구타 당하고 수감되었다.¹⁶⁷ 2005 년에는 이 지역의 한 선박 주인과 그의 선원들이 제한 구역에 있다는 이유로 체포되어 구타 당하였고, 선박과 낚시로 잡은 것들 빼앗겼다.¹⁶⁸ 이들은 제한 구역에서 낚시를 할 수 있는 기회만을 잃은 것이 아니고, 구금당하고 낚시 선박을 빼앗김으로 해서 가족 부양 능력에 장기간 영향을 받았다.¹⁶⁹ 당국은 슈에 가스 프로젝트와 연관있는 것으로 짐작되는 바다 앞 지점들로 승객들을 실어 나르기 위해 주민 소유의 선박들을 정기적으로 압류하고 있다. 당국은 또 이 압류된 선박들을 이용, 제한 수역을 순찰한다는 보고도 있었는데, 이 선박의 소유주들은 어떠한 금전적 보상도 연료 보상도 받지 못했다. 당국에게 재산을 내 놓기를 거부하는 경우는 드문데, 그 이유는 그렇게 하다가는 소유주의 재정적, 신체적 안전에 대한 반항을 불러올 수 있다고 누구나 알고 있기 때문이다.¹⁷⁰ 아라칸의 한 상인의 말을 빌리면, “당국자들이 앞바다 굴착지점에 가고 싶어하면, 이 지역의 선박이 당연히 그들을 그 곳에 데려다 줄 것이라고 기대해요. 당국자들은 석유나 기타 어떤 것도 제공하지 않아요 만일 선박 주인이 [당국자를 배에 싣고

¹⁶⁰ 산 헤랄드 뉴스기관(Shan Herald Agency for News), “인권”, <http://www.shanland.org/resources/bookspub/humanrights/> (2008 년 9 월 5 일 최종 확인).

¹⁶¹ 버마의 이지역에있는 무장 봉기세력으로 주목할 만한 집단으로는 Shan State Army-South (SSA-S)가 있는데, 이들의 목표는 자치적 Shan state 을 이루는 것이다.

¹⁶² Amnesty 보고서, 위의 각주 85 번.

¹⁶³ “북쪽에 있는 우리 친구들”, 위의 각주 137 번. Graeme Jenkins, *Burmese Junta Profits From Chinese Pipeline*, The Daily Telegraph, Jan. 16, 2008, available at <http://www.telegraph.co.uk/news/uknews/1575571/Burmese-junta-profits-from-Chinese-pipeline.html> (2008 년 10 월 28, 2008 최종확인).

¹⁶⁴ 상동

¹⁶⁵ *공급과 지휘*, 위의 각주 136 번, p.22

¹⁶⁶ 상동 p.31.

¹⁶⁷ 상동

¹⁶⁸ 상동

¹⁶⁹ 상동

¹⁷⁰ *ERI 인터뷰*, 위의 각주 9 번.

바다로 나가기를] 거부하면, 조만간에 잡혀 가거나, 영업을 그만 두어야하게되지요.”¹⁷¹

군사 정권에 의한 아라칸 (Arakan) 사람들의 공민권 및 정치적 권리에 대한 유린은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있으며, 이런 유린 행위의 일부는 대우가 주도하는 슈에(Shwe) 가스 프로젝트와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다. 슈에(Shwe) 프로젝트에 대한 공개적 반대는, 버마에서의 공개적 반발이 대부분 그러하듯이, 협박과 실력행사로 맞받아져왔다. 2007년 6월 4일, 아라칸 주 (Arakan State)의 운동권 학생들은 대우가 주도하는 프로젝트에 반대하는 벽보를 공공장소에 붙였다.¹⁷² 다음 날 정권은 저녁 9시 부터 아침 5시 까지 통행 금지를 실시했으며, 이틀 후 학생 세명이 포스터를 붙인 것과 관련된 이유로 체포되었다고 전해졌다.¹⁷³ 주민 몇명도 이 활동과 관련되었다고 의심을 받아 구금되고, 취조를 당했다.¹⁷⁴ 대우의 프로젝트가 시작된 후, 몇몇 지역민들이 비슷한 방식으로 군사 당국에 의해 구금, 취조되었는데, 그 이유는 이들이 대우 프로젝트를 반대하거나 혹은 그 프로젝트를 반대하는 사람들과 내통한다는 것이었다.¹⁷⁵

대우는 자사의 버마 투자에 관하여 최소한 두 번 공개 입장표명을 하였는데, 그 내용을 보면 대우의 기업 윤리와 대우가 OECD 지침서 준수에 대해 느끼는 의무감에 관한 의구심이 생긴다.¹⁷⁶ 슈에 가스 프로젝트가 인권에 끼치는 영향에 대한 구체적이 질문에 대한 응답으로 대우는 2006년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지금은 인권 유린 문제를 논할 적절한 시기가 아니라는 것이 본사의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직 가스 필드탐사 단계에 있으며, 개발은 시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¹⁷⁷ 이 발언은 이 이의제기서의 배경과 관련있는 최소한 세가지 요점을 지적한다: 1) 이 발언은, 천연가스 개발이 큰 발자국을 남기게 되며, 인권 문제가 늘 불안했던 곳이 버마라는 점에서, 개발의 철저한 사전 준비라는 개념에 대한 소홀한 태도를 보여준다; 2) 이 발언은 천연가스 프로젝트의 탐사과정은 인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잘못된 가정을 가지고 있다; 3) “지금은 인권 유린 문제를 논할 적절한 시기가 아님”이라는 2006년 대우의 주장은, 비록 그 때가 언제가 될지, 혹은 누구와 인권 보호에 관해 의논을 할 의도인 지 밝히지는 않았으나, 대우가 그 프로젝트의 인권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 논의하기에 더 적합한 시간이 있다고 보고 있음을 뜻한다.

V. 버마에서의 대우인터내셔널과 한국가스공사에 의한 지침서의 구체적인 위반사항

¹⁷¹ 상동

¹⁷² 포스터에는 그 지역 말로 이렇게 쓰여있다: “Arakan 천연가스는 Arakan사람들을 위한 것; Arakan사람들의 동의없이 가스 판매 금지 ; 우리의 산림을 구하라; 산림 파괴 금지; Arakan을 녹색으로 유지하자.” 참조 “군이 장악한 Arakan State” Kaladan 뉴스, 2007년 6월 8일 http://www.bnionline.net/index.php?Itemid=6&id=1805&option=com_content&task=view 에 게재 (2008년 9월 5일 최종 확인).

¹⁷³ 상동

¹⁷⁴ ERI 인터뷰, 위의 각주 9번.

¹⁷⁵ 상동.

¹⁷⁶ 2007년에 친민주주의 데모대에 대한 격렬한 강압적 진압이 있자, 국제 사회에서는 SPDC의 행동에 대한 신랄한 비난을 하였다. 그러나, 대우인터내셔널 (Daewoo International)은 “정치는 정치. 경제는 경제,”라고 말하여, 대우는 버마에의 투자를 비정치적인 것으로 간주한다는 뜻을 내비추었다. “대우는 미얀마에 한 투자에 대한 변경 계획이 없다고 밝혀” 로이터 (Reuters), 2007년 9월 28일, <http://www.ibtimes.com/articles/20070928/daewoo-myanmar.htm> 에 게재 (2008년 10월 2일 최종 확인).

¹⁷⁷ “한국, 인도 회사들, 미얀마에서 철수하라고 촉구됨”, N. Wong-Anan, 로이터 (Reuters), 2006년 7월 11일.

i. 제 II.1 조 (Section II.1), 기업은 지속 가능한 개발이라는 안목에서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개선에 공헌하여야 한다.

지침서의 제 II.1 조는 기업들이 지속 가능한 개발이라는 목적을 추구하기를 권장하고 있다. 지침서의 해설서 (*The Commentary to the Guidelines*)는 “다국적 기업(multinational enterprises (MNEs)과 지속 가능한 개발 (sustainable development) 사이에 모순이 존재해서는 아니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해설서는 더 나아가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개선 간의 필수적인 연관성”을 강조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지속 가능한 개발의 정의는 브룬트랜드 보고서 (*the Brundtland Report*), 리오 선언서 (*the Rio Declaration*), 유엔 어젠더 21(United Nations Agenda 21) 등에 수록되어 있다.

a) 국제 기준

가장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지속 가능한 개발의 정의는 1987 년 브룬트랜드 보고서에 있는 것으로서, 이 보고서에서는 “지속 가능한 개발”이란 “현재의 필요를 충족시키되, 미래의 세대들이 그들 나름대로의 필요를 충족시킬 능력을 해하지 않으면서 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¹⁷⁸ 이 보고서는 더 나아가 “지속 가능한 개발을 하려면 반드시 모든 이들의 필요를 충족시켜야 하며 또한 보다 나은 삶에 대한 야망을 충족시킬 기회가 모든 이들에게 돌아가도록 해야한다”고 적고 있다.¹⁷⁹ 이 정의는 리오 선언서 제 3 원칙에 채택되었으며, 리오 선언서 전반에 걸쳐 자세히 설명되고 있다.¹⁸⁰ 리오 선언서는 지속가능한 개발에서 빼 놓을 수 없는 원칙들을 제시하는데 이는, 1) 환경 보호가 개발 과정에 행하는 “구조적이고 필수적인 (integral)” 역할 (제 4 원칙); 2) 빈곤 극복이라는 절대 요건 (제 5 원칙); 3) 현지민들의 “효과적인” 참여 (제 22 원칙); 및 4) 사람이 “지속 가능한 개발에 관한 관심의 중심”에 있어야 한다는 것 (제 1 원칙)이다.¹⁸¹

이 원칙들은 UN 어젠더 21 에서 다시 규정되며, 여기에서는 전세계적으로 지속 가능한 개발을 성취하기 위한 종합적 행동계획이 제시된다.¹⁸² UN 어젠더 21 은 지속 가능한 개발의 몇몇 중요한 원칙에 관해 행동 계획을 제시하는데 이는, 1) “빈곤과 싸우는 것”과 “가난한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 (제 3 장); 2) “건강을 보호하고 도모하는 것” (제 6 장); 3) “정책 결정에서 환경과 개발을 묶어서 다루는 것” (제 8 장); 및 “현지민들과 현지민 사회의 강점과 역할을 인정하고 강화하는 것” (제 26 장) 이다.¹⁸³

b) 제 II.1 조 (Section II.1)의 위반 사항

대우와 한국가스공사는, 프로젝트의 주요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자신들의 활동에 의해 영향을 받는 지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아니함으로써, 지침서의 제 II.1 조 (Section II.1)를 현재

¹⁷⁸ 환경과 개발에 관한 World Commission 의 보고서 (“Brundtland 보고서”), U.N.G.A. A/42/427 (1987년 8월 4일) 제 2 장, 1 항, <http://www.worldinbalance.net/pdf/1987-brundtland.pdf> 에 게재(2008년 9월 5일 최종 확인).

¹⁷⁹ 상동, 제 2 장, 4 항

¹⁸⁰ 환경과 개발에 관한 Rio 공표 (“Rio Declaration”) (1992년 6월), <http://www.unep.org/Documents/Multilingual/Default.asp?DocumentID=78&ArticleID=1163> 에 게재

¹⁸¹ 상동

¹⁸² 유엔 어젠더 21 <http://www.un.org/esa/sustdev/documents/agenda21/english/agenda21toc.htm#sec1> 에 게재

¹⁸³ 상동

위반하고 있다. 이 이의제기서의 제 V(iii) 항 (section V(iii),아래)에는 지침서 제 III.1 조 (Section III.1) 및 제 V.2 조 (Section V.2)의 현재 위반 사항이 자세히 기재되어 있다. 이 두 사항들은 지침서의 제 II.1 조 (Section II.1)에도 똑같이 적용되는데 그 이유는, 정보를 공개하여야 지역사회가 개발에 참여할 수 있고, 지역사회의 참여는 지속가능한 개발에 꼭 필요한 요소이기 때문이다. 슈에 프로젝트(Shwe project)에 의해 영향을 받는 지역사회가 효과적으로 참여하는데 필요한 주요 정보를 공개하지 않음으로써, 또한 그 지역사회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음으로써, 대우와 한국가스공사는 지침서의 제 II.1 조 (Section II.1)에서 장려하는 지속 가능한 개발이라는 목표를 신장하는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야다나 가스 프로젝트(Yadana Gas Project) 로 알려진 점

야다나 가스 프로젝트(Yadana gas project)의 결과 Tenasserim 지역에서 행해졌고 --또 계속 행해지고 있는-- 환경 및 인권 침해를 고려할 때, 슈에 프로젝트 (Shwe project)가 계속 진전될 경우, 제 II.1 조 (Section II.1)의 위반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이의제기인들이 우려하는 것은 타당한 것이다. 슈에 프로젝트 (Shwe project)는 프로젝트 지역의 주민들의 빈곤을 심화시키고, 주민의 건강에 해를 미치며, 환경을 해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런 거의 임박한 영향은 지속 가능한 개발의 가장 중요한 초석과 크게 대조가 되며, 이런 가능성 존재한다는 것은 제 II.1 조 (Section II.1)의 위반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야다나 프로젝트(Yadana project) 주변에서는, 그 지역을 비우고 프로젝트에 보안을 위해 군사화가 강화되었고, 이는 그 인근 마을을 황폐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¹⁸⁴ 군인들은 마을 주민들에게 군대를 위한 식량 작물을 기르기 위해 시간과 자원을 사용하도록 강요하는 등, 자신들을 위한 식량 작물 경작을 강요하였다. 이렇게 되자, 주민들은 자신들의 생존을 위한 식량공급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군인들이 주민들로부터 돈과 식량을 직접 훔쳤다는 보고도 있었고, 이는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다.¹⁸⁵ 여지껏 자급자족하던 가정들이 충분한 식량을 생산해내는데 어려움을 겪게 되자, 건강이 나빠지게 되었다; 이 상황은 이 프로젝트에서 방출되는 가스가 건강에 끼치는 영향 때문에 더욱 까다로운 상황이 되었다.¹⁸⁶ 단편적인 한 증거에 의하면, 회사들이 들여온 새 가축 때문에 모기의 수가 증가하였다 -- 말라리아 문제가 심각한 버마의 동부지역에서 모기는 위험하다.¹⁸⁷ 이 지역 환경 상태의 악화는 야생 동식물, 산림, 그리고 토양에 영향을 끼쳤다.¹⁸⁸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야다나 프로젝트(Yadana project) 지역의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다.¹⁸⁹

아라칸 주(Arakan State)에서는 지난 20 년사이에 군사화가 꾸준히 증가되고 있다.¹⁹⁰ 강제 노동과 강제 운반이 보고 되었고,¹⁹¹ 토지 강탈과¹⁹² 주민들로 부터의 돈과 음식 강탈에 대한

¹⁸⁴ 일반적 참조: *계속되는 총체적부인*, 위의 각주 17 번, 및 *에너지를 위해 인간이 겪는 고통*, 위의 각주 17 번.

¹⁸⁵ *계속되는 총체적부인*, 위의 각주 17 번, pp.100-114.

¹⁸⁶ 상동 pp.131-132.

¹⁸⁷ 상동 p.129.

¹⁸⁸ 상동 pp.149-159.

¹⁸⁹ *에너지를 위해 인간이 겪는 고통*, 위의 각주 17 번, pp.41-48.

¹⁹⁰ *공급과 지휘*, 위의 각주 136 번, p.22.

¹⁹¹ 상동 pp.25-26.

¹⁹² 상동 pp.27-28.

보고도 있었다.¹⁹³ 이 이의제기서의 앞부분에서 이미 언급되었듯이, 어부들에게 가해진 심하고 -때로는 잔인한- 제한 때문에 주민들의 생업 능력이 더욱 위협을 받고있다.¹⁹⁴

ii. 제 II.2 조 (Section II.2), 개발사업을 수용한 국가가 지는 국제적 의무와 동 국가가 국제사회와 맺은 약속에 준하여, [기업들은] 기업활동에 의해 영향을 받는 사람들의 인권을 존중해야 한다.

제 II.2 조는 기업들이 국제법에 준하여 - 특히, “개발사업을 수용한 국가 (host country)가 지는 국제적 의무”에 준하여 인권을 존중해야만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번 경우에, 버마가 지는 국제적 의무를 고찰해 볼 필요가 있다. 국제적 의무란 국제 관례법에 의거하거나 조약법에 의거하여 발생한다

a) 인권에 관한 국제 관례적 의무

인권 보호에 관한 몇 가지 사항들은 국제 관례법의 일부가 되어 모든 국가에 적용된다는 것에 대해 법학자들과 유엔 사이에 광범위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따라서 이러한 관례법적 규정들은 버마의 “국제적 의무”의 일부가 된다고 보아야 한다. 뿐만 아니라, 국제법의 본체가 되는 이러한 의무사항들은 국가 단위가 아닌 행위개체에게도 적용된다고 간주되며, 따라서 버마 영토에서 사업하는 회사들도 준수해야하는 사항들이다.¹⁹⁵

몇가지 인권 조항들이 이 범주에 속한다. 유엔 인권국 (Human Rights Commission) 의 한 결의서는 버마에서 행해진 다음의 유린행위들을 규탄하였다.

사법외적 살해, 군인들에 의해 지속적으로 행해지는 강간을 비롯한 여타 형태의 성폭행, 여전히 사용되는 고문, 다시금 발생하는 정치범에 대한 체포, 정치범을 석방하지 않는 것과 여타 형태의 구금..... 강제이주; 군에 의한 생업 파괴와 토지 압수; 어린이 노동을 포함한 강제노동, 인신 매매; 집회, 결사, 표현, 이동의 자유 침탈; 종교나 인종적 배경에 근거한 차별과 박해... 어린이 병사의 체계적인 이용.....¹⁹⁶

이러한 위반 사항 중 많은 것들이 국제 관례법의 기준을 위반한 것에 해당한다. 예를 들면, 국가가 묵인하는 고문,¹⁹⁷ 인신매매, 어린이 노동과 어린이 병사를 포함한 노예제등은 모두 국제 관례법 기준상 위반으로 인정되는 사항들이다.¹⁹⁸ 뿐만아니라, 고문이 체계적이고 광범위해 지면, 이는 “반 인류 범죄”라는 또 다른 부류의 범죄에 해당되게 된다. 이런 부류의 범죄는

¹⁹³ 상동 pp.29-30.

¹⁹⁴ 상동 pp.31-32.

¹⁹⁵ Andrew Clapham, 비국가 단체들의 인권에 관한 의무, 옥스포드 대학교 출판소(Oxford University Press), 2006 년.

¹⁹⁶ 유엔인권 커미션(U.N. Human Rights Commission), 결의안 2005/10, U.N. Doc. E/CN.4/RES/2005/10 ¶ 3(f) (2005 년 4 월 14 일).

¹⁹⁷ 고문과 기타 잔인하고 비인간적이거나 굴욕적인 취급 또는벌에 반대하는 협약(발효일, 1987 년 6 월 26 일).

¹⁹⁸ 아동권리 협약 (CRC) (발효일, 1991 년 8 월 14 일); 인신매매와 타인을 성매매로 착취하는 것을 막기위한 협약 (발효일, 1951 년 7 월 25 일); 강제노동 협약, 1930 (No. 29) (발효일, 1932 년 5 월 1 일); 강제 노동의 폐지 협약, 1957 (No. 105) (발효일, 1959 년 1 월 17 일).

“당연히 국제 관례법의 일부”이며,¹⁹⁹ 체계적이고 광범위한 살해, 강제 납치, 강제 추방, 강제 이주와, 정치적 혹은 다른 이유로 해서 행해지는 무분별한 구금과 박해를 포함한다.²⁰⁰ 전부는 아니지만, 여기에 열거한 바가 국제 관례법상의 많은 인권 관련 의무사항들을 보여준다.

강압된 유민화라고도 칭하는 강제이주의 경우, 비록 국제법이 이에 대한 보호를 구체적으로 보장하지는 않으나, 이동의 자유, 주거지 불가침의 권한, 주거지를 가질 권한 등 인권의 여타 부속 사항들의 개념에 입각하여 볼 때, 무분별한 유민화, 즉 이주는 국제 관례법의 한 해당사항이라는 목시적인 인식이 있다.²⁰¹

“국내 이주민에 관한 기본원칙서” (*The Guiding Principles on Internal Displacement*)는 비록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일개국 내에서 발생하는 유민화에 대해 각 단계에 합당한 권한사항과 보장사항을 판단하는 데 사용되는,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규범적 골격이 되고 있다.²⁰² 여기에는 유민화 과정에서의 보호와 지원을 제공할 근거가 되는 무분별한 유민화에 대한 보호, 그리고 안전한 귀환, 재정착 및 재규합에 대한 보장 등이 언급되어 있다.²⁰³ 이 중 본 이의제기서와 특히 관련이 있는 것은 제 6 원칙의 제 2(a)부 (Part 2(a) of Principle 6)로서, 이는 “확실하고 압도적인 공공의 이익을 제공하여 정당화 되는 경우가 아닌 여타의 대규모 개발 프로젝트의 경우에 발생하는 유민화”는 무분별한 유민화로 규정하고 있다.²⁰⁴

여기에 더하여, 동 *기본원칙서*의 제 9 원칙은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각 국가는 원주민, 소수민족, 농민, 유목민 및 토지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애착이 강한 여타 부류의 사람들이 유민화 되지 않게 보호해 주어야 할 각별한 의무를 지닌다.²⁰⁵

b) 조약법 상의 의무

¹⁹⁹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808 번 제 2 구절에 의거한 사무총장의 보고서, U.N. Doc. S/25704, (1993) (반인류적 범죄에 관한 법률성은 국제법상 조약이나 여타 문서에만 의거하지 않고, 국제 관례법에 의해서도 성립된다는 견해를 밝힘).

²⁰⁰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808,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 48 차 회의, U.N. Doc. S/RES/808 (1993);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955,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 49 차 회의., U.N. Doc. S/RES/955 (1994)

²⁰¹ 세계인권선언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art. 12, 13(1), and 25(1) ;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art. 12(3) and 17; 경제, 사회 및 문화의 권리에 관한 국제 협약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art. 11; 아동권리협약 (The Covenant on the Rights of the Child) art. 27; 여성차별폐지협약 (The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art. 14, paragraph 2(h);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를 위한 국제 협약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Racial Discrimination) art. 5(e)(iii); 1949 제네바협정(The 1949 Geneva Convention) art. 33 and 49, and Additional Protocol art. 17; 독립국가 내 원주민 및 부족민에 관한 국제노동기구협약 The ILO Convention No. 169 art. 16

²⁰² Francis Deng 외, 국내 이주민에 관한 기본원칙서(*Guiding Principles on Internal Displacement*) (1998년 8월 2일), 스위스제네바의 유엔 인도주의 업무 조정국에 제출됨, http://www.reliefweb.int/ocha_ol/pub/idp_gp/idp.html 에 게재 (2008년 9월 2일 최종 확인). (이하 기본원칙서)

²⁰³ 참조 Francis Deng, 국내 이주민에 관한 기본원칙서 (*Guiding Principles on Internal Displacement*)에 붙여진, “국내난민에 담당, 사무국장 대리인에 의한 서언” (1998년 8월 2일), 스위스 제네바의 유엔 인도주의 업무 조정국에 제출됨, http://www.reliefweb.int/ocha_ol/pub/idp_gp/idp.html 에 게재 (2008년 9월 2일 최종 확인).

²⁰⁴ *기본원칙서*, 위의 각주 202 번.

²⁰⁵ 상동

버마는 유엔(United Nations)의 회원국이며 유엔 헌장의 채택국이므로, 유엔 헌장의 기본적인 약정사항에 의거 “인권과 기본적 자유권을 도모하고 이에 대한 존중을 장려할” 의무가 있다.²⁰⁶ 비록 유엔헌장에는 구체적인 권리들이 열거되어 있지 않으나, 이 헌장은 버마가 인권에 관한 관례법을 준수해야만 하는 추가적 근거가 된다. 버마는 또한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 the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CEDAW; 적용시작일 1997년 8월 1일)과 유엔아동권리협약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CRC; 적용시작일 1991년 8월 1일)이라는 두가지 주요 인권조약의 채택국이다. 여성차별철폐협약은 여성에 대한 차별을 전반적으로 금지하며 “여성 권한에 대한 법적보장”을 필수사항으로 두고 있다.²⁰⁷

유엔아동권리협약(CRC)은 더 광범위한 방식으로 모든 미성년자의 인권을 보호한다. 이 협약은 모든 어린이의 “삶에 대한 본성적 권리”보장을 규정하는데,²⁰⁸ 이는 곧 어린이의 무차별한 살해를 금지하는 규정이 되는 것이다. 이 협약은 또한, 미성년자가 “사생활과, 가족생활 및 통신에 관해 무분별한 간섭이나 불법적인 간섭”을 받지 않을 권리를 규정하는데,²⁰⁹ 이는 곧 미성년자가 가족이 살던 집을 떠나 무분별한 강제이주를 당하지 않을 권리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 협약은 또한, 각 국가는 가정이 자녀에게 “아동의 육체적, 정신적, 영적, 도덕적, 사회적 성장에 필요한 생활 수준” 그 중 특히 “영양, 의복, 가옥”을 제공하도록 도울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필수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²¹⁰ 이 규정은 각 가정에서 자녀를 부양하는 데 필요한 생업을 빼앗는 행위나 가정의 주거지를 빼앗는 행위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아동권리협약(CRC)은, 어린이를 “경제적 착취 및 어린이에게 위험할 수 있거나, 교육에 방해가 될 수 있거나, 성장에 해가 될 수 있는 일에 종사시키는 것”에 대한 금지규정과,²¹¹ “모든 형태의 성적 착취와 성적 율린행위”에 대한 금지규정²¹² 및 “어린이의 복지에 해가 되는 여타 모든 형태의 착취”에 대한 금지규정을 두고 있다.²¹³ 더 나아가 아동권리협약 (CRC)은 어린이 인권에 대한 일련의 보호 조항을 두고 있는데 여기에는 고문과 무분별한 구금 금지가 포함된다.²¹⁴ 마지막으로, 아동권리협약(CRC)은 15세 미만의 어린이를 군대에 징집하는 것과 이 나이의 어린이가 공격성 행위에 직접 가담하는 것을 금하고 있다.²¹⁵

버마는 1949의 제네바 협약(the Geneva Conventions of 1949) 채택국이기도 하다. 제네바협약 공통 3항 (Common Article 3)은 내란을 포함한 일체의 무장충돌 경우에 살인, 고문과 인간 존엄성을 지나치게 무시하는 행위, 특히 치욕적인 행위, 굴욕적인 행위 및 즉결 처형을 금하고 있다.²¹⁶

c) 제 II.2 조 (Section II.2)의 위반 사항

²⁰⁶ 유엔 헌장 (U.N. Charter) 제 I(3) 항.

²⁰⁷ CEDAW 제 2(c) 항

²⁰⁸ CRC 제 6(1) 항

²⁰⁹ 상동 제 16(a) 항

²¹⁰ 상동 제 27(1), 27(3) 항

²¹¹ 상동 제 32(1) 항

²¹² 상동 제 34(1) 항

²¹³ 상동 제 36 항

²¹⁴ 상동 제 37 항

²¹⁵ CRC 제 38(2)-(3) 항

²¹⁶ 전쟁포로에 관한 제네바 협정 (Geneva Convention Relative to the Treatment of Prisoners of War) (이하, 제네바 협정), Aug. 12, 1949, 6 U.S.T. 3316. <http://www.unhcr.ch/html/menu3/b/91.htm> 에 게재 (2008년 9월 5일 최종 확인).

슈에 가스 프로젝트 (Shwe gas project)에 참여함으로써, 대우와 한국가스공사는 지침서 제 II.2 조 (Section II.2)를 위반하고 있고, 앞으로도 위반할 것이다. 버마의 국제적 의무와 공약에 반하여 행해지고 있는, 프로젝트 지역의 주민들의 기본인권 유린행위에 관하여 대우와 한국가스공사는 공모성 책임이 있으며, 이러한 유린행위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이고, 그 빈도도 증가할 것으로 여겨진다.

슈에 가스 프로젝트 (Shwe gas project)는 이미 강제 이주와 강제 노동이라는 결과를 낳았다.²¹⁷ 굴착시설이 있는 제한 지역은 군대가 순찰하며, 여기서 낚시를 하다 발견된 마을 사람들은 구타를 당해왔다.²¹⁸ 아라칸 주 (Arakan State) 앞바다에서 천연가스 채취하는 것에 대한 반대의견을 내비친 지역 주민은 아라칸 주 (Arakan State) 당국에 의해 감금, 취조당하고 체포되었으며, 슈에 프로젝트 (Shwe project)에 대해 반대의견을 품거나 반대하는 운동가들의 활동을 도왔다는 의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도 같은 일이 일어났다.²¹⁹

야다나 가스 프로젝트 (Yadana Gas Project)로 알게된 점

야다나 가스 프로젝트 (Yadana gas project)의 경험은, 버마 국토 1,100 마일에 걸쳐 2 개 주(states)와 3 개 구역(divisions)의 24 마을을 관통하게 되는 슈에 가스 프로젝트 (Shwe gas project)가 어떤 종류의 지침서 제 II.2 조 (Section II.2)위반을 유발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준다. 이보다 훨씬 짧은 야다나 (Yadana) 파이프라인 주변의 군사화만으로도, 군인들에 의한 살해, 강간 및 고문등 심각한 인권 유린 행위가 일어났다.²²⁰ 군인들은 마을사람들을 강제로 이주시키고 그들은 이동을 제한하여,²²¹ 마을사람들이 생계를 유지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었다.²²² 군인들은 작물과 집을 파괴하고,²²³ 농토를 강탈해 갔으며,²²⁴ 강제 노동과 강제 운반부역에 어린이를 포함한 마을 사람들을 징발했다.²²⁵ 무장 반란 그룹에 대해 현재 진행 중인 군사작전 에는 양민의 살해와 고문이 포함되어 있었다.²²⁶

야다나 가스 프로젝트 (Yadana gas project)와 연계된 이러한 유린행위들은 인권을 존중해야하는 관례적 의무와 조약의 의무에 대한 위반이었다. 고문, 강간 및 살해는 세계 인권 선언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UDHR))에 의해 명시화된 인간의 생명권, 자유권, 그리고 안전권에 관련한 국제 관례법 기준에 위배되는 것이다. 군인들이 마을 사람들을 강간하는 일은 다반사로 일어나며, 군인들이 이런 일로 벌을 받지 않고 있어,²²⁷ 이는 CEDAW 상 여성의 법적 권리를 보호해야 하는 의무를 위반한 것이 된다. 군대의 재산 파괴와 몰수, 강제 이주, 그리고 마을 사람들의 노동과 자원을 생계를 위한 활동에서 군사활동으로 돌려 쓰는 것은 이동과 집회의 자유, 그리고 재산을 임의로 몰수당하지 않을 자유에 대한 관례적인 권리를 유린하는

²¹⁷ Amnesty 보고서, 위의 각주 85 번.

²¹⁸ 상동 p.31.

²¹⁹ ERI 인터뷰, 위의 각주 9 번.

²²⁰ 계속되는 총체적 부인, 위의 각주 17 번 p.24, p.108, p.113.

²²¹ 상동 pp.43-48.

²²² 상동 p.114.

²²³ 평화에 대한 위협, 위의 각주 83 번.

²²⁴ 계속되는 총체적 부인, 위의 각주 17 번, p.110.

²²⁵ 상동 p.24, p.31, pp.53-60.

²²⁶ 총체적 부인, 위의 각주 17 번, pp.22-23.

²²⁷ 상동 p.113.

행위였다; 동 행위들은 동시에 CRC 상 어린이의 권리 즉, 어린이가 가족 생활을 방해받지 않을 권리 및 신체적, 정신적, 영적, 도덕적, 사회적 성장에 합당한 생활 수준을 누릴 권리를 침해한 것이었다. 어린이를 포함, 강제노동자를 쓰는 것은, 노예 노동자 이용을 금지하고, 경제적 이득을 위해 어린이를 쓰는 것이나 위험한 일에 어린이를 쓰는 것을 금하는 관례법과 CRC 금지사항(CRC prohibitions) 둘 다를 어기는 것이었다. 무장 반대 세력을 돕는다고 의심되는 양민을 고문하고 죽이는 일은 제네바 컨벤션 (Geneva Convention)의 위반이었다.

야다나 프로젝트 (Yadana project)는 기본 인권에 대한 보호를 제공하는 대신, 이런 권리들을 침해하는 직접원인이 되었다. 군사 정권의 변함없는 인권 관련 행적과 슈에 프로젝트 (Shwe project)가 진행되고 있는 방식으로 이루어 볼 때, 슈에 가스 프로젝트 (Shwe gas project)로 인하여 똑같은 식의 유린행위가, 이미 이 프로젝트로 인해 일어나고 있는 수준을 넘어 발생하게 될 것이라고 예견하는 것이 타당하다. 가스 파이프라인의 광대한 지역의 보안을 확보하기 위해 군대가 들어오고 있으며, 또 이 프로젝트가더 벵갈만(Bay of Bengal) 지역의 공동체들을 점점 더 잠식하고있기 때문에 각별히 더 우려가 된다. 예방책이 없이는, 대우와 한국가스공사의 슈에 가스 프로젝트 (Shwe gas project) 참여는 인권을 존중하는 대신 인권을 침해하는 역할을 계속 할 것이며, 이는 지침서의 제 II.2 조 (Section II.2)를 위반하는 일이다.

iii. 제 III.1 조 및 제 V.2 조 (Sections III.1 & V.2), 기업은 1) 자기기업의 활동, 구조, 재정상태, 업무에 관한 적절한 정보가 적시에 정기적으로 공개되도록 하여야 하며, 2) 정보를 제때에 제공하여 영향을 받는 지역사회 의견 수렴하여야 한다.

지침서 제 III.1 조는 각 기업이 자사 기업활동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당사자들에게 정보를 공개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이때 정보란 기업 활동에 관한 예측 가능한 위험요소들과 이런 위험성을 관리하는 제도를 포함한다. 지침서의 2000년도 해설서는 각 기업이 활동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권고하며, 각 기업의 사회적 정책, 윤리적 정책, 환경적 정책을 공개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지침서의 후원을 받는 글로벌 정보공개 이니셔티브 (the Global Reporting Initiative [GRI])를 포함하여 몇몇 국제 이니셔티브들은 회사들이 관련 정보를 공개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지침서 제V.2 조는 각 기업이 다음과 같이 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 a) 회사의 활동이 환경, 건강, 안전에 미칠지도 모르는 영향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일반인과 임직원에게 제때에 제공하여야 하며, 여기에는 환경관련 활동의 현 성취도에 관한 정보가 포함될 수 있다; 그리고
- b) 회사의 환경관련, 건강관련, 안전관련 정책의 수립과 정책 실시에 의해 직접 영향을 받는 지역사회들과는 충분한 연락을 제때에 취해야 하며, 이 지역사회들의 의견을 충분히 적시에 수렴하여야 한다.

a) 국제 기준

몇몇 국제 이니셔티브들, 즉 The Global Reporting Initiative (GRI), UN Global Compact, the Extractive Industries Transparency Initiative (EITI), 및 the Global Transparency Initiative (GTI) 등은 기업 투명성을 강조하고 있다.

GRI 는 각 기업이 지속 가능한 개발을 더 잘 추진하기 위해서 행하는 자신들의 경제적, 환경적, 사회적 활동을 어떻게 측정하고, 추적하고 개선할 것인지에 대한 지침서를 제공하고 있다.²²⁸ 한국가스공사도 채택한 이 지침서는 기업이 모든 보고서에 꼭 포함시켜야 할 여러 지표들을 명시하고 있다.²²⁹ GRI 지침서는, “지역사회에 기업이 들어가고, 그 속에서 사업하고, 그 사회를 자극하는 활동 및 그러한 활동의 효과와 관련된 일체의 프로그램과 행위에 대하여 그 성격과, 범위와 효과”를 공개하도록 권하고 있다.²³⁰ GRI는 또한 각 기업의 하청업체나 파트너 업체가 해당 기업 활동이나 프로젝트 시행에 상당한 영향을 주는 경우, 이들 하청업체나 파트너 업체의 활동에 관련한 정보도 공개할 것을 권하고 있다.²³¹

유엔 글로벌 컴팩트 (the UN Global Compact)는 사업체와 시장의 사회적 정당성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채택된 이니셔티브이다. 이 이니셔티브는 각 기업이 프로젝트를 설계할 때에 인권, 노동권, 환경보호 및 투명성을 신장하기 위한 10 가지 핵심원리에 의거하여 설계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글로벌 컴팩트의 제 8 원칙은 기업들이 “글로벌 운영 기준에 맞게 보고하는 것을 포함하며, 사업운영에 지속 가능성의 원칙을 포함하여 진전을 측정하고, 추적하고, 그리고 보고”할 것을 추천한다.²³² 이 10 가지 핵심원리는 각 기업이 기업활동에 관해 투명성을 유지할 것과 일반대중에 대해 책임감을 가질 것을 권장한다. 한국가스공사는 이 글로벌컴팩트에 2007년 4월 7일 가입하였고, 한국가스공사의 2006년 지속성 보고서 (Sustainability Report) 에는 한국가스공사가 이 글로벌컴팩트의 원칙을 준수하기로 하였다고 쓰여있다. 같은 보고서에는 다음과 같은 주장이 담겨있다:

환경적/사회적 위험 요소: 이러한 위험 요소들은 에너지 개발 사업에 따르게 되는 위험들이다. 공사의 중단,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우리는 지역주민들 및 이해 당사자들과 만나 의견을 듣고 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다음과 같은 종류의 위험성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사회 환경에의 위험, 작업 환경에의 위험, 자연환경에의 위험, 생물학적 다양성에의 위험 및 자원고갈의 위험.

우리는 경제적 위험성과 환경/사회적 위험성을 정책수립에 고려하고 있다. 즉, 우리는 이해 당사자들의 복지 향상에 관한 매우 효과적인 혁신 방법을 제공하게 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²³³

한국가스공사는 ISO 14001 증명서도 받았으며, 이는 한국가스공사가 환경관리시스템을 시행하고 있다는 뜻과 동시에 한국가스공사의 프로젝트와 관련 환경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을 파악하고, 통제하고 보고하기로 하였다는 뜻이 된다.²³⁴

²²⁸ *지속가능성 보고 지침서(Sustainability Reporting Guidelines)*, 글로벌 보고 선창(Global Reporting Initiative), 2006년 10월, pg. 3. http://www.globalreporting.org/NR/rdonlyres/ED9E9B36-AB54-4DE1-BFF2-5F735235CA44/0/G3_GuidelinesENU.pdf 에 게재 (2008년 9월 5일 최종 확인).

²²⁹ KOGAS 지속가능성 보고서(Sustainability Report), 2006년. http://www.unglobalcompact.org/data/ungc_cops_resources/02B3F878-022E-4775-9EB5-C3956F908696/COP.pdf 에 게재 (2008년 9월 5일 최종 확인)

²³⁰ *지속가능성 보고 지침서(Sustainability Reporting Guidelines)*, 위의 각주 228번, p.35.

²³¹ 상동 18-19.

²³² *열가지 원칙 (The Ten Principles)*, 유엔 글로벌 컴팩트 (UN Global Compact). <http://www.unglobalcompact.org/AboutTheGC/TheTenPrinciples/index.html> 에 게재(2008년 9월 5일 최종 확인).

²³³ KOGAS 지속가능성 보고서(Sustainability Report), 위의 각주 229번, p.7.

²³⁴ ISO 14000 필요사항(Essentials), 국제 표준 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세계은행 (World Bank)과 아시아개발은행 (Asian Development Bank)의 후원을 받는 채굴산업 투명성 이니셔티브 (The Extractive Industries Transparency Initiative [EITI])는 정부-정부간의 이니셔티브로서, 석유, 가스 및 광업 프로젝트 관련 세입과 지불액등을 공개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²³⁵ 글로벌투명성이니셔티브 (GTI)는 민간 사회단체들의 네트워크로서, 국제 금융기관들이 벌이는 프로젝트에 관한 정보공개를 권장함과 동시에 일반인들의 삶에 영향을 주는 개발정책과 프로젝트들에 일반인이 참여하기를 권장하고 있다.²³⁶ GTI 가 옹호하는 원칙들 중 많은 것들은 세계은행과 아시아개발은행에 의해서 채택되었다.

b) 조약법상 의무

국제법상, 버마는 지역사회 현지주민들이 상당한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여기는 지 여부에 관해 지역사회 현지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의무를 지닌다. 버마는 생물학적 다양성에 관한 협약 (the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을 1994년 11월 25일 비준하였다. 이 조약은 1993년 12월 29일 부터 효력을 발휘한 것으로서, 원주민들의 사회적 참여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규정을 담고있다. 동 협약서 제 8항 (Article 8)의 일부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담고 있다:

가능하고 적절한 한, 각 서명국은:

...

(j) 자국의 법이 허용하는 한도내에서, 생물학적 다양성의 보존 및 이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관련, 전통적 생활 양식을 규정짓는 현지주민들의 지식과, 창의성 및 관례화된 행위들을 존중해 주고, 보존해 주고, 유지해 주어야 하며, 이러한 지식을 보유한 이들의 동의와 참여하에, 이러한 지식과 창의성과 관례화된 행위들이 더 널리 응용될 수 있도록 도모해 주어야 하며, 이러한 지식과 창의성과 관례화된 행위들을 사용하여 얻어지는 혜택들이 공평히 분배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²³⁷

c) 제 III.1 조 (Section III.1)의 위반 사항

대우와 한국가스공사는, 근해 가스 필드의 철저한 탐사를 이미 마쳤으며, 프로젝트의 개발 단계에 이미 돌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역사회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해당 지역사회에 프로젝트에 관한 정보를 내어 주지 않음으로써, 지침서의 제 III.1 조 (Section III.1)를 현재 위반 중에 있다. 대우는 버마 군사정부와 2003년 8월에 계약을 맺고 2003년 말부터 시추을 시작했다.²³⁸ 시추가 시작된지 5년이 지난 지금 현재까지, SGM 같은 지역 이해 당사자들, 벵갈만 (Bay of Bengal) 주변의 마을민들, 혹은 계획된 파이프라인 경로가 통과하게

http://www.iso.org/iso/iso_catalogue/management_standards/iso_9000_iso_14000/iso_14000_essentials.htm 에 게재 (2008년 9월 5일 최종 확인).

²³⁵ 추출 산업 투명성 선창 (Extractive Industries Transparency Initiative), <http://eitransparency.org/eiti/summary> (2008년 9월 5일 최종 확인).

²³⁶ 글로벌 투명성 선창(The Global Transparency Initiative), <http://www.ifitransparency.org/about.shtml> (2008년 9월 5일 최종 확인).

²³⁷ 생물학적 다양성에 관한 협약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리오 데자네이로(Rio de Janeiro), 1992년 6월 5일. <http://www.cbd.int/doc/legal/cbd-un-en.pdf> 에 게재(2008년 9월 5일 최종 확인).

²³⁸ *에너지를 위해 인간이 겪는 고통*, 위의 각주 17번, p.57.

되는 24 개의 마을의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적이 없다.²³⁹

지침서의 제 III.1 조 (Section III.1)는 회사들이 자신들의 활동과 사업 성과 중 해당사항이 있는 모든 정보를 지역사회에 신속하고 정기적으로 제공할 것을 필수사항으로 하고 있다.²⁴⁰ 슈에 프로젝트 (Shwe project)에 관한 지역사회 및 일반사회에의 정보 공개는, 신속하고 정기적이지 못한 정도가 아니었다 -- 그런 일이 거의 전혀 일어나지 않았다. 의사소통과 투명성의 부재, 그리고 이것이 가져올 가능성이 많은 부정적인 효과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지침서의 제 V.2 조 (Section V.2)에 관계지어 더 자세히 기술하기로 한다.

버마 정권은 이 프로젝트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것인데, 그 이유는 이 군사정권이 국가 관리 기관인 MOGE를 통해 이 프로젝트의 15%를 가진 주주이고, 또한 이 프로젝트의 보안을 위해 버마군대를 제공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우와 한국가스공사는, 지침서가 명시하는 바 대로 프로젝트에 관련된 버마 정부의 활동에 대한 정보를 지역사회나 일반사회에게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는 상당한 우려를 낳고있다. Yadana 와 Yetagun 파이프라인의 건설기와 현재의 운영기에, 버마 군부대는 Chevron 과 Total 사를 위해 파이프라인 보안을 지원하였고, 또 계속 지원하고 있다.²⁴¹ 이 보안 병력은 버마 군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노동강요, 살해, 강간 및 구타등의 유린행위를 행하였고, 지금도 이를 계속하고 있다.²⁴² 이렇듯 이미 드러난 버마 군대의 습성에 비추어 볼 때, 그리고 지침서 자체에 근거하여, 대우와 한국가스공사는 파이프라인 보안이나 여타의 책임 공유사항에 관해 버마 군부와 맺은 합의가 있다면 이를 공개적으로 밝혀야 한다.

더 나아가, 지침서의 제 III.1 조 (Section III.1)는 회사들이 “재정 상황”에 대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군사 정권에게 대한 지불은, 현재 지불과 로열티의 형식의 미래의 지불 두 형태가 다, 회사의 재정 상태에 관련된 중요 사항임에 의심의 여지가 없으므로, 지침서에 따라 일반에 공개해야 한다. 대우와 한국가스공사는 오늘 현재까지, 그들이 버마 정부에 지금까지 행한 지불의 내역에 대해 어떠한 상세사항도 공개하지 않고있다.

d) 제 V.2 조 (Section V.2)의 위반 사항

환경영향평가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EIA))에 관한 지침서의 제 V.3 조 (Section V.3)와 연계해 아래에서 더 설명할 것이지만, 슈에 가스 프로젝트 (Shwe gas project)는 이미 자연 환경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더구나, 지역사회들은 지침서의 제 V.2 조 (Section V.2)에서 명시하는 바 대로 프로젝트에 대해 의견을 개진할 기회를 가지지 못했을 뿐 아니라, 이 프로젝트에 관련된 어느 회사로 부터도 간략한 설명조차 듣지 못하였다.

위에서도 설명되었고, 아래 Section e.에 다시 설명되지만, 대우와 한국가스공사의 계획된 파이프라인은 해안과 근해의 환경적으로 민감한 여러 지역을 지나게되어 위험이 따르는데, 이 위험이 지침서의제 V.2 조 (Section V.2)에서 요구되는 바 대로 회사에 의해 일반에게 설명되지 않고있다.

²³⁹ 상동 p.57.

²⁴⁰ OECD 다국적 기업을 위한 지침서, 개정 2000 년 p.20.

²⁴¹ 에너지를 위해 인간이 겪는 고통, 위의 각주 17 번, pp.29-30.

²⁴² 상동 pp.31-36.

더구나, 벵갈만 (Bay of Bengal) 해역과 그 주위의 강이 오염에 의해 악영향을 받을 수 있는데, 이곳은 dugong [듀공, 돌고래 비슷한 바다 포유류] 과 같이 멸종위기에 놓인 종들의 서식지이다.²⁴³ 계획된 파이프라인이 버마의 알려진 지진 단층 지역을 지나게 된다는 사실로 볼 때, 지진의 위험도 고려해야 할 중요한 점이다.²⁴⁴ 계획된 파이프라인의 중국쪽에도 지진은 심각히 고려해야 할 점이다. 2008 년 5 월 12 일 중국 Sichuan에서 일어나 거대한 지진은, Sichuan석유 공급의 70 퍼센트를 운반하는 그 나라에서 가장 긴 연료 파이프라인을 심각히 위협하여, 우려를 자아내었다.²⁴⁵ 또다른 지진이 2008 년 8 월 20 일에 중국- 버마의 국경을 강타, 천 명이상이 대피를 했어야 하였다.²⁴⁶ 이와 비슷하게, 서부 버마는 태풍과 산사태,²⁴⁷ 그밖에 환경 위험을 가중시키는 천연 재해가 빈번히 일어나는 곳이다.²⁴⁸

지역 주민의 건강에 대한 영향도 우려되는 점인데, 회사들은 이 프로젝트가 건강에 끼칠 수 있는 잠재적 영향에 대해 지역사회에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 아라칸 주 (Arakan State) 주민들과 계획된 파이프라인 주위의 주민들은 식량과 물에 관해 자연 환경에 의존한다. 이들 지역민들에게는 민물 수자원에 대한 접근과, 수생 동물 및 여타 동물들, 숲에서 얻는 견과 (nuts)와 과일 등에 대한 접근이 생존에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슈에 (Shwe) 파이프라인과 그 보안군대는 광범위한 산림지대를 횡단하게 되므로, 지역민들은 이런 자원에 대한 접근과 생존 활동에 제한을 받게 될 것이다. 2005 년에는, 벵갈만 (Bay of Bengal)의 대우 근해굴착시설 가까지의 칼라단 강 (Kaladan River)에서 물고기가 10,000 마리 정도 떼죽음을 하였다는 보고들이 있었다. 아라칸 주 (Arakan State) 주민들은 창자가 기형인 작은 물고기를 잡았다고 보고하였다.²⁴⁹ 이런 일들의 확실한 이유는 알 수 없으나, 슈에 가스 프로젝트(Shwe gas project)에 관하여 해당 회사와 대화가 없는 상태에서, 이 회사들의 활동이 원인이 아니라고 말할 수도 없다. 더구나, 파이프라인 때문에 강제 이주가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는데,²⁵⁰ 강제

²⁴³ Dugong 은 커다란 회색 포유류로서, 이 지역에서 일생을 보낸다; 국제적으로, dugong 은 멸종위기 종의 국제 거래의 관한 협약(the Conservation of International Trade in Endangered Species (CITES))의 제 1 부록 및 이동하는 종에 관한 협약(the Convention on Migratory Species (the CMS))의 제 2 부록에 열거되어 있다. 참고: 오스트레일리아 정부, 환경, 물, 유산 및 예술담당 부, “Dugongs”, <http://www.environment.gov.au/coasts/species/dugongs/index.html> (2008 년 9 월 5 일 최종 확인).

²⁴⁴ 참조: Socquet, Anne 외 “GPS 로 측정된 India 플레이트와 Sunda 플레이트의 움직임 및 미얀마에 있는 그들의 경계를 따라 일어나는 변형.”, *Journal of Geophysical Research*, Vol. 111, B05406, 2006.; Vigner, Christopher 외 “미얀마의 Sagaing 단층 주위에 현재 일어나는 지각 변형,” *Journal of Geophysical Research*, Vol. 108, No. B11, 2533, 2003.

²⁴⁵ “지진을 겪은 호수는 중국의 가장 긴 석유관을 위협” Wang Ying, 2008 년 6 월 6 일, Bloomberg, <http://www.bloomberg.com/apps/news?pid=20601087&sid=aeYsZAB0iWbY&refer=home> 에 게재 (2008 년 8 월 20 일 최종 확인).

²⁴⁶ “지진이 중국의 미얀마 접경을 강타” AFP, 2008 년 8 월 20 일, http://afp.google.com/article/ALeqM5jD9ICqDKCK_AenEkD2XJc23z8g1Q 에 게재 (2008 년 9 월 5 일 최종 확인); “지진으로 Mega 댐에 대한 우려가 높아짐” Violet Cho, The Irrawaddy, 2008 년 8 월 20 일, http://www.irrawaddy.org/highlight.php?art_id=13944 에 게재 (2008 년 9 월 5 일 최종 확인).

²⁴⁷ “산사태로 미얀마에서 여섯명 사망” AP, 2008 년 8 월 20 일, <http://www.gmanews.tv/story/114910/Landslide-kills-six-in-Myanmar> 에 게재 (2008 년 9 월 5 일 최종 확인).

²⁴⁸ 참조: 예, *총체적 부인*, 위의 각주 17 번, p.55.

²⁴⁹ 참조: Dale, *일만 마리 이상의 Giant Sea Perch 떼죽음, Hitsa 변형: 대우 (Daewoo)와 슈에(Shwe) Block A-1 석유사업(Gas Operation)*, The Shwe Gas Bulletin, Vol. 1, Issue 5 (2005 년 9 월).

²⁵⁰ 참조: 위의 각주 17 번; *총체적 부인*, 위의 각주 17 번, pp.41-43; *에너지를 위해 인간이 겪는 고통*, 위의 각주 17 번, pp.46-47.

이주란 이주된 사람들의 건강을 해치고, 빈곤을 심화한다고 증명된 인권 침해이다.²⁵¹

마지막으로, 지역주민들은 슈에 가스 프로젝트(Shwe gas project)의 안전성에 대해 당연히 우려하고 있으며, 이들의 우려에 대해 회사는 논의도 해결책도 제공하지 않았다. 슈에 프로젝트(Shwe project)는 이미 아라칸 주 (Arakan State)에서 인권 유린을 야기하였고, 그 빈도나 정도가 더 심해질 것으로 여겨진다. 현 정권의 변함없는 인권관련 행적으로 미루어 보아, 분명히 이 프로젝트와 연관하여 이 나라 곳곳에 광범위한 군사화가 이루어 질 것이고, 이로 인해 강제 노동, 강제 이주, 사법외 살해, 강간 및 폭력등의 인권유린이 증가될 것이 거의 확실하다. 대우와 한국가스공사는 이러한 심각한 우려 사항에 대해 지역공동체와 의논을 하지 않았고, 이는 지침서의 위반인 것이다.

iv. 제 IV.1(c)조 (Section IV.1(c)), 기업들은 모든 형태의 강제 또는 의무 노동을 없애는데 기여하여야 한다.

지침서의 제 IV.1(c)조 (Section IV.1(c))는 “해당 법, 규정, 그리고 일반화된 노동 관계와 고용 관행의 틀 안에서” 모든 형태의 강제 또는 의무 노동을 철폐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강제 노동에 관한 국제적 의무는 국제 관례법과 조약법 모두에 의거 발생한다. 뿐만 아니라, 버마의 국내법은 강제 노동을 명확하게 금하고 있다.

a) 강제 노동 및 강제 운반 부역에 관한 국제 관례법

강제 노동 사용의 금지는 워낙 넓게 퍼져있어, 국제 관례법의 사항이 된다. 더구나, 강제 노동은 널리 비난을 받고 있기 때문에 *jus cogens* (국제법상 강행 규범)위반의 지위를 얻었고,²⁵² 현대판 노예제로 여겨지고 있다.²⁵³ 세계 인권 선언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이 모든 종류의 노예제도를 금하며, 강제 노동도 여기에 포함시켰다.²⁵⁴ 강제 노동은 공민권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조약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²⁵⁵ 로마 법령 (Rome Statute),²⁵⁶ 그리고 국제 노동 기구 기본 협정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Fundamental Conventions)을²⁵⁷ 포함한 수 많은 국제 조약에 의해 명확히 금지되어있다. 강제 노동은 또한,

²⁵¹ 백팩 건강 일꾼 팀(Back Pack Health Worker Team), *만성적 긴급사태: 버마 동부의 보건과 인권*, 2006년 9월, pp.44-47, <http://www.geocities.com/maesothtml/bphwt/index.html> 에 게재(2008년 9월 5일 최종 확인); 참조: Downing, TE. “새로운 빈곤 피하기: 채광에 의한 강제 이주와 재정착” *채광, 광물 및 지속 가능한 개발 (Mining, Minerals, and Sustainable Development (MMSD))*, 2002년 4월, No. 58, http://www.ied.org/mmsd/mmsd_pdfs/058_downing.pdf 에 게재 (2008년 9월 5일 최종 확인).

²⁵² *Jus Cogens*는 “강제적 법,”이라는 뜻의 라틴말로, 어떤 경우에도 피할 수 없는 단호한 국제법의 규범을 이를 때 쓰인다.

²⁵³ 참조: 예. Symeonides, Symeon, *2002년 미국 법정에서의 법의 선택*, 51 Am. J. Comp. L. 1, 49 (2003년 겨울호); *John Doe I v. Unocal Corp*, 395 F.3d 932, 945 (9th Cir. 2002).

²⁵⁴ *세계 인권 선언*, G.A. Res. 217(A)III (1948), 제 4 항 (모든 종류의 노예제도를 금지함), <http://www.un.org/Overview/rights.html> 에 게재 (2008년 9월 5일 최종 확인).

²⁵⁵ 시민적, 정치적 인권에 관한 유엔 국제 협약, G.A. Res. 2200A (XXI), 1966, 제 8 항 (강제노동을 금지함). http://www.unhchr.ch/html/menu3/b/a_ccpr.htm 에 게재

²⁵⁶ *국제 범죄 법정의 로마 법령*, 로마 1988년, 제 8 항 (노예화를 인류에 대한 범죄로 규정함), <http://www.un.org/children/conflict/keydocuments/english/romestatuteofthe7.html> 에 게재(2008년 9월 5일 최종 확인).

²⁵⁷ *강제적 혹은 의무적 노동에 관한 협약*, (ILO No. 29), 39 U.N.T.S. 55, 1930, <http://www.ilo.org/ilolex/cgi-lex/convde.pl?C029> 에 게재(2008년 9월 5일 최종 확인); *강제 노동 폐지 협약*, ILO No. 105, 17 1959년 1월, <http://www.ilo.org/ilolex/cgi-lex/convde.pl?C105> 에 게재(2008년 9월 5일 최종 확인).

유럽축의 주요 전범 기소와 처벌에 관한 합의 (Agreement for the Prosecution and Punishment of the Major War Criminals of the European Axis) 및 국제 군법회의 헌장 (Charter of the International Military Tribunal)에서 전쟁범죄로 규정되었다.²⁵⁸

b) 조약법 상의 의무

1932년 5월 1일부터 시효를 발효한 강제 및 의무 노동에 관한 협정 (Convention Concerning Forced or Compulsory Labour)을 버마는 1955년 3월 4일 비준하였다. 이 협정의 제 4항은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 “관계 당국은 개인, 회사 혹은 사설 단체를 위해 강제 혹은 의무적 노동을 부과하거나, 이를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이에 더하여 제 5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개인, 회사 혹은 사설 단체에게, 그들이 사용하거나 거래하는 제품의 생산이나 생산제품 수집을 위해 어떤 형태로든 강제 혹은 의무적 노동을 사용할 수 있는 특권을 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버마는 ILO의 회원국으로서, ILO의 여덟 가지기본 원칙, 즉 핵심 협정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²⁵⁹ 이것은 1959년 1월 17일에 효력을 발휘하게된 강제 노동 폐지 협정(Abolition of Forced Labour Convention, (ILO No. 105))를 포함한다. 이 협정의 제 1(b)항은 “경제 개발을 목적으로 한 노동력 동원 및 노동사용 방법으로서의” 강제 노동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c) 국내법 상의 의무

버마 법 역시 국제법에 대한 의무에 따라 강제 노동을 금하고 있다. 명령 (Order) No. 1/99는, “강제노동 조달에 관해 책임자들이 관권을 사용하지 말 것을 지시하며..... 위반 시 취할 조치를 명시하고 있다.”²⁶⁰ 2000년 10월 27일, 내무부 (Ministry of Home Affairs)는 국가 평화 개발 평의회 (State Peace and Development Council (SPDC))의 지시에 따라, Order No. 1/99를 보충하는 Order를 발표하였는데, 이 Order는 강제 노동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강제 노동을 사용하는 것을 범죄 행위로 지정했다.²⁶¹ 이 Order에 따르면, 당국자들은 일반 시민에게 일을 강요하는 것이 금지된다. 유일한 예외는 Clause 1(b)에 있는, “화재, 홍수, 폭풍우, 지진, 전염병, 전쟁, 기근

²⁵⁸ 유럽 축의 주요 전쟁 범죄자의 기소와 처벌에 관한 합의 및 국제 군법회의 헌장, 1945년 8월 8일, 제 6항, 82 U.N.T.S. 280 (노예화를 전쟁 범죄로 규정함), <http://humanrights.law.monash.edu.au/instree/1945a.htm> 에 게재 (2008년 9월 5일 최종 확인).

²⁵⁹ 일터에서의 기본 원칙과 권리에 관한 ILO 성명, 86차 회의, 제네바, 1998년 6월, http://www.ilo.org/dyn/declaris/DECLARATIONWEB.static_jump?var_language=EN&var_pagenam=DECLARATION_EXT 에 게재, “각 회원국은 이 협약들을 비준하지 않았더라도, 이 기구의 회원국이라는 사실만으로도, 기구헌장에 따라, 양심적으로, 이 협약들의 대상인 기본권에 관한 원칙들, 즉 모든 형태의 강제 혹은 의무 노동을 폐지할 의무를 지닌다. (2008년 9월 5일 최종 확인)

²⁶⁰ 미얀마 유니언 (The Union of Myanmar), 국가 평화 개발 평의회(The State Peace and Development Council), Letter No. 04/Na Ya Ka (U)/Ma Nya, 2000년 11월 1일, “주제: 강제 노동 조달의 금지” [http://www.mol.gov.mm/8.Home/Home_link/spdc\(Eng\).pdf](http://www.mol.gov.mm/8.Home/Home_link/spdc(Eng).pdf) 에 게재 (2008년 9월 5일 최종 확인).

²⁶¹ 상동

그리고 일반 사회와 공동체에 긴박한 위험을 가져오는 동물 전염병이 있을 때”이다. Clause 6 에 의해, “이 Order를 따르지 않으면 어떤 개인이라도 현행법에 의해 처벌받을 것이다.”²⁶²

d) 제 IV.1(c) 조 (Section IV.1(c))의 위반 사항

대우와 한국가스공사는 강제 노동 행위에 이바지함으로써 제 IV.1(c) 조 (Section IV.1(c))를 위반하였다. 암네스티 인터네셔널 (Amnesty International)은 프로젝트의 준비 단계에서 이미 아라칸 주 (Arakan State)에서 강제 노동이 행해지고 있다고 보도하였다.²⁶³ 야다나 (Yadana) 가스 파이프라인의 경험으로 미루어 보아, 그리고 또 아라칸 주 (Arakan State)와 버마 전역에 걸쳐 이미 만연해 있는 강제 노동으로 미루어 보아, 이 프로젝트가 진전되면 더 많은 위반이 행해 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야다나 (Yadana) 가스 파이프라인은 공사 전과, 공사 시기 및 그 이후에 강제 노동이 증가한 원인이었다. 파이프라인 지역에는 공사가 시작되기 전에 프로젝트의 보안을 보장하기 위해 병력이 보강되었다.²⁶⁴ 야다나 (Yadana) 가스 파이프라인 지역에서 군사화가 심화 되자 강제 노동과 강제 운반 부역을 위한 지역 주민들의 징발이 늘어났다.²⁶⁵ 군인들은 수천 명의 시민들에게 그들의 병영을 짓고 이를 유지하고, 순찰 중인 부대를 위해 무거운 짐을 나르도록 강요하였다.²⁶⁶ 군인들은 또한 자신들을 위하여 마을주민들이 작물을 경작하도록 만들었다.²⁶⁷

야다나 (Yadana) 파이프라인 지역의 군사화와 관련된 강제 노동 이외에도, 강제 노동은 파이프라인 프로젝트를 직접적으로 용이하게 하였다. 군인들은 파이프라인 프로젝트를 위해 헬리콥터 이착륙장과 길 등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마을 사람들을 동원하였고, 또 파이프라인이 놓일 길을 닦는데에도 동원하였다.²⁶⁸ 마을 사람들이 이러한 강제 노동의 징집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노동을 요구 강요받았을 때 군대에게 “노동요금”이나 “운반자 요금”을 내는 것인데, 대부분의 마을 사람들이 이 돈을 낼 수가 없다.²⁶⁹

야다나 (Yadana) 파이프라인은 이제 완공되었으나, 그 지역의 강제 노동은 계속되고 있다. 지역 주민은 이직도 파이프라인의 보초로 세우기 위해 혹은 그 지역을 순찰하는 군대를 위한 운반을 시키기 위해 징집된다.²⁷⁰ 그러므로 야다나 (Yadana) 파이프라인의 건축은, 공사 동안에만 강제 노동을 야기한 것이 아니라, 그 후 장기적으로 강제 노동이 정착되는 상황을 만든 것이다.

중재나 예방책이 없이는, 슈에 (Shwe)가스 프로젝트에서도 똑 같은 위반 사항들이 일어날 가능성이 많다. 정부가 표명한 약속에도 불구하고, 강제 노동은 버마에서 만연한 문제점으로 계속 남아있다. 최근 발표된 ILO와 미국 국무부의 보고서에 따르면, 국가 평화 개발 평의회

²⁶² 명령 제 1/99 번에 대한 추가 명령, Monland 의 인권재단에 의해 번역이 보고됨, 2001 년 8 월 30 일, http://www.burmalibrary.org/docs/HURFOM's_Forced_Labour_Report.htm 에 게재(2008년 9월 5일 최종 확인).

²⁶³ 암네스티 인터네셔널(Amnesty International), 2008 년 암네스티 인터네셔널 보고서: 전세계의 인권의 상태: 미얀마 (2008 년), <http://thereport.amnesty.org/eng/regions/asia-pacific/myanmar> (2008년 9월 5일 최종 확인).

²⁶⁴ 계속되는 총체적 부인, 위의 각주 17 번, p.53

²⁶⁵ 상동 53-60.

²⁶⁶ 상동 pp.24-26, p.34, pp.53-60.

²⁶⁷ 상동 p.110.

²⁶⁸ 상동 pp.84-89.

²⁶⁹ 계속되는 총체적 부인, 위의 각주 17 번, p.101.

²⁷⁰ 에너지를 위해 인간이 겪는 고통, 위의 각주 17 번, p.35-39.

(State Peace and Development Council (SPDC))는 국제 협정 비준과 자국 법의 금지조항에도 불구하고, 버마 전역에 걸쳐 강제 노동을 강요하고 있다.²⁷¹ 유엔의 미야마 담당 특별 보고인은 버마 전역에 걸쳐, 버마 당국이나 비당국자들에 의한 강제 노동과 강제 동원이 계속되고 있다는 보고를 계속 받고 있다.²⁷² 또한 ILO는 강제 노동의 사용이 버마 “전역에 걸쳐, 체계적으로” 행해지고 있음을 파악하고,²⁷³ 버마와 교류가 있는 회원 국가들에게, “[버마]가 그 교류를 이용하여 강제 혹은 의무적인 노동의 체계를 계속하거나 그 범위를 넓히는 것을 못하도록 적절한 방법을 취해 달라고” 부탁하였다.²⁷⁴

아라칸 주 (Arakan State)에서는 지난 이십년에 걸쳐 군사화가 점차적으로 증가했고,²⁷⁵ 강제 노동과 강제 운반 부역이 행해졌다.²⁷⁶ 슈에 (Shwe) 프로젝트는 이 상황을 악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이 프로젝트는 또한 천연 가스의 수출에서 나오는 SPDC의 수입을 150 퍼센트 증가시킬 것인데,²⁷⁷ 이렇게 되면, 버마의 군사 정권이 더욱 고착화 되어 이런 식의 유린 행위가 계속될 것이다. 이런 상황을 볼 때, 슈에 (Shwe) 프로젝트는 현재 프로젝트의 건설 기간 동안과 그 후 장기적 운영기간 동안에, 강제 노동의 증가에 직접적인 공헌을 할 것이 매우 확실하다.

v. 제 V.3 조 (Section V.3), [기업들은] 환경 영향을 평가하고 적절한 환경영향평가를 준비하여야 한다.

지침서의 제 V.3 조는 기업들이 다음과 같이 할 것을 필수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기업의 활동과정, 상품 및 서비스와 관련하여 이와 관련된 모든 시점에서 예상할 수 있는 환경, 건강 및 안전에 관한 영향을 평가하고, 정책결정 과정에서 이를 고려한다. 수행하려는 활동이 환경, 건강, 혹은 안전에 심각한 영향을 끼칠 경우, 그리고 관계 당국자의 결정을 받아야 하는 경우, 적절한 환경영향평가를 준비한다.

²⁷¹ 참조: 예, 강제 노동 협약 (1930 (No.29))을 준수하는지의 여부 확인을 위한 위원회의 추천사항에 대해 미얀마 정부가 행한 태도, Intl Lab. Off., 279 번째 회의, Agenda Item 6, G.B. 279/6/1(Add.1)(Rev.1) (2000), <http://www.ilo.org/public/english/standards/realm/gb/docs/gb279/pdf/gb-6-2.pdf> 에 게재(2008년 9월 5일 최종 확인); 미얀마 정부 강제 노동 협약 준수 여부에 관한 상황:최고위 팀의 보고서, ILO 관리 기구, 292 번째 회의, B.292/7/3 (2005), <http://www.ilo.org/public/english/standards/realm/gb/docs/gb292/pdf/gb-7-3.pdf> 에 게재(2008년 9월 5일 최종 확인); 미얀마에 관한 결론, ILO 관리 기구, 300 번째 회의, GB.300/8(& Add.), 2007년, http://www.ilo.org/wcmsp5/groups/public/--ed_norm/--relconf/documents/meetingdocument/wcms_087572.pdf 에 게재(년 9월 5일 최종 확인); 2004년 인권 실천에 관한 나라별 보고서: 버마, 미국 국무부, 2005년 2월 28일, <http://www.state.gov/g/drl/rls/hrrpt/2004/41637.htm> 에 게재(2008년 9월 5일 최종 확인).

²⁷² 미얀마의 인권 상황에 관한 특별 보고자의 보고서, 특별 보고자 Paulo Sérgio Pinheiro, 유엔 인권 카운슬, A/HRC/4/14, 4 번째 회의. 2007년 2월 12일, http://ap.ohchr.org/documents/dpage_e.aspx?si=A/HRC/4/14 에 게재(2008년 9월 5일 최종 확인).

²⁷³ 국제 노동 기구 현장 제 26 항에 의해, 미얀마의 강제 노동 협약 결의 사항 준수를 조사하기위해 선임된 조사단의 보고서, ¶ 536, 1998, <http://www.ilo.org/public/english/standards/realm/gb/docs/gb273/myanmar.htm> 에 게재 (2008년 9월 5일 최종 확인).

²⁷⁴ 선택 위원회의 보고서, 국제 노동 회의 (International Labour Conference), 88 번째 회의, 2000년, <http://www.ilo.org/public/english/standards/realm/ilc/ilc88/com-seld.htm> 에 게재 (2008년 9월 5일 최종 확인).

²⁷⁵ 공급과 지휘, 위의 각주 136 번, p.22.

²⁷⁶ 상동 pp.25-26.

²⁷⁷ 상동 p.13.

지침서의 해설서는, 기업 활동 상 파악 가능한 모든 영향은 국제 영향 평가 회의 (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Impact Assessment (IAIA))에서 규정한 원칙에 의거 보고할 것을 권유한다. 이에 “주요 결정을 내리기 전~~에~~ 그리고 사업상 돌이킬 수 없는 단계에 진입하기 전~~에~~, 제안된 개발계획의 생물리학적, 사회적, 그리고 여타 관련있는 영향을 파악하고, 예견하고, 평가하고, 또 완화하는 것이 포함된다.” (강조는 필자 추가)²⁷⁸

a) 국제 관례법 상 환경영향평가 (EIA)를 수행할 의무

전세계적 환경 조약과 기타 다른 국제 협정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EIA 는 매우 중요하고 긴요한 도구가 되어가고 있다. EIA 는 많은 국제 환경 조약, 선언 및 정책에 포함되어있다.²⁷⁹ EIA 가 처음으로 국제 문서에 실린 것은 1974 년이다. OECD 환경 정책 선언 (Declaration of Environmental Policy of the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의 제 9 항은 “중요한 공공 혹은 민간 활동의 환경적 영향”은 그것이 수행해지기 전에 평가되는 것이 결정적으로 중요하다고 언급하고 있다.²⁸⁰ EIA 의 조항을 포함하고 있는 중요한 국제 환경 문건에는 환경과 개발에 관한 리오 선언 (Rio Declaration on Environmental and Development) 및 유엔 어젠더(Agenda) 21 등이 있다. 리오 선언은, “기획”시 반드시 제안된 활동의 환경 영향을 평가 해야 한다고 인정하고 있다. 리오 선언의 제 17 원칙은 다음과 같이 명시한다:

환경영향평가 [EIA]는, 국가적 문건수단 (instrument)으로서, 환경에 상당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리고 관계 당국자의 결정이 필요한, 제안된 활동을 위해 실시 되어져야 한다.²⁸¹

일반적으로 EIA 는 제안된 활동의 승인 *이전*에, 다음과 같은 것들을 확인한다:

²⁷⁸ 환경영향평가 최고 실천의 원칙, 국제 영향 평가 회의 (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Impact Assessment) (1999 년). http://www.iaia.org/modx/assets/files/Principles%20of%20IAIA_web.pdf 에 게재 (2008 년 9 월 5 일 최종 확인).

²⁷⁹ 참조: 예, *자연을 위한 세계 헌장*, G.A. Res. 37/7, U.N. GAOR, 37 번째 회의, Supp. No. 51, para. 11(c), at 17, U.N. Doc. A/RES/37/7 (1982 년) (자연에 해가 될 수 있는 활동은 그 이전에 반드시 결과의 평가가 먼저 행해져야 한다. 그리고 개발 프로젝트의 환경 영향 연구는 충분히 미리 이루어 져야 한다. 만일 이런 것들이 진행되어야 하면, 있을 수 있는 악영향이 가장 적도록 계획되고 행해져야 한다); *남극 환경 보호에 관한 의정서*, 첨부서류 I, *서명접수 시/작일* 1991 년 10 월 4 일, art. 8, 30 I.L.M. 1455, 1464, 1473-76 (남극 환경이나 그 부속/연계된 환경에 영향을 주는 활동을 하기 이전에 EIA 가 필요함); *유엔 (United Nations): 국제 수로의 비항해용 사용 범규에 관한 협약, 서명접수 시/작일* 1997 년 5 월 21 일, art. 12, 36 I.L.M. 700, 1320 (“심각한 악영향”은 EIA 가 필요함; 이는 “계획된 방법의 가능한 영향”을 평가하기 위함); *남태평양 지역의 천연 자원과 환경의 보호를 위한 협약, done* 1986 년 11 월 25 일, art. 16, 26 I.L.M. 38, 48; *커리브(Caribbean)지역과 그주변의 해양 환경 보호와 개발에 관한 협약, done* 1983 년 3 월 24 일, art. 12, 22 I.L.M. 227, 230; *홍해(Red Sea)와 아덴 걸프(Gulf of Aden) 환경의 보존을 위한 지역 협약, done* 1982 년 2 월 14 일, 9 *Envtl. Pol’y & L.* 56, 60-61 (1982 년); *서부 및 중앙 아프리카 지역의 해양과 해변환경의 보호와 개발에 협력을 하기위한 협약, done* 1981 년 3 월 23 일, art. 13, 20 I.L.M. 746, 750; *해양 환경을 오염으로부터 보호하는 일에 협력하기위한 쿠웨이트 지역 협약, done* 1978 년 4 월 24 일, art. 11, 1140 U.N.T.S. 133, 158.

²⁸⁰ 참조: 제 9 항, OECD 의 환경 정책 공표, <http://sedac.ciesin.columbia.edu/entri/texts/oecd/OECD-4.04.html> 에 게재 (2008 년 9 월 5 일 최종 확인).

²⁸¹ 환경과 개발에 관한 유엔 회의: 환경과 개발에 관한 리오 선언 (Rio Declaration) 1992 년 6 월 13 일, 제 17 원칙, 31 I.L.M. 874, 879. 한 법률 학자는 “국가적 문건 도구 (as a national instrument)로서”라는 절구를 자국 관할하에서있는 활동과 국내 보다는 국제적 관심사에 가까운 활동 둘 다에 적용될 수 있는 전세계적인 기준의 사용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했다. David A. Wirth, *환경과 개발에 관한 리오 선언 (Rio Declaration): 두 걸음 진전과 한 걸음 후퇴, 혹은 그 반대?*, 29 *Ga. L. Rev.* 599, 633 (1995).

1. 관계 당국자가 그들의 관할하에 있는 제안된 활동의 환경 영향을 충분히 파악하고 이를 고려함; 그리고,
2. 영향을 받는 시민들이 제안된 활동을 이해할 기회를 가지고, 결정권을 갖은 사람들에게 자신들의 견해를 표출할 기회를 가짐.²⁸²

국제 영향 평가 회의(IAIA)가 정한 가장 우수한 실천 방법으로는, EIA는 다음과 같이 적용되어야 한다:

- 가능한 한 가장 빨리 즉, 정책 결정 기간과 제안된 활동과 관련한 모든 시점을 포함 한 전 기간에 걸쳐 가능한 한 빨리,
- 제안된 계획에 의해 영향을 받는 지역사회와 산업 관련자 및 관심이 있는 일반인들의 참여와 의견수렴이 가능할 수 있도록.²⁸³

b) 조약법 상의 의무

버마는 조약법에 의하여, 생물 다양성에 중요한 영향에 있을 것으로 기대될 때, EIA를 행하도록 요구된다. 버마는 생물 다양성에 관한 협정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의 채택국으로서, 생물 다양성에 중요한 영향에 있을 수 있을 때, EIA를 행해야만 한다. 버마는 1996년 5월 21일 동 협정을 비준하였다. 제 14(1)항에 의하면:

각 채택국은, 가능하고 적절한 한:

- (a) 생물 다양성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제안된 프로젝트에 대해 그 영향을 피하거나 최소화 하려는 안목을 가지고 환경영향평가를 필수사항으로 두는 적절한 절차를 도입할 것, 그리고 적절하다면, 그 과정에 일반인들의 참여를 허락할 것.²⁸⁴

자연과 천연 자원 보존에 관한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ASEAN)의 1985년도 협약 제 14항은, 1997년 버마에 의해 비준되었으며, “자연 환경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제안된 활동에 대해 환경 평가를 필수사항으로 한다.²⁸⁵ 모든 제안된 프로젝트의 최종 결정은 EIA를 고려한 것이어야 한다.²⁸⁶ 1982년의 유엔 해양법 협정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제 206항은, 1996년 버마에 의해 비준되었으며, 이는 해양에 상당히 유해한 변화를 일으킬 가능성이 어떤 활동에 대해서도 EIA를 요구한다.²⁸⁷

²⁸² 참고: John Knox, 국경을 초월한 환경영향평가의 신화와 현실, 96 Am. J. Int'l L. 291, 297 (2002); David Hunter 외, 국제 환경법과 정책 366 (1998년); Jon M. Van Dyke, 일본 플루토늄의 해상 운반, 24 Ocean Dev. & Int'l L. 399, 402 (1993년); Jain et al., R.K. Jain et al., 환경 평가 6, 8 (1993), p.6; Nicholas A. Robinson, 환경영향평가의 국제적 흐름, 19 B.C. Envtl. Aff. L. Rev. 591, 594 (1992년).

²⁸³ 환경영향평가 최고 실천의 원칙, 국제 영향 평가 회의 (1999), http://www.iaia.org/modx/assets/files/Principles%20of%20IA_web.pdf 에 게재(2008년 9월 5일 최종 확인).

²⁸⁴ 생물학적 다양성에 관한 협약, 리오 데자네이로, 1992년 6월 5일, <http://www.cbd.int/doc/legal/cbd-un-en.pdf> 에 게재 (2008년 9월 5일 최종 확인).

²⁸⁵ 자연과 천연 자원 보존에 관한 ASEAN 합의, 쿠알라룸푸르, 1985년 7월 9일, Art. 14, <http://www.ecolex.org/ecolex/ledge/view/RecordDetails;jsessionid=3698C2F040F509435F9D391B684FDAA9?id=TRE-000820&index=treaties> 에 게재 (2008년 9월 5일 최종 확인).

²⁸⁶ 상동

²⁸⁷ 해양 법에 관한 유엔 세번째 회의: Final Act, 1982년 10월 21일, art. 206, 21 I.L.M. 1245, 1309, 11 번째 회의, at 86,

c) 제 V.3 조 (Section V.3)의 위반 사항

지침서는 프로젝트가 “환경, 건강 혹은 안전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을 때” EIA를 필요로 한다고 규정한다. 위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슈에 (Shwe) 가스 프로젝트가 환경, 건강, 혹은 안전에 영향을 준다는 것에는 논란의 여지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SGM과 그지역 이해 당사자들에 따르면, 대우와 한국 가스 공사는 철저한 탐사도 마쳤고, 그 프로젝트를 위한 자금도 이미 마련된 상태인데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슈에 (Shwe) 가스 프로젝트에 대한 EIA를 행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 한편, EIA의 취지에 부합하려면, 프로젝트가 수행되기 *이전에* 그것을 행하는 것이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위의 제 VIII. b.항에서 언급했듯이, 버마의 계획된 파이프라인 경로 중 가장 환경적으로 민감한 곳은 아라칸 주(Arakan State)이다. 이곳에서는 계획된 파이프라인이 국립 해양 공원, 취약한 망고 늪 (mango swamps), 그리고 강 하구를 둘로 나누게 되며, 또한 아라칸 요마 산맥 (Arakan Yoma Range)의 서면으로 흐르는 5-6 개의 작은 강을 가로 지르게 된다.²⁸⁸ 계획된 파이프라인은 Irrawaddy 강과 Salween 강을 지나게 될 것인데, 여기서 파이프라인이 누출되거나 파열되면, 근접 환경 뿐 아니라, 강이 흘러가는 아래 쪽의 생명군에게도 심각한 환경 피해를 주게 될 것이다.²⁸⁹ 계획된 파이프라인은 또한 버마의 두 활성적인 지진 단층 지역과 지진이 자주 일어나는 윈난성(雲南省; Yunnan) 지방을 지나게 되어 있다, 건설한 환경 계획 수립 없이는, 파이프라인이 물리적 피해에 각별히 노출되게 된다.²⁹⁰

근해 프로젝트, 그 중 특히 건설한 환경 계획이 없이 진행되는 근해 천연 가스 프로젝트는 바다물을 오염시키고 해양 생물에 악영향을 끼치는 유독성 폐기물을 방출하게 된다. 탐사 중에 생겨나는 “굴착 진흙”은 “비소, 바륨, 납, 부식성 철분 및 자연에 존재하는 방사선 물질과 같은 유해성 물질들을 함유하고 있다.”²⁹¹ 만일 “굴착 진흙”이 바다물에 버려지면, 그 유해성 물질들이 바다물에서 산소를 없애, 갑각류 및 연체류 등의 바다 생물을 죽게 만들 것이다.²⁹² 적출이후, 유해성 염수는 그대로 내버려지게 되며, 이것은 “습지대, 물고기, 그리고 야생 생물”에 “참담한” 영향을 끼치게 된다.²⁹³ 마지막으로, 굴착시설에서 매일 뿜어지는 가스는 “하루에 차량 7,000 대가 각 50 마일씩 운행하며”가 뿜어내는 매연에 해당한다.²⁹⁴ 이러한 기체의 방출은 공기의 오염과 기후의 변화에 역할을 할 것이며, EIA 가 없는 상태에서는 그 가능성이 더 높다.

벵갈만(Bay of Bengal)에서 적출된 후, 슈에 (Shwe) 천연 가스는 육지 파이프라인으로 중국으로 운반될 것이다. Section VIII. b.에서 언급되었듯이 이 파이프라인은 다섯(5)개의 독특하면서

U.N. Doc. A/Conf. 62/122 (1982).

²⁸⁸ 강은 Tanlwe 과 Taungtok (Taunggup)를 포함한다. Taungain/Taungup/Taunggok 와 Pyay/Pyi/Promei 사이 고속도로의 남쪽에 파이프라인이 놓이게 되면, Thade 상류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²⁸⁹ 이 이의제기서는, 파이프라인이 환경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중국 윈난성(雲南省; Yunnan)의 환경적으로 민감한 지역에 특별히 초점을 맞추는 것은 아니다.

²⁹⁰ 위의 각주 245, 246 및 247 번.

²⁹¹ 총체적 부정, 위의 각주 17 번, p.54.

²⁹² 상동

²⁹³ 상동

²⁹⁴ 상동

생태적으로 민감한 지역을 가로 지르게 된다. 이 지역들은 모두 생물 다양성이 아주 높아, 세계자연보호기금 (World Wildlife Fund (WWF))에 의해, 글로벌 200 생태지역 (Global 200 Ecoregions)에 속하는 것으로 지정되었다. 이와 같이 독특하고 환경적으로 민감한 생태지역 내에 각별한 주의를 요하는 지역들이 있는데 이는 즉, 홍수림늪지대,²⁹⁵ 및 버마의 건조 지역에 꼭 필요한 물 공급지,²⁹⁶ 야생생물 보호구역,²⁹⁷ 그리고 조류 보호구역이다.²⁹⁸

이 글로벌 민감 지대 중 특히 우려가 되는 곳이 두 곳 있다. 즉, Naga-Manuprui-Chin Hills Moist forests (습한 숲)과 “취약한” 북부 인도차이나 아열대 습성림이다²⁹⁹ Naga-Manuprui-Chin Hills 에는 멸종 위기에 있는 Hoolock 긴팔 원숭이와 몇 가지 토종의 조류 종이 살고있다. 이곳에서 서식지를 잃은 guar , 코끼리, 코뿔소 등 몇몇 동물 종이 이미 지역적 멸종을 하였다.³⁰⁰ 북부 인도차이나 아열대림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새의 종류가 가장 풍부하고” “포유류의 다양성은 세번째”가 된다.³⁰¹ 이곳에 사는 포유류는 몇몇의 토종 혹은 거의 토종이라 할 수 있는 종과, 멸종 위기에 있는 여타 종들, 그리고 멸종 위기가 아주 심각한 일개 원숭이 종 등이 있다.³⁰² 이 지역의 몇몇 조류 종은 “온전하고, 성숙한 숲”을 필요로 하며, 사람들에게 의한 방해를 견뎌내지 못한다. 이 새들이 숲에 여러 종의 식물의 씨앗을 퍼뜨리는데 없어서는 안 될 역할을 하고있다.³⁰³ 더구나, 지역 주민들은 음식과 약재를 위해 경목 숲에 의존한다.³⁰⁴ 이 지역을 통과하는 파이프라인을 건설에는 숲 제거 작업이 개입하며, 적절한 환경 계획없이 서식지의 심한 조각화 현상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한 조각화 현상은 동물의 종만이 아니라, 그들을 지탱해 주는 식물의 종도 사라지게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서식지가 줄어들면, 현재 멸종 위기에 있거나 토종인 종이 멸종을 하게 되고, 또, 그런 일이 없었다면 무난했을 종을 멸종 위기의 종으로 만들 것이다.

대우와 그 컨소시엄 파트너들은 특정한 “파이프라인 전용로(pipeline corridor)”, 즉, 파이프라인이 지나갈 땅에 있는 길을 “확보”해야만 할 것이다. 어떤 지역에서는 이를 위해 새

²⁹⁵ 파이프라인이 Sanei 에서 Ma-ei 로 횡단하게되면, 파이프라인은 Nat Ma Taung 국립해양공원과 인근의 홍수림 늪지대 (mangrove swamps)을 돌로 가르게 된다. 이 지역의 위치의 좌표는 20°58'42" N. 및 94°7'42" E.이다.

²⁹⁶ 제안된 파이프라인은 Popa 산악공원을 지날 수도 있는데, Popa 산악공원은 여러 저수지 및 Kyetmauktaung 댐등의 댐들과 연결되어 있다. 이들은 버마 중앙부 건조지역에 꼭 필요한 수자원이다. 이 지역의 좌표는 20° 53' N. 및 95° 15' E. 이다.

²⁹⁷ 제안된 파이프라인은 21° 28' N. 및 95° 43' E.에 위치한 Minsontaung 야생동물 보호구역을 지날 수 있다.

²⁹⁸ 제안된 파이프라인은 22° 00' N. 및 96° 30' E.에 위치한 Pyi Oo Lwin 조류보호구역 (Maymyo)을 지날 수 있는데, 이는 Shan 고원 아래의 Mandalay 에서 북쪽으로 40 마일 떨어진 곳에 있다.

²⁹⁹ **참고:** 내셔널 지오그래픽 (National Geographic), “야생 세계: 글로벌 200,” http://www.nationalgeographic.com/wildworld/global.html?id=0&mapServiceName=WW_G200&locWidth=120&locHeight=72&cMinx=96.732323&cMiny=20.24&cMaxx=97.199997&cMaxy=21.102398&size=undefined&detail=undefined (2008년 9월 5일 최종 확인).

³⁰⁰ 세계 야생생물 기금(World Wildlife Fund), “Chin Hills-Arakan Yoma 산지 숲” http://www.nationalgeographic.com/wildworld/global.html?id=0&mapServiceName=WW_G200&locWidth=120&locHeight=72&cMinx=96.732323&cMiny=20.24&cMaxx=97.199997&cMaxy=21.102398&size=undefined&detail=undefined 에 게재 (2008년 9월 5일 최종 확인)

³⁰¹ 세계 야생생물 기금(World Wildlife Fund), “북부 인도차이나 아열대 산림,” http://www.nationalgeographic.com/wildworld/global.html?id=0&mapServiceName=WW_G200&locWidth=120&locHeight=72&cMinx=96.732323&cMiny=20.24&cMaxx=97.199997&cMaxy=21.102398&size=undefined&detail=undefined 에 게재 (2008년 9월 5일 최종 확인).

³⁰² 상동

³⁰³ 상동

³⁰⁴ Palaung 청소년 네트워크 그룹 (PYNG) *장화아래서(Under the Boot)*, 2007년, p.3.

길이나 다른 인프라를 건설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고, 이는 군이 장악한 버마에서는 환경에 대한 특별한 위협이 된다. 땅의 좁은 면적을 따라 숲을 없애고 길을 닦는 일은, 서식지를 조각화 할 뿐 아니라, Yadana 와 Yetagun 프로젝트 때 이미 일어났듯이, 불법벌채와 불법수렵을 점점 더 심해지게 할 것이다. 군사화가 심해지는 몇몇 곳에서도, 불법벌채와 불법수렵이 일어날 수 있다.³⁰⁵ 어떤 지역에서는 접근 도로의 공사가 침식을 야기시켜³⁰⁶ 공급되는 물의 순도를 낮추거나,³⁰⁷ 동물들의 이동 경로 방해를 통한 서식지의 분열화를 야기할 수 있다.³⁰⁸

고의적 파괴 행위의 가능성과 잦은 태풍, 지진, 산사태 등을 고려할 때, 사고로 인해 유해 물질이 쏟아지거나 새는 경우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벥갈만 (Bay of Bengal)은 봄과 가을에 태풍이 심하게 부는 곳이다.³⁰⁹ 천연 가스는 폭발성이므로, 이것이 새게되면, 숲에 불이 붙을 수도 있는데, 이 점은 확실히 실존하는 환경에 관한 우려점이다.³¹⁰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지진도 역시 버마와 중국 둘 다의 경우에 생각해야 할 점이다. 2008년 5월 12일, 중국 Sichuan 에 난 대규모의 지진은 Sichuan 석유 공급의 70 퍼센트를 나르는, 이 나라에서 가장 긴 파이프라인을 심각하게 위협했고,³¹¹ 또 다른 지진이 2008년 8월 20일, 중국-버마 국경에 발생 천명이 넘게 대피를 해야 했다.³¹²

파이프라인은 또한 민족 봉기와 관련된 무력행사에 휘말릴 수 있으며, “프로젝트 자체에 공격이 가해질 수”있는 잠재적인 문제점도 안고 있다.³¹³ 가스 파이프라인에 대한 그러한 공격은, 가스가 불이 붙고, 그 불이 번져서 그 주변 지역에 피해를 줄 수있기에 각별히 위험한 것이다.³¹⁴ 제안된 슈에 (Shwe) 파이프라인은, 그 전의 Yadana 와 Yetagun 파이프라인과 마찬가지로 Shan State 내 민족 봉기가 오랜 기간 심각하게 일고 있는 지역을 지나게되므로, 비슷한 위협을 받게 되는데, 이런 위협은 적절한 환경 및 사회적 계획이 없을 경우 현실화될 가능성이 더 높다.

슈에 (Shwe) 가스 프로젝트는 적절하고 투명성있는 환경적 계획이 없는 상황에서 이미 환경에 피해를 입히고 있다. 예를 들면, 위의 Section VIII. b.에서 언급했듯이, 근해 굴착지점 가까이에 사는 Sittwe 주민들은 창자가 기형인 유난히 작은 물고기들을 낚아 올리고있다; 주민들은 또한 Sittwe 근처 Kaladan 강에서 대략 10,000 마리의 물고기가 떼죽음을 한 것을 보고하였다.³¹⁵ 이런

³⁰⁵ 계속되는 총체적 부인, 위의 각주 17 번, p.152-55.

³⁰⁶ 상동 p.147-48.

³⁰⁷ 상동 p.156-57.

³⁰⁸ 상동 p.157.

³⁰⁹ 대서양 해양지질학 및 기상 연구소(Atlantic Oceanographic and Meteorological Laboratory), 태풍 연구 분과, “자주 묻는 질문들,” <http://www.aoml.noaa.gov/hrd/tcfaq/G1.html> 에 게재 (2008년 9월 5일 최종 확인).

³¹⁰ 계속되는 총체적 부인, 위의 각주 17 번, p.143. Yadana 파이프라인을 위한 PTT's EIA 에서 이 위협은 덜 중요한 것으로 제시되었다.

³¹¹ “지진을 겪은 호수는 중국의 가장 긴 석유 연결을 위협” Wang Ying, 2008년 6월 6일, Bloomberg, <http://www.bloomberg.com/apps/news?pid=20601087&sid=aeYsZAB0iWbY&refer=home> 에 게재(2008년 9월 5일 최종 확인).

³¹² “지진이 중국의 미얀마 접경을 강타” AFP, 2008년 8월 20일, <http://afp.google.com/article/ALeqM5jD9ICqDKCK AenEkD2XJc23z8g1Q> 에 게재(2008년 9월 5일 최종 확인).

³¹³ 총체적 부인, 위의 각주 17 번, p.13.

³¹⁴ 계속되는 총체적 부인, 위의 각주 17 번, p.155.

³¹⁵ 참조: Dale, *일만 마리 이상의 Giant Sea Perch 떼죽음, Hitsua 변형: 대우 (Daewoo)와 슈에(Shwe) Block A-1 Gas Operation*, The Shwe Gas Bulletin, Vol. 1, Issue 5 (2005년 9월).

일들의 확실한 이유는 알수없으나, 건실한 환경영향평가와 환경 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대우와 한국가스공사의 활동이 원인이 아니라고 말할 수도 없다.

야다나 (Yadana)파이프라인을 위한 Petroleum Authority of Thailand (PTT)의 프로젝트를 포함하여, 버마의 다른 천연 가스 프로젝트를 위해 행해졌던 EIA 들은, 회사측에서 잘못된 정보를 주거나, 적절한 공공 참여가 없는 등의 오점이 있는, 미완성 상태이다.³¹⁶ EIA 란 그 프로젝트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될 사람들이 충분한 정보를 가진 상태에서 행하는 의미있는 참여가 없이는 효과적이거나 적절할 수가 없다.

또한, EIA는 일반적으로 사회 영향 평가 (Social Impact Assessment (SIA))와 함께 실시되며, 여기에 더하여 인권영향평가 (Human Rights Impact Assessment (HRIA))까지를 부가하여 실시하는 것이 점점 더 상례화 되어가고 있다.³¹⁷ 이 프로젝트의 인권 영향의 평가에 대하여, 대우는 2006 년 7 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지금은 인권 유린 문제를 논할 적절한 시기가 아니는 것이 본사의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직 가스 필드탐사 단계에 있으며, 개발은 시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³¹⁸ 이 말은 개발 계획과 영향 평가에 대한 깊게 잘못된 생각을 반영하는데, 그 이유는 영향 평가란 프로젝트 중이나 시작 후가 아닌, 프로젝트를 할 지에 대한 결정을 내리기에 앞서 해야한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또한 대우의 윤리관과 OECD 지침서 준수에 대해 대우가 느끼는 책임감에 대해 의구심을 불러 일으킨다.

VI. 결론

본 이의제기서에는 대우인터네셔널과 한국가스공사 (KOGAS)가 슈에 가스 프로젝트에의 참여를 통하여 행한 경제협력기구 (OECD)의 다국적 기업을 위한 지침서 (*Guidelines for Multinational Enterprises*)에 대한 위반 사항이 자세히 기술되어 있으며, 아울러 이 프로젝트가 진행됨에 따라 장차 행해질 수 있는 더 심각한 위반이 자세히 기술되어 있다. 대우와 한국가스공사는 아래와 같이 지침서를 위반하고 있다:

- 지속적인 개발에 공헌하지 아니하고, 슈에 가스 프로젝트에 의해 영향을 받는 사람들의 인권을 존중하지 아니함으로써, OECD 지침 제 II 장, 1 조와 2 조 (*OECD Guideline Ch. II, § 1 and 2*) 를 위반;
- 자신들의 활동과 재정적 성과에 관련한 정보를 일반인 및 영향을 받는 지역사회에 공개하지 아니하고, 자신들의 활동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 지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아니함으로써, OECD 지침 제 III 장 1 조 및 제 V 장 2 조 (*OECD Guideline Ch. III, § 1 and Chp V, §2*)를 위반;
- 강제 노동을 없애는데에 공헌하지 아니함으로써, OECD 지침 제 IV 장 1(c)조 (*OECD Guideline Ch. IV, § 1(c)*)를 위반;
- 이미 철저한 해저 탐사를 수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EIA 를 실시하지

³¹⁶ 계속되는 총체적 부인, 위의 각주 17 번, pp.139-40.

³¹⁷ 참조: 인권협회 (Human Rights Council), 제 8 차 회의, 의제 제 3 항 모든 인권의 신장과 보호: 개발의 권리를 포함한 시민적,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 A/HRC/8/5, (2008 년 4 월 7 일) “보호하라, 존중하라, 그리고 보상하라: 사업과 인권을 위한 기본틀” <http://www.reports-and-materials.org/Ruggie-report-7-Apr-2008.pdf> 에 게재 (2008 년 9 월 5 일 최종 확인).

³¹⁸ “한국, 인도 회사들, 미얀마에서 철수하라고 촉구됨,” N. Wong-Anan, 로이터 (Reuters), 2006 년 7 월 11 일.

아니함으로써, OECD 지침 제 5 장 3 조(OECD Guideline Ch. V, § 3)를 위반.

위의 I(v) 항목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ERI 와 SGM 은 한국측 국내연락사무소께서 이 이의제기를 경청해 주시되, 국내연락사무소로서의 사명을 실천할 의지를 가지고, 본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바로 일어나게 될 장래의 유린행위들을 완화시키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본 이의제기를 경청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우리는 한국측 국내연락사무소께서 이 위반사항들이 해결될 때까지 대우와 한국가스공사의 슈에 가스 프로젝트에의 참여를 잠정 정지 (suspend)시키는 데 모든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우리는 아울러 국내연락사무소께서 이 이의제기서에 적시에 반응해 주실 것과 이 이의제기에 대한 국내연락사무소의 판단과 반응을 이의제기 신청인들에게 알려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 이의제기서 및 이의제기 신청인과 관련된 사항은 아래로 연락해 주십시오:

Matthew F. Smith
Project Coordinator, The Burma Project
EarthRights International, Southeast Asia
www.earthrights.org
phone: +66-87-181-0160 or +66-81-531-1256
email: matthew@earthrights.org

서울시 종로구 필운동 184-2 번지 2 층 (우 110-044)
인권과 평화를 위한 국제민주연대
김경 상임활동가
www.khis.or.kr
전화: (02)736-5808,9
팩스: (02)736-5810
이메일: khis21@empal.com